

발간등록번호

11-1492865-000006-10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2024

# 최저임금 심의편람

MINIMUM WAGE COMMISSION



최저임금위원회



# 01

##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3
- 2. 최저임금제도의 내용 4
- 3. 최저임금제도의 연혁 5

# 02

## 최저임금위원회 현황 ..... 23

- 1. 위원회 설치·운영 경과 25
- 2. 기구 27
- 3. 기능 및 주요 업무 28
- 4. 운영 29
- 5.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34

# 03

## 최저임금 현황 ..... 37

- 1.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39
- 2.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액(고시기준) 40
- 3.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안 조정 현황 41
- 4.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 46
- 5.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율 83
- 6.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영향률 84
- 7. 적용 연도별·조사기관별 생계비 변동 추이 86



# 04

## 위원회 활동사항 ..... 91

- 1. 연도별 현장 방문 활동 93
- 2. 연도별 토론회 등 개최 현황 97
- 3. 연도별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현장조사 100

# 05

## 심의 기초자료 개요 ..... 105

- 1.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107
- 2. 임금실태 등 분석 108
- 3.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111
- 4.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112

# 06

## 기타 참고사항 ..... 113

- 1. 회의 진행요령 115
- 2. 투표용지(예시) 116
- 3. 노·사 최저임금 수준 제시안(예시) 120
- 4. 역대 위원 명단 121

# 부록

- 1. 최저임금법·시행령·시행규칙 153
- 2.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193
-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203  
(정원배정표 포함)
- 4.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주요 법령과 그 적용기준 207

## 제1부

#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2. 최저임금제도의 내용
3. 최저임금제도의 연혁





#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 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1987. 10월)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 나. 최저임금제도 도입 경과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도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1970년대 중반,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해소되지는 못함
- 1980년대 중반, 저임금의 제도적 해소 및 근로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경제상황도 최저임금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시행하게 됨

## 2 최저임금제도의 내용

- 시행 : 1988. 1. 1.
- 관계법령 :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적용(최저임금법 제3조)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2000. 11. 24.)
    - ※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제외
- 최저임금의 결정 및 효력발생(최저임금법 제8조 및 제10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 발생
    -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따라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 1.~12. 31.까지 효력 발생
- 결정기준 및 단위(최저임금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
  -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
  -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 가능
  -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는 경우 시간급을 표시
- 주지의무(최저임금법 제11조)
  - 사용자는 고시된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관련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소속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그 외에 적당한 방법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최저임금법 위반 시 조치(최저임금법 제28조)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병과 가능)

## 3 최저임금제도의 연혁

### 가. 최저임금법령 제·개정 연혁

- 「최저임금법」 제정, 공포 : '86.12.31(법률 제3927호)
  - 1차 개정 : '93.08.05(법률 제4575호)
  - 2차 개정 : '97.12.24(법률 제5474호)
  - 3차 개정 : '99.02.08(법률 제5888호)
  - 4차 개정 : '00.10.23(법률 제6278호)
  - 5차 개정 : '05.05.31(법률 제7563호)
  - 6차 개정 : '05.12.30(법률 제7827호)
  - 7차 개정 : '07.04.11(법률 제8372호)
  - 8차 개정 : '07.12.27(법률 제8818호)
  - 9차 개정 : '08.03.21(법률 제8964호)
  - 10차 개정 : '10.06.04(법률 제10339호)
  - 11차 개정 : '12.02.01(법률 제11278호, '12.07.01 시행)
  - 12차 개정 : '17.09.19(법률 제14900호, '18.03.20 시행)
  - 13차 개정 : '18.06.12(법률 제15666호, '19.01.01 시행)
  - 14차 개정 : '20.05.26(법률 제17326호, '20.05.26 시행)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정, 공포 : '87.07.01(대통령령 제12207호)
  - 1차 개정 : '88.07.07(대통령령 제12488호)
  - 2차 개정 : '89.07.04(대통령령 제12746호)
  - 3차 개정 : '93.12.29(대통령령 제14035호)
  - 4차 개정 : '99.03.17(대통령령 제16190호)
  - 5차 개정 : '04.03.17(대통령령 제18312호)
  - 6차 개정 : '05.06.30(대통령령 제18911호)

- 7차 개정 : '05.08.31(대통령령 제19029호)
  - 8차 개정 : '06.06.12(대통령령 제19513호)
  - 9차 개정 : '06.12.21(대통령령 제19771호)
  - 10차 개정 : '09.06.26(대통령령 제21572호)
  - 11차 개정 : '10.07.12(대통령령 제22269호)
  - 12차 개정 : '11.03.30(대통령령 제22805호)
  - 13차 개정 : '11.12.21(대통령령 제23388호)
  - 14차 개정 : '12.01.06(대통령령 제23488호)
  - 15차 개정 : '15.12.31(대통령령 제26844호)
  - 16차 개정 : '18.03.20(대통령령 제28711호)
  - 17차 개정 : '18.12.31(대통령령 제29469호)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정, 공포 : '87.11.12(노동부령 제42호)
- 1차 개정 : '89.06.16(노동부령 제53호)
  - 2차 개정 : '94.11.14(노동부령 제95호)
  - 3차 개정 : '99.03.20(노동부령 제147호)
  - 4차 개정 : '05.08.31(노동부령 제233호)
  - 5차 개정 : '06.12.27(노동부령 제263호)
  - 6차 개정 : '08.03.03(노동부령 제298호)
  - 7차 개정 : '10.07.12(고용노동부령 제1호)
  - 8차 개정 : '11.12.19(고용노동부령 제41호)
  - 9차 개정 : '13.03.23(고용노동부령 제78호)
  - 10차 개정 : '14.12.31(고용노동부령 제117호)
  - 11차 개정 : '16.06.16(고용노동부령 제158호)
  - 12차 개정 : '17.02.03(고용노동부령 제179호)
  - 13차 개정 : '18.12.31(고용노동부령 제240호)

## 나. 최저임금법령 주요 개정 내역

- '07. 4. 11. 법 개정 내용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최저임금법」에서의 「근로기준법」 인용 조문 변경(법 제2조, 제5조제2항제2호)
- '07. 12. 27. 법 개정 내용
  -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법 제6조제5항 신설)
- '08. 3. 21. 법 개정 내용(전부 개정)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
    - 선원법 → 「선원법」
    - 유사근로자의 임금 → 유사 근로자의 임금
    - 규정에 의한 → 규정에 따른
    - 정하는 때에는 → 정할 때에는
    - 승인을 얻은 자 → 승인을 받은 자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08. 3. 3. 시행규칙 개정 내용
  - 「정부조직법」에 따라 특별위원 위촉 대상이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의 관계국장에서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의 관계국장으로 변경(시행규칙 제7조)
- '08. 4. 4. 운영규칙 개정 내용(전부 개정)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를 상황에 맞추어 실시
  - 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을 명확히 함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

- '09. 6. 26. 시행령 개정 내용
  -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제5조의2) 신설
    -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 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 '09. 6. 5. 운영규칙 개정 내용
  - 전원회의 및 전문위원회 등에 출석한 근로자, 사용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함(제40조)
  -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및 연구위원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회의 참석 및 안전 검토수당을 지급함(제41조)
- '10. 6. 4. 법 개정 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하고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며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함
- '10. 7. 12. 시행령 개정 내용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고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함
- '10. 7. 12. 시행규칙 개정 내용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하고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며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함
- '11. 3. 18. 운영규칙 개정 내용
  - 정부조직법 및 고용노동부 직제 개정사항 반영
    -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고,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변경함
  - 운영규칙 제23조제2항의 내용 중 잘못 인용된 “법 제14조제4호”를 “법 제13조 제4호”로 정정하고, “부의한 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함

- '11. 3. 30. 시행령 개정 내용
  -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제22조)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일반기준을 정함(별표)
- '11. 12. 19. 시행규칙 개정 내용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
      - 규정에 의한 → 따른
      - 권장 → 권고
      - 기타 → 그 밖에
      - 아니한 → 않은
      - 1월 → 1개월
- '11. 12. 21. 시행령 개정 내용('12. 1. 1.부터 시행)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하도록 변경(제3조제2항)
    - 동 개정규정은 2014. 12. 31.까지 효력을 가짐(부칙)
- '12. 1. 6. 시행령 개정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및 시행('11.9.30.)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제21조의3)
    -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 처리 가능
- '12. 2. 1. 법 개정 내용('12. 7. 1.부터 시행)
  - 1년 미만의 기간제에 대하여 수습 사용기간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 조항 신설(제5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 신설)
    -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까지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 신설

- 도급인에 대한 제재수단 신설(제28조제2항 신설)
    -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도급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13. 3. 23. 시행규칙 개정 내용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함
  - '14. 12. 31. 시행규칙 개정 내용(제7조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사용자단체 지정에 대하여 '15.1.1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 '15. 12. 31. 시행령 개정 내용(제12조의 2 신설)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에 대한 해촉(解囑) 사유 신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16. 6. 16. 시행규칙 개정 내용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적도록 변경
  - '17. 2. 3. 시행규칙 개정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용자단체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매 2년마다에서 매 3년마다(2017년 1월 1일 기준)로 변경
  - '17. 9. 19. 법 개정내용('18. 3. 20.부터 시행)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더라도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변경(제5조제2항)
-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18. 3. 20. 시행령 개정 내용

- 사문화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제3조제2항) 삭제

○ '18. 6. 12. 법 개정내용('19. 1. 1.부터 시행)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제6조제4항 개정)
-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 청취(제6조의 2 신설)
-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제28조제3항 신설)
-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부칙 제2조)
  -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 '18. 12. 31. 시행령 개정 내용('19. 1. 1.부터 시행)

-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월급을 소정근로시간과 법정 주휴시간을 합산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로 나누도록 명문화함(제5조제1항 개정)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산출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제5조의2 신설)

● '18. 12. 31. 시행규칙 개정 내용

-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의 세부항목 규정(제2조제1항 신설)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임금
- 한시적으로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만큼 미산입 되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세부항목 규정(제2조제2항 신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종전 별표 1(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은 본칙으로 규정, 별표 2(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삭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 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추천(제4조제3호)과 최저임금안 이의신청 제기(제5조 제1호) 권한 부여
- 특별위원 위촉대상 변경(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 서식을 구체화
- '20. 5. 26. 법 개정내용('20. 5. 26.부터 시행)
  -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

**붙임** 최저임금법령 개정 세부내용

**최저임금법**

공포일자	구 분	개 정 내 용
'86. 12. 31.	최저임금법 제정 (법률 제3927호)	-
'93. 8. 5.	제1차 개정 (법률 제457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의 결정일 변경(제8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11월 30일까지 → 매년 8월 5일까지로 변경</li> </ul> </li> <li>○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기간 변경(제8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일 이내에 ~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 20일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로 변경</li> </ul> </li> <li>○ 최저임금안 고시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 변경(제9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변경</li> </ul> </li> <li>○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일 변경(제10조제1항 및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대로 변경</li> <li>-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을 다음연도 1월1일부터 →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로 변경</li> </ul> </li> <li>○ 시행일(부칙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4. 1. 1.부터 시행</li> </ul> </li> <li>○ 경과조치(부칙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94. 1. 1.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은 '94. 8. 31.까지 효력을 발생</li> </ul> </li> </ul>
'97. 12. 24.	제2차 개정 (법률 제547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제의 대상자 변경(제7조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 직업훈련 중 양성훈련을 받는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 훈련을 받는 자로 변경</li> </ul> </li> </ul>
'99. 2. 8.	제3차 개정 (법률 제588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한의 위임규정 신설(제26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 신설</li> </ul> </li> <li>○ 과태료 조항 신설(제31조) 및 벌칙 조항 삭제(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의 주지의무 위반, 노동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서류제출 요구 등에 대한 거부, 방해, 기피 등의 경우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li> </ul> </li> </ul>

공포일자	구 분	개 정 내 용
'00. 10. 23.	제4차 개정 (법률 제627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범위(제3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사업장 규모별 단서조항 삭제)</li> </ul> </li> <li>○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조항 신설(제5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li> </ul> </li> <li>○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심의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로, 심의위원회 → 위원회로 명칭 변경</li> </ul> </li> </ul>
'05. 5. 31.	제5차 개정 (법률 제756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조항 추가(제4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 지표로서 현행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예다 소득분배율 추가 신설</li> </ul> </li> <li>○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대상자 변경(제7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의 취업기간 6개월 미만의 18세미만 취업자(제2항) 삭제, 3월 이내 수습사용자(제2항) 및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제3항) 추가</li> </ul> </li> <li>○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조항(제6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례 이상의 도급사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으로 직상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한 범위 명기</li> </ul> </li> <li>○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확대(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의 적용제외자인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제2항) 및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제3항)를 적용대상으로 확대</li> </ul> </li> <li>○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기간의 변경(제10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연도 9월 1일 → 다음 연도 1월 1일로 변경</li> </ul> </li> <li>○ 벌칙조항 변경(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천만원 → 2천만원으로 변경</li> </ul> </li> <li>○ 시행일(부칙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다른 금액의 최저임금액 적용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li> </ul> </li> </ul>

공포일자	구 분	개 정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지남</li> </ul> </li> <li>○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부칙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종전의 수준보다 저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마련</li> </ul> </li> </ul>
'05. 12. 30.	제6차 개정 (법률 제782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례 이상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을 도급인 연대책임으로 개정(제6조제6항 및 제7항) 및 신설(제8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li> <li>- 2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각 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봄</li> </ul> </li> </ul>
'07. 4. 11.	제7차 개정 (법률 제837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준법」 조문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법 제2조 중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 → 제2조로 함</li> <li>-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 제63조제3호로 함</li> </ul> </li> </ul>
'07. 12. 27.	제8차 개정 (법률 제881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신설(제6조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li> </ul> </li> <li>○ 제6조제5항의 신설로 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항 → 제6항</li> <li>- 제6항 → 제7항</li> <li>- 제7항 → 제8항</li> </ul> </li> </ul>
'08. 3. 21.	제9차 개정 (법률 제896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원법 → 「선원법」</li> <li>- 유사근로자의 임금 → 유사 근로자의 임금</li> <li>- 규정에 의한 → 규정에 따른</li> <li>- 정하는 때에는 → 정할 때에는</li> <li>- 승인을 얻은 자 → 승인을 받은 자</li> <li>-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li> </ul> </li> </ul>

공포일자	구 분	개 정 내 용
'10. 6. 4.	제10차 개정 (법률 제1033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부 → 고용노동부</li> <li>- 노동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li> <li>- 지방노동관서 → 지방고용노동관서</li> </ul> </li> </ul>
'12. 2. 1 (시행 '12.7.1)	제11차 개정 (법률 제1127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 사용기간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 개정(제5조제2항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3개월까지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li> </ul> </li> <li>○ 도급인에 대한 제재수단 신설(제28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도급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 신설</li> </ul> </li> </ul>
'17. 9. 19. (시행 '18.3.20)	제12차 개정 (법률 제1490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은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 개정(제5조제2항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더라도, 기능숙련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감액지급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li> </ul> </li> </ul>
'18. 6. 12. (시행 '19.1.1.)	제13차 개정 (법률 제1566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미산입 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제6조제4항, 부칙 제2조)</li> <li>-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조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li> </ul> </li> </ul>
'20. 5. 26. (시행 '20.5.26)	제14차 개정 (법률 제1732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li> </ul>

### 최저임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구 분	개 정 내 용
'87. 7. 1.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12207호)	-
'88. 7. 7.	제1차 개정 (대통령령 제12488호)	○ 적용제외 범위 축소(제2조) - 상시 10명 이상의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 → 10명 이상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변경
'89. 7. 4.	제2차 개정 (대통령령 제12746호)	○ 적용제외 범위 축소(제2조) - 10명 이상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변경
'93. 12. 29.	제3차 개정 (대통령령 제14035호)	○ 최저임금 심의요청일 변경(제7조) - 매년 6월 30일까지 → 매년 3월 31일까지로 변경
'99. 3. 17.	제4차 개정 (대통령령 제16190호)	○ 적용제외 범위 축소(제2조) -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변경 ○ 권한의 위임 규정 신설(제21조의2) - 노동부장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 규정 신설 ○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신설(제22조) -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신설
'04. 3. 17.	제5차 개정 (대통령령 제18312호)	○ 과태료부과·징수절차 확대(제22조) -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 개정에 의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전자문서로도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05. 6. 30.	제6차 개정 (대통령령 제18911호)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 수정(제6조)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받은 자 또는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은 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로 변경
'05. 8. 31.	제7차 개정 (대통령령 제19029호)	○ 적용제외 범위(제2조) 당연 삭제 ※ 법률 제4차 개정('00. 10. 23.) 시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제3조) - 3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의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적용토록 한다는 단서조항 마련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대상 일부 삭제 - 수습사용 중인 자 및 양성훈련자 ○ 명칭 당연 변경(제7조) - 법률 제4차 개정('00. 10. 23.) 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원회 → 위원회로 변경

공포일자	구 분	개 정 내 용
'05. 8. 31.	제7차 개정 (대통령령 제1902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안 고시 내용 중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안 삭제(제8조제2항)</li> <li>○ 공익위원의 위촉기준(제13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학·사회복지학 전공자 대상</li> </ul> </li> </ul>
'06. 6. 12.	제8차 개정 (대통령령 제1951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위원의 위촉기준(제13조제1호), 상임위원의 임용자격 등 (제14조제1호), 특별위원의 자격기준(제15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추가</li> </ul> </li> <li>○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맞추어 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상임위원의 “직급” → 상임위원의 “직위”로 개정(제18조)</li> </ul>
'06. 12. 21.	제9차 개정 (대통령령 제1977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감액 적용(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2007. 1. 1.부터 2011. 12. 31.까지 적용토록 한다는 단서조항 마련</li> <li>※ 2007. 1. 1.~12. 31.까지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30을 감한 금액 적용</li> </ul> </li> <li>○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환산 방식 개정(제5조제1항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 1일평균 소정근로시간수 → 4주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변경</li> </ul> </li> <li>○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대상 일부 삭제(제6조제1항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li> </ul> </li> </ul>
'09. 6. 26.	제10차 개정 (대통령령 제2157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제5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li> <li>-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음</li> </ul> </li> </ul>
'10. 7. 12.	제11차 개정 (대통령령 제2226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li> <li>- 지방노동관서 → 지방고용노동관서</li> </ul> </li> </ul>
'11. 3. 30.	제12차 개정 (대통령령 제2280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일반기준을 정함(별표)</li> </ul> </li> </ul>

공포일자	구 분	개 정 내 용
'11. 12. 21. (시행 '12.1.1)	제13차 개정 (대통령령 제2338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하도록 변경(제3조제2항)</li> <li>- 동 개정규정은 2014. 12. 31까지 효력을 가짐(부칙)</li> </ul>
'12. 1. 6.	제14차 개정 (대통령령 제2348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및 시행(2011.9.30)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제21조의3)</li> <li>-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 처리 가능</li> </ul>
'15. 12. 31.	제15차 개정 (대통령령 제2684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에 대한 해촉(解囑) 사유(제12조의 2) 신설</li> <li>-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li>-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li> </ul>
'18. 3. 20.	제16차 개정 (대통령령 제2871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문화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제3조제2항) 삭제</li> </ul>
'18. 12. 31. (시행 '19.1.1.)	제17차 개정 (대통령령 제2946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월급의 시간급 환산 시,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명문화(제5조1항)</li> <li>○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산출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제5조의2)</li> </ul>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구 분	개 정 내 용
'87. 11. 12.	시행규칙 제정 (노동부령 제42호)	-
'89. 6. 16.	제1차 개정 (노동부령 제53호)	○ 특별위원의 직위지정 변경(제7조) - 경제기획원의 경제기획업무 담당국장·상공부의 산업 정책업무 담당국장·노동부 노정관계 업무 담당국장 → 경제기획원·상공부·노동부 관계국장으로 변경
'94. 11. 14.	제2차 개정 (노동부령 제95호)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별표 1)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내 직업훈련의 양성 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별표 3)
'99. 3. 20.	제3차 개정 (노동부령 제147호)	○ 과태료의 징수절차 신설(제8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토록 규정 ○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 직업훈련의 양성훈련을 받는 자를 삭제(별표 3) ○ 사업주가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중에서 장애가 있는 근로자 또는 수습 중의 근로자를 제외시키기 위한 인가 신청 시 근로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변경(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
'05. 8. 31.	제4차 개정 (노동부령 제233호)	○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신청 서식(제4조) 및 사업장 인가서 교부(제5조) 삭제 - 정신 또는 신체장애 근로자 및 수습사용자 대상 ○ 특별위원 위촉대상 변경(제7조) - 경제기획원·상공부·노동부장관의 관계국장→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노동부의 관계국장 ○ 과태료 징수절차 준용 관계법 변경(제8조) -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 → 「국고관리법 시행규칙」
'06. 12. 27.	제5차 개정 (노동부령 제263호)	○ 최저임금 적용 인가기준 별표 3 내용 중 일부 삭제(시행규칙 제3조) - 감시·단속직 근로자
'08. 3. 3.	제6차 개정 (노동부령 제298호)	○ 특별위원 위촉대상 변경(제7조) -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노동부의 관계국장 →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노동부의 관계국장
'10. 7. 12.	제7차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호)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 - 노동부 → 고용노동부 - 노동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지방노동관서 → 지방고용노동관서

공포일자	구 분	개 정 내 용
'11. 12. 19.	제8차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1호)	○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재정비 - 원칙적으로 법 문장을 한글로 기재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 예시) 규정에 의한 → 따른, 기타 → 그 밖에, 아니한 → 않은
'13. 3. 23.	제9차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78호)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 - 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14. 12. 31.	제10차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 규제의 재검토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용자단체 지정에 대하여 매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16. 6. 16.	제11차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
'17. 2. 3.	제12차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79호)	○ 규제의 재검토 -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용자단체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매 2년마다에서 매 3년마다(2017년 1월 1일 기준)로 변경
'18. 12. 31.	제13차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40호)	○ 개정 최저임금법상의 위임사항 규정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 임금(제2조제1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div> - 상여금 및 그 밖에 준하는 것(제2조제2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div> - 종전 별표 1(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과 관련된 개정 내용은 본칙으로 규정, 별표 2(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삭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추천(제4조제3호)과 최저임금안 이의신청 제기(제5조제1호) 권한 부여 ○ 특별위원 변경 - 종전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하였으나,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 인가신청서 변경 -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 서식을 구체화

## 제2부

# 최저임금위원회 현황

---

1. 위원회 설치·운영 경과
2. 기구
3. 기능 및 주요 업무
4. 운영
5.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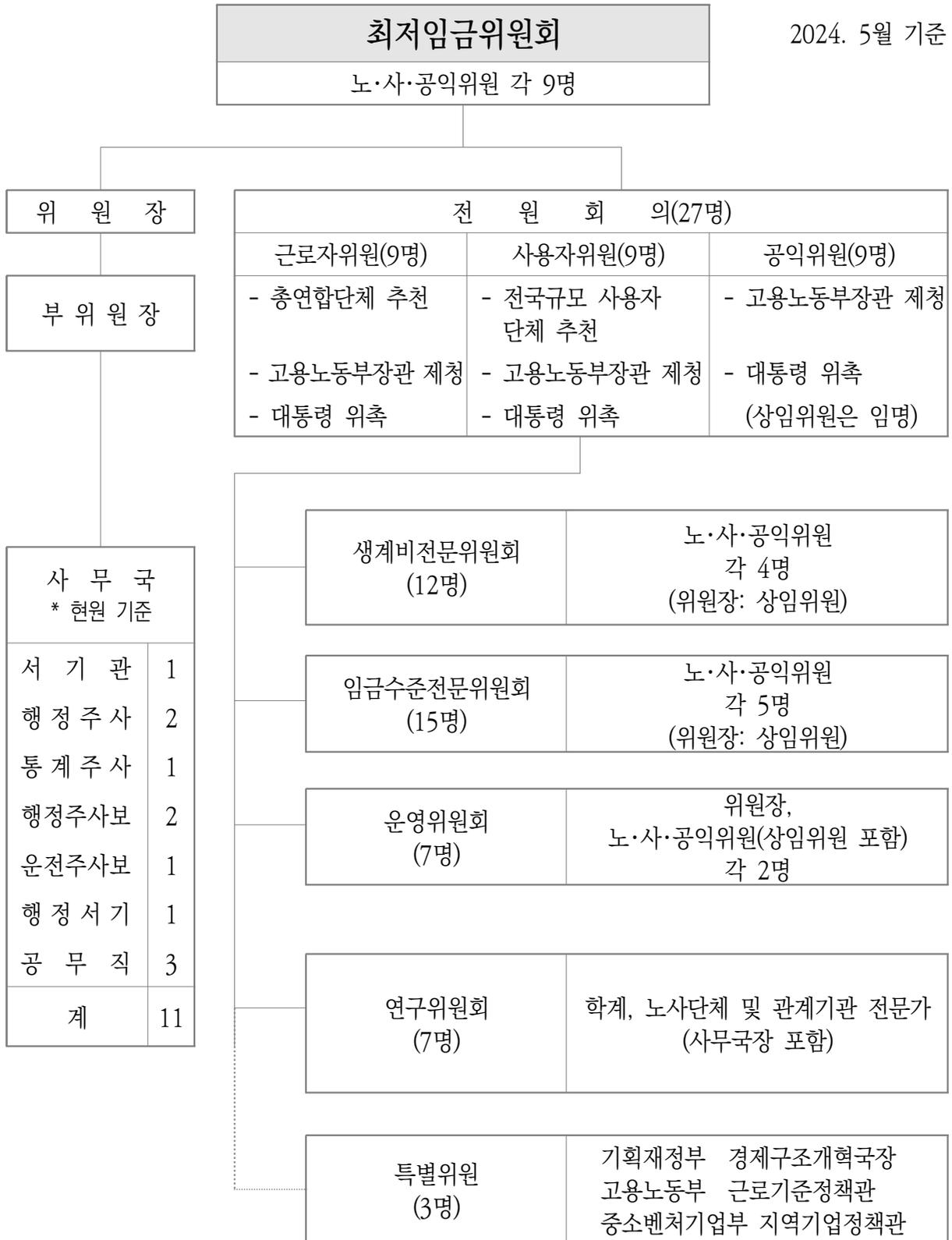


## 1 위원회 설치·운영 경과

- 최저임금위원회 발족 : '87. 7. 30.
  - 1대 위원(노·사·공익위원 26명 : '87. 7. 30.~'90. 8. 28.)
    - \* 노 9명, 사 9명, 공익 8명(상임위원 2명 중 1명이 임명됨)
  - 2대 위원(노·사·공익위원 26명 : '90. 8. 29.~'93. 11. 25.)
    - \* 노 9명, 사 9명, 공익 8명(상임위원 2명 중 1명이 임명됨)
  - 3대 위원(노·사·공익위원 26명 : '93. 11. 26.~'96. 11. 25.)
    - \* 노 9명, 사 9명, 공익 8명(상임위원 2명 중 1명이 임명됨)
  - 4대 위원(노·사·공익위원 27명 : '96. 11. 26.~'00. 4. 3.)
  - 5대 위원(노·사·공익위원 27명 : '00. 4. 4.~'03. 4. 15.)
  - 6대 위원(노·사·공익위원 27명 : '03. 4. 16.~'06. 4. 20.)
  - 7대 위원(노·사·공익위원 27명 : '06. 4. 21.~'09. 4. 20.)
  - 8대 위원(노·사·공익위원 27명 : '09. 4. 21.~'12. 4. 20.)
  - 9대 위원(노·사·공익위원 27명 : '12. 4. 24.~'15. 4. 23.)
  - 10대 위원(노·사·공익위원 27명 : '15. 4. 24.~'18. 5. 13.)
  - 11대 위원(노·사·공익위원 27명 : '18. 5. 14.~'21. 5. 13.)
  - 12대 위원(노·사·공익위원 27명 : '21. 5. 14.~'24. 5. 13.)
  - 13대 위원(노·사·공익위원 27명 : '24. 5. 14.~'27. 5. 13.)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개설 : '87. 12. 18.
-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 제정, 공포 : '87. 12. 9. 대통령령 제12304호
  - '89. 6. 17. 대통령령 제12733호(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
  - '92. 12. 12. 대통령령 제13773호(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
  - '95. 5. 1. 대통령령 제14642호(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 : 폐지
  - '95. 5. 1. 대통령령 제14642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를 이 직제에 흡수 통합함

- '00. 12. 30. 대통령령 제17072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사무국을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으로 함
  - '06. 6. 30. 대통령령 제19588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13. 3. 23. 대통령령 제2444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13. 12. 11. 대통령령 제2495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시행 : '87. 7. 31.(규칙 제1호)
- 1차 개정 : '88. 4. 1. 규칙 제2호(전부 개정)
  - 2차 개정 : '88. 7. 1. 규칙 제3호
  - 3차 개정 : '89. 8. 8. 규칙 제4호
  - 4차 개정 : '99. 4. 7. 규칙 제5호
  - 5차 개정 : '99. 6. 29. 규칙 제6호
  - 6차 개정 : '01. 4. 12. 규칙 제7호
  - 7차 개정 : '06. 6. 16. 규칙 제8호
  - 8차 개정 : '08. 4. 4. 규칙 제9호(전부 개정)
  - 9차 개정 : '09. 6. 5. 규칙 제10호
  - 10차 개정 : '11. 3. 18. 규칙 제11호

## 2 기구



## 3 기능 및 주요 업무

### 가. 기능

-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 나. 주요 업무

-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의결하여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출
    -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액 등 심의
- 심의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심의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현장 의견 청취
  - 최저임금 심의·의결에 참고하기 위한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의견 청취

## 4 운영

### 가. 회의 종류

종 별	운 영 사 항
전 원 회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심의 및 재심의·의결</li> <li>○ 최저임금제도 발전에 대한 연구 및 건의</li> </ul>
생계비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 심사</li> <li>○ 노·사 제시 생계비 산출안 논의</li> </ul>
임금수준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심사</li> <li>○ 노·사 제시 임금수준안 논의</li> </ul>
기 타 회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위원회: 회의 일정 협의 및 안건조정</li> <li>○ 연구위원회: 실무사항의 사전협의 및 조정</li> </ul>

### 나. 연도별 회의 개최 현황

(단위 : 회)

연도	회의 종류	계	전원 회의	생계비 전문 위원회	임금 수준 전문 위원회	운영 위원회	공익 위원회	연구 위원회	간사 회의	제도 개선 위원회
2023		39	15	1	1	11	6	5	0	0
2022		26	8	1	2	3	5	7	0	0
2021		31	9	1	1	4	10	6	0	0
2020		22	9	1	1	2	6	3	0	0
2019		39	13	1	1	5	12	7	0	0
2018		34	15	1	1	2	8	3	0	4
2017		33	11	2	1	3	5	7	0	4
2016		28	14	2	2	3	4	3	0	0
2015		44	14	3	2	10	4	5	0	6
2014		46	7	2	2	13	16	6	0	0

연도	회의 종류	계	전원 회의	생계비 전문 위원회	임금 수준 전문 위원회	운영 위원회	공익 위원회	연구 위원회	간사 회의	제도 개선 위원회
2013		43	7	2	2	11	17	4	0	0
2012		47	12	2	2	4	20	7	0	0
2011		61	13	2	2	13	18	13	0	0
2010		51	8	2	2	15	16	8	0	0
2009		53	8	3	2	15	18	7	0	0
2008		48	7	2	3	15	15	6	0	0
2007		36	6	2	3	14	4	7	0	0
2006		28	5	2	3	9	4	5	0	0
2005		16	6	2	3	1	1	3	0	0
2004		17	7	2	2	0	1	2	0	3
2003		13	7	2	2	1	1	0	0	0
2002		20	7	2	3	1	3	4	0	0
2001		22	7	3	5	1	3	3	0	0
2000		26	10	3	4	5	2	2	0	0
1999		21	5	3	4	0	6	0	3	0
1998		20	8	3	2	2	0	3	2	0
1997		28	9	2	5	4	5	1	2	0
1996		22	7	3	5	2	3	0	2	0
1995		21	5	3	5	1	3	0	4	0
1994		25	9	3	4	2	4	1	2	0
1993		23	5	3	5	2	5	1	2	0
1992		33	7	3	5	2	9	5	2	0
1991		30	4	2	6	1	10	2	5	0
1990		36	5	4	6	1	12	2	6	0
1989		25	3	2	4	2	8	2	4	0
1988		25	4	2	9	3	1	6	0	0
1987		25	8	4	7	1	5	0	0	0

## 다. 제13대(2024. 5. 14. ~ 2027. 5. 13.) 위원 명단

###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024. 5월 기준)

구 분	성 명	소 속	위촉 기간	비고
공익위원 (9명)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24.5.14.~ '27.5.13.	'24.5.21. 위원장 선출 '24.5.21. 부위원장 선출
	하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24.1.30.~ '27.1.29.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24.5.14.~ '27.5.13.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4.5.14.~ '27.5.13.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4.5.14.~ '27.5.13.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24.5.14.~ '27.5.13.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24.5.14.~ '27.5.13.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24.5.14.~ '27.5.13.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4.5.14.~ '27.5.13.	
근로자위원 (9명)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24.5.14.~ '27.5.13.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24.5.14.~ '27.5.13.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24.5.14.~ '27.5.13.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24.5.14.~ '27.5.13.	
	박용락	전국금속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24.5.14.~ '27.5.13.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24.5.14.~ '27.5.13.	
	장도준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기획교섭실장	'24.5.14.~ '27.5.13.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24.5.14.~ '27.5.13.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지부장	'24.5.14.~ '25.6.13.	

구 분	성 명	소 속	위촉 기간	비고
사용자위원 (9명)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24.5.14.~ '27.5.13.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24.5.14.~ '27.5.13.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24.5.14.~ '27.5.13.	
	이경숙	(주)뷰티콜라겐 대표이사	'24.5.14.~ '27.5.13.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24.5.14.~ '27.5.13.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24.5.14.~ '27.5.13.	
	금지선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24.5.14.~ '27.5.13.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24.5.14.~ '27.5.13.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24.5.14.~ '27.5.13.	
특별위원 (3명)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 연구위원

성 명	소 속	비고
방형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양근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HR정책팀장	
박성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과장	
박종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천춘희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 회의 종류별 위원 명단

(2024. 5월 기준)

구 분	위 원 장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 익 위 원
전원회의	이인재	류기섭 이미선 정문주 이정희 박용락 박정훈 장도준 전지현 최영미	류기정 이명로 박복규 이경숙 하상우 이오선 금지선 송유경 이기재	이인재 하헌제 권순원 오은진 이정민 성재민 김수완 안지영 김기선
생계비 전문위원회	하헌제	이미선 정문주 박정훈 최영미	류기정 이오선 금지선 송유경	하헌제 권순원 성재민 김기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하헌제	류기섭 이정희 박용락 장도준 전지현	이명로 박복규 이경숙 하상우 이기재	하헌제 오은진 이정민 김수완 안지영
운영위원회	이인재	류기섭 이미선	류기정 이명로	하헌제 권순원

## 5

##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 심의 과정

- 심의근거 :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 심의기준 :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 심의기관 : 최저임금위원회

## 〈심의 과정〉

- ①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서 접수(매년 3월 31까지)
- ② 전원회의 보고·상정(최저임금안 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 ③ 심의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 ▲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
- ④ 전문위원회 심사
  - ▲ 생계비전문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생계비 산출안 심사
  -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심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심사, 노·사 제시 임금수준안 심사
- ⑤ 전원회의 심의·의결(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⑥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결정 과정

- 결정근거 : 「최저임금법」 제8조 ~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제10조
- 결정권자 : 고용노동부장관

## 〈결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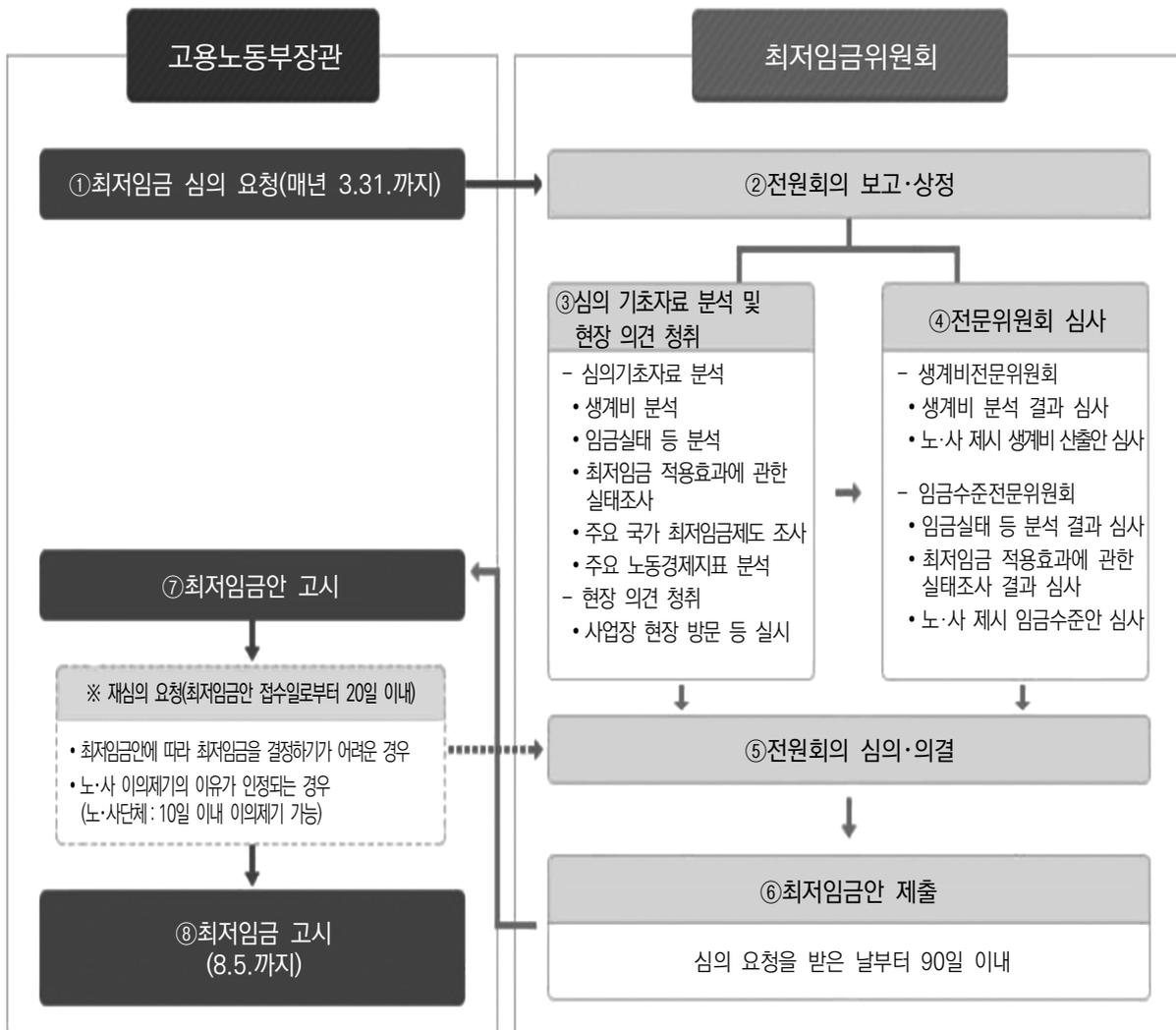
- ①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 ② 이의제기 접수: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 이상 심의기간 지정)
    -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 재심의·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 ③ 최저임금 결정·고시 : 8월 5일까지
  - ※ 효력발생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심의 일정

구 분	일 정
전원회의	4~6월
전문위원회 (생계비, 임금수준)	4~6월
운영위원회	수시
연구위원회	수시

## 심의·결정 과정 흐름도





## 제3부

# 최저임금 현황

1.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액(고시기준)
3.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안 조정 현황
4.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
5.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을
6.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영향률
7. 적용 연도별·조사기관별 생계비 변동 추이





# 1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43호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4.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1. 최저임금액

업 종	결정단위	시 간 금
모	든	산
	업	9,860원

◆ 월 환산액 2,060,7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4. 1. 1. ~ 2024. 12. 31.

## 2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액(고시기준)

(단위: 원, %)

적용 연도	시간급	일 급 (8시간기준)	월 급 (209시간기준)	인 상 륜 (시간급기준)	심의·의결일	결정 고시일
'24	9,860	-	2,060,740	2.5	'23. 7. 19.	'23. 8. 4.
'23	9,620	-	2,010,580	5.0	'22. 6. 29.	'22. 8. 5.
'22	9,160	-	1,914,440	5.05	'21. 7. 12.	'21. 8. 5.
'21	8,720	-	1,822,480	1.5	'20. 7. 14.	'20. 8. 5.
'20	8,590	-	1,795,310	2.87	'19. 7. 12.	'19. 8. 5.
'19	8,350	-	1,745,150	10.9	'18. 7. 14.	'18. 8. 3.
'18	7,530	-	1,573,770	16.4	'17. 7. 15.	'17. 8. 4.
'17	6,470	-	1,352,230	7.3	'16. 7. 16.	'16. 8. 5.
'16	6,030	-	1,260,270	8.1	'15. 7. 9.	'15. 8. 5.
'15	5,580	-	-	7.1	'14. 6. 27.	'14. 8. 4.
'14	5,210	-	-	7.2	'13. 7. 5.	'13. 8. 2.
'13	4,860	-	-	6.1	'12. 6. 30.	'12. 8. 1.
'12	4,580	-	-	6.0	'11. 7. 13.	'11. 8. 1.
'11	4,320	-	-	5.1	'10. 7. 3.	'10. 8. 3.
'10	4,110	-	-	2.75	'09. 6. 30.	'09. 8. 3.
'09	4,000	-	-	6.1	'08. 6. 27.	'08. 7. 23.
'08	3,770	-	-	8.3	'07. 6. 27.	'07. 8. 1.
'07	3,480	-	-	12.3	'06. 6. 29.	'06. 8. 3.
'05. 9.~'06. 12.	3,100	-	-	9.2	'05. 6. 29.	'05. 7. 28.
'04. 9.~'05. 8.	2,840	22,720	-	13.1	'04. 6. 25.	'04. 8. 3.
'03. 9.~'04. 8.	2,510	20,080	-	10.3	'03. 6. 27.	'03. 7. 31.
'02. 9.~'03. 8.	2,275	18,200	-	8.3	'02. 6. 28.	'02. 7. 26.
'01. 9.~'02. 8.	2,100	16,800	-	12.6	'01. 7. 20.	'01. 8. 6.
'00. 9.~'01. 8.	1,865	14,920	-	16.6	'00. 7. 21.	'00. 8. 5.
'99. 9.~'00. 8.	1,600	12,800	-	4.9	'99. 7. 20.	'99. 8. 5.
'98. 9.~'99. 8.	1,525	12,200	-	2.7	'98. 7. 23.	'98. 8. 17.
'97. 9.~'98. 8.	1,485	11,880	-	6.1	'97. 7. 24.	'97. 8. 12.
'96. 9.~'97. 8.	1,400	11,200	-	9.8	'96. 7. 5.	'96. 8. 5.
'95. 9.~'96. 8.	1,275	10,200	-	8.97	'95. 7. 3.	'95. 8. 5.
'94. 9.~'95. 8.	1,170	9,360	-	7.8	'94. 7. 5.	'94. 7. 29.
'94. 1.~8.	1,085	8,680	-	7.96	'93. 10. 11.	'93. 12. 4.
'93	1,005	8,040	-	8.6	'92. 10. 10.	'92. 12. 4.
'92	925	7,400	-	12.8	'91. 10. 11.	'91. 12. 13.
'91	820	6,560	-	18.8	'90. 10. 12.	'90. 12. 19.
'90	690	5,520	-	15.0	'89. 10. 12.	'89. 11. 27.
'89	600	4,800	-	1그룹 29.7 2그룹 23.1	'88. 10. 12.	'88. 11. 24.
'88	1그룹 462.50 2그룹 487.50	3,700 3,900	-		'87. 12. 24.	'87. 12. 31.

### 3

##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안 조정 현황

(단위 : 원, %)

결정 연도	적용 연도	최 초 제 시 (안)				최 종 제 시 (안)						최 저 임 금 안 의 결		
		근로자측	인상률	사용자측	인상률	근로자측	인상률	사용자측	인상률	공익측	인상률	임금액	인상률	방 법
'23	'24	12,210	26.9	9,620	0	10,000	3.95	9,860	2.5	-	-	9,860	2.5	노·사 최종(안) 표결, 출석 26명 중, 사용자(안) 17, 근로자(안) 8, 기권 1로 사용자(안) 의결
'22	'23	10,890	18.9	9,160	0	10,080	10.0	9,330	1.86	9,620	5.0	9,620	5.0	공익(안) 표결, 출석 23명 중, 찬성 12, 반대 1, 기권 10로 가결 (근로자측 4명 불참, 사용자측 전원 표결 선포 후 퇴장)
'21	'22	10,800	23.9	8,720	0	10,000	14.7	8,850	1.49	9,160	5.05	9,160	5.05	공익(안) 표결, 출석 23명 중, 찬성 13, 반대 0, 기권 10로 가결 (근로자측 4명 불참, 사용자측 전원 표결 시 퇴장)
'20	'21	10,000	16.4	8,410	-2.1	9,110	6.1	8,635	0.52	8,720	1.5	8,720	1.5	공익(안) 표결, 출석 16명 중, 찬성 9, 반대 7로 가결 (근로자측 4명 불참, 근로자측 5명, 사용자측 2명 표결 선포 전 퇴장)
'19	'20	10,000	19.8	8,000	-4.2	8,880	6.3	8,590	2.87	-	-	8,590	2.87	노·사 최종(안) 표결, 출석 27명 중, 사용자(안) 15, 근로자(안) 11, 기권 1로 사용자(안) 의결
'18	'19	10,790	43.3	7,530	0	8,680	15.3	7,530	0	8,350	10.9	8,350	10.9	노측 최종(안)과 공익(안) 표결, 출석 14명 중, 공익(안) 8, 근로자(안) 6으로 공익(안) 의결 (사용자측 전원, 민주노동 4명 불참)
'17	'18	10,000	54.6	6,625	2.4	7,530	16.4	7,300	12.8	-	-	7,530	16.4	노·사 최종(안) 표결, 출석 27명 중, 근로자(안) 15, 사용자(안) 12로 근로자(안) 의결

결정 연도	적용 연도	최 초 제 시 (안)				최 종 제 시 (안)						최 저 임 금 안 의 결		
		근로자측	인상률	사용자측	인상률	근로자측	인상률	사용자측	인상률	공익측	인상률	임금액	인상률	방 법
'16	'17	10,000	65.8	6,030	0	10,000	65.8	6,470	7.3	-	-	6,470	7.3	사용자측 최종(안) 표결, 출석 16명 중, 찬성 15, 반대 1로 가결 (근로자측 전원 불참, 사용자측 2명 표결 선포 전 퇴장)
'15	'16	10,000	79.2	5,580	0	8,100	45.2	5,715	2.4	6,030	8.1	6,030	8.1	공익(안) 표결, 출석 16명 중, 찬성 15, 반대 1로 가결 (근로자측 전원 불참, 사용자측 2명 표결 선포 전 퇴장)
'14	'15	6,700	28.6	5,210	0	5,990	15.0	5,320	2.1	5,580	7.1	5,580	7.1	공익(안) 표결, 출석 27명 중, 찬성 18, 기권 9로 의결 (표결 선포 후 사용자측 전원 퇴장)
'13	'14	5,910	21.6	4,860	0	5,790	19.1	4,910	1.0	5,210	7.2	5,210	7.2	공익(안) 표결, 출석 24명 중, 찬성 15, 기권 9로 가결 (표결 선포 전 근로자측 3명 퇴장, 표결 선포 후 사용자측 전원 퇴장)
'12	'13	5,780	26.2	4,580	0	4,995	9.1	4,735	3.4	4,860	6.1	4,860	6.1	공익(안) 표결, 출석 18, 찬성 10, 기권 8로 가결 (근로자측 8명, 사용자측 1명 불참, 표결 선포 후 사용자측 8명 퇴장)
'11	'12	5,410	25.2	4,320	0	4,780	10.6	4,580	6.0	4,580~ 4,620	6.0~ 6.9	4,580	6.0	공익(안) 범위 내에서 제시된 사용자(안) 표결, 출석 19명 중, 찬성 12, 반대 4, 기권 3으로 가결 (사용자측 1명 불참, 근로자측 6명 불참, 근로자측 3명 표결 미참여로 기권 처리)
'10	'11	5,180	26.0	4,110	0	4,470	8.8	4,223	2.75	4,320	5.1	4,320	5.1	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사용자측 퇴장으로 기권)
'09	'10	5,150	28.7	3,770	-5.8	4,155	3.9	4,045	1.125	4,110	2.75	4,110	2.75	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결정 연도	적용 연도	최 초 제 시 (안)				최 종 제 시 (안)						최 저 임 금 안 의 결		
		근로자측	인상률	사용자측	인상률	근로자측	인상률	사용자측	인상률	공익측	인상률	임금액	인상률	방 법
'08	'09	4,760	26.3	3,770	0	4,105	8.9	3,925	4.1	4,000	6.1	4,000	6.1	공익(안)에 노·사 합의
'07	'08	4,480	28.7	3,480	0	3,770	8.3	3,770	8.3	3,770	8.3	3,770	8.3	노·사·공익 합의
'06	'07	4,200	35.5	3,175	2.4	3,490	12.6	3,470	11.9	3,480	12.3	3,480	12.3	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05	'05. 9.~ '06. 12.	3,900 (31,200)	37.0	2,925 (23,400)	3.0	3,615 (28,920)	27.3	3,100 (24,800)	9.2	-	-	3,100 (24,800)	9.2	표결에 의거 사용자측(안) 의결(근로자측 퇴장)
'04	'04. 9.~ '05. 8.	3,390 (27,120)	35.0	2,575 (20,600)	2.6	2,840 (22,720)	13.1	2,765 (22,120)	10.2	-	-	2,840 (22,720)	13.1	표결에 의거 근로자측(안) 의결
'03	'03. 9.~ '04. 8.	3,100 (24,800)	36.3	2,355 (18,840)	3.5	2,750 (22,000)	20.9	2,510 (20,080)	10.3	-	-	2,510 (20,080)	10.3	표결에 의거 사용자측(안) 의결(근로자측 불참)
'02	'02. 9.~ '03. 8.	2,700 (21,600)	28.6	2,170 (17,360)	3.3	2,340 (18,720)	11.4	2,275 (18,200)	8.3	-	-	2,275 (18,200)	8.3	표결에 의거 사용자측(안) 의결
'01	'01. 9.~ '02. 8.	2,837 (22,696)	52.1	1,930 (15,440)	3.5	2,100 (16,800)	12.6	2,060 (16,480)	10.5	-	-	2,100 (16,800)	12.6	표결에 의거 근로자측(안) 의결
'00	'00. 9.~ '01. 8.	2,706 (21,648)	69.1	1,686 (13,488)	5.4	1,865 (14,920)	16.6	1,740 (13,920)	8.8	-	-	1,865 (14,920)	16.6	표결에의거 근로자측(안) 의결(사용자측 퇴장)
'99	'99. 9.~ '00. 8.	1,720 (13,760)	12.8	1,525 (12,200)	0.0	1,600 (12,800)	4.9	1,600 (12,800)	4.9	-	-	1,600 (12,800)	4.9	노·사·공익 합의(만장일치)
'98	'98. 9.~ '99. 8.	1,615 (12,920)	8.8	1,485 (11,880)	0.0	1,525 (12,200)	2.7	1,485 (11,880)	0.0	-	-	1,525 (12,200)	2.7	표결에 의거 근로자측(안) 의결



결정 연도	적용 연도	최 초 제 시 (안)				최 종 제 시 (안)						최 저 임 금 안 의 결		
		근로자측	인상률	사용자측	인상률	근로자측	인상률	사용자측	인상률	공익측	인상률	임금액	인상률	방 법
'97	'97. 9.~ '98. 8.	1,616 (12,928)	15.4	1,400 (11,200)	0.0	(97.9~12) 1,480 (11,840) (98.1~8) 1,500 (12,000)	5.7	1,485 (11,880)	6.1	-	-	1,485 (11,880)	6.1	표결에 의거 사용자측(안) 의결
'96.7	'96. 9.~ '97. 8.	1,506 (12,048)	18.1	1,330 (10,640)	4.3	1,430 (11,440)	12.2	1,385 (11,080)	8.6	1,400 (11,200)	9.8	1,400 (11,200)	9.8	공익(안)에 노측 찬성(사용자측 퇴장)
'95.7.	'95. 9.~ '96. 8.	1,340 (10,720)	14.5	1,220 (9,760)	4.3	1,275 (10,200)	8.97	1,275 (10,20)	8.97	-	-	1,275 (10,20)	8.97	노·사합의(안)에 공익측 찬성(만장일치)
'94.7	'94. 9.~ '95. 8.	1,240 (9,920)	14.3	1,120 (8,960)	3.2	1,185 (9,480)	9.2	1,170 (9,360)	7.8	1,180 (9,440)	8.8	1,170 (9,360)	7.8	사용자(안)에 공익측 찬성(근로자측 퇴장)
'93.10	'94. 1.~ '94. 8.	1,160 (9,280)	15.4	1,035 (8,280)	3.0	1,085 (8,680)	7.96	1,085 (8,680)	7.96	-	-	1,085 (8,680)	7.96	노·사합의(안)에 공익측 찬성(만장일치)
'92.10	'93	1,080 (8,640)	16.8	925 (7,400)	0	1,025 (8,200)	10.8	995 (7,960)	7.6	1,005 (8,040)	8.6	1,005 (8,040)	8.6	공익(안)에 사측 찬성(근로자측 불참)
'91	'92	990 (7,290) 월223,818	20.7	1업종 : 875 (7,000) 2업종 : 850 (6,800)	6.7 3.7	930 (7,440)	13.4	920 (7,360)	12.1	925 (7,400)	12.8	925 (7,400)	12.8	공익(안)에 노·사 합의(만장일치)
'90	'91	900 (7,200)	30.4	750 (6,000)	8.7	875 (7,000)	26.8	750 (6,000)	8.7	820 (6,560)	18.8	820 (6,560)	18.8	공익(안)에 노측 찬성(사용자측 불참)

결정 연도	적용 연도	최 초 제 시 (안)				최 종 제 시 (안)						최 저 임 금 안 의 결		
		근로자측	인상률	사용자측	인상률	근로자측	인상률	사용자측	인상률	공익측	인상률	임금액	인상률	방 법
'89	'90	712 (5,696)	18.6	680 (5,440)	13.3	705 (5,648)	17.5	685 (5,480)	14.1	690 (5,520)	15.0	690 (5,520)	15.0	공익(안)에 노·사 합의(만장일치)
'88	'89	752 (6,017)	62.5 54.2	500 (4,000)	8.1 2.5	625 (5,000)	35.1 28.2	525 (4,200)	13.5 7.5	600 (4,800)	29.7 23.1	600 (4,800)	29.7 23.1	공익(안)에 근로자측 찬성(사용자측 퇴장)
'87	'88	1그룹 620.80 (4,966) 2그룹 662.50 (5,300)	-	1그룹 416.70 (3,333) 2그룹 437.50 (3,500)	-	1그룹 620.80 (4,966) 2그룹 662.50 (5,300)	-	1그룹 450.00 (3,600) 2그룹 487.50 (3,900)	-	1그룹 462.50 (3,700) 2그룹 487.50 (3,900)	-	1그룹 462.50 (3,700) 2그룹 487.50 (3,900)	-	공익(안)에 사측 찬성의결(근로자측 퇴장)

주) · 시간급 기준, ( )내는 1일 8시간 기준 임금임

- '89년도 각 인상률란의 상단은 1그룹 대비, 하단은 2그룹 대비 인상률임
- '88년도 최저임금안은 제조업의 28개 소분류업종을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함
  - ┌ 1그룹 : 식료품, 섬유, 의복, 가죽, 신발, 나무, 종이, 고무, 플라스틱, 도기·자기, 전기기기, 기타 제조업(12개업종)
  - └ 2그룹 : 음료품, 담배, 가구, 인쇄출판, 산업화학, 기타화학, 석유정제, 석유석탄, 유리, 비금속, 철강, 비철금속, 조립금속, 기계, 운수장비, 정밀기계(16개업종)
- '92년도 사용자측 제시안의 업종구분
  - ┌ 1업종 : 일반업종
  - └ 2업종 : 섬유, 의복, 가죽, 모피, 도기, 자기, 토기제조, 기타 제조업

## 4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

○ '24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23.5.2.~7.19.)

(단위 : 원, %)

회 의 종 류	구분 차수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전원회의	2차 (5.25)	-	-	-	-	-	-	- 표결 없이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
	7차 (6.22)	-	-	-	-	-	-	-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표결에 부쳐, 출석 26명 중 반대 15명, 찬성 11명으로 부결
	8차 (6.27)	12,210	26.9	9,620	0	-	-	- 노·사 최초제시안 제출
	10차 (7.4)	12,130	26.1	9,650	0.3	-	-	- 노·사 1차 수정안 제출
	11차 (7.6)	12,000	24.7	9,700	0.8	-	-	- 노·사 2차 수정안 제출
		11,540	19.9	9,720	1.0	-	-	- 노·사 3차 수정안 제출
	12차 (7.11)	11,140	15.8	9,740	1.2	-	-	- 노·사 4차 수정안 제출
	13차 (7.13)	11,040	14.8	9,755	1.4	-	-	- 노·사 5차 수정안 제출
		10,620	10.4	9,785	1.7	-	-	- 노·사 6차 수정안 제출
	14차 (7.18)	10,620	10.4	9,795	1.8	-	-	- 노·사 7차 수정안 제출
		10,580	10.0	9,805	1.9	-	-	- 노·사 8차 수정안 제출
	15차 (7.19)					9,820 ~10,150	21 ~5.5	- 노·사 양측 요청으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10,020	4.2	9,830	2.2	-	- 노·사 9차 수정안 제출
			미제출		9,840	2.3	-	- 노·사 10차 수정안 제출
						9,920	3.12	- 공익위원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좁혀졌다고 판단하여 노·사에 합의 조정안을 제시 -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노·사 최종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결정
	10,000	3.95	9,860	2.5	-	-	- 노·사 최종안 제출 - 노·사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26명 중 사용자위원인 17명 근로자위원인 8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 의결	

○ '23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22.4.5.~6.29.)

(단위 : 원, %)

구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 의 종 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전원회의	3차 (6.9)	-	-	-	-	-	-	- 표결 없이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	
	4차 (6.16)	-	-	-	-	-	-	-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표결에 부쳐, 출석 27명 중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부결	
	6차 (6.23)	10,890	18.9	9,160	0	-	-	- 노·사 최초제시안 제출	
	7차 (6.28)	10,340	12.9	9,260	1.1	-	-	- 노·사 2차제시안(1차 수정안) 제출	
			10,090	10.1	9,310	1.6	-	-	- 노·사 3차제시안(2차 수정안) 제출
			10,080	10.0	9,330	1.86	-	-	- 노·사 4차제시안(3차 수정안) 제출
	8차 (6.29)		-	-	-	-	9,410~ 9,860	27~ 7.6	- 노·사 양측 요청으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9,620	5.0	-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2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 * 공익위원이 단일안을 제시하자 이에 반발하여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4명) 퇴장 ** 표결선포 후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하여 기권으로 처리

● '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21.4.20. ~ 7.12.)

(단위 : 원, %)

구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 의 종 류	차 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전원회의	4차 (6.22)	-	-	-	-	-	-	- 표결 없이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 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	
	6차 (6.29)	10,800	23.9	8,720	0	-	-	-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표결에 부쳐, 출석 27명 중 반대 15명,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부결 - 노·사 최초제시안 제출	
	8차 (7.8)	10,440	19.7	8,740	0.2	-	-	- 노·사 2차 제시안(1차 수정안) 제출	
	9차 (7.12)		10,320	18.3	8,810	1.0	-	-	- 노·사 3차 제시안(2차 수정안) 제출
			10,000	14.7	8,850	1.49	-	-	- 노·사 4차 제시안(3차 수정안) 제출
			-	-	-	-	9,030~ 9,300	3.6~ 6.7	- 노·사 양측 요청으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 민주노총 근로자위원(4명)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여 퇴장
						9,160	5.05	-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2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가결 (사용자위원 전원은 공익위원 단일안에 대해 반대하여 퇴장, 기권으로 처리)	

○ '21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20.6.11. ~ 7.14.)

(단위 : 원, %)

구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 의 종 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전원회의	2차 (6.25)	-	-	-	-	-	-	- 표결 없이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 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합의	
	3차 (6.29)	-	-	-	-	-	-	-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 결과 27명 중 14명 반대로 부결	
	4차 (7.1)	10,000	16.4	8,410	-2.1	-	-	- 노·사 최초안 제시(7.1)	
	6~7차 (7.9 ~ 7.10)	9,430	9.8	8,500	-1.0	-	-	- 노·사 1차 수정안 제시(7.9) (수정안 제시 전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며 근로자위원 5명 퇴장, 수정안 제출 후 근로자위원 4명 퇴장)	
									※ 차수 변경(6차→7차) - 공익위원 호소문 발표(7.10)
	8~9차 (7.13 ~ 7.14)						8,620~ 9,110	0.349~ 6.1	- 노·사 양측 요청으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7.13) -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심의 불참
			9,110	6.1	8,620	0.349	-	-	- 노·사 2차 수정안 제시(7.13)
			9,110	6.1	8,635	0.52	-	-	- 노·사 3차 수정안 제시(7.13)
			-	-	-	-	8,720	1.5	※ 차수 변경(8차→9차) - 노·사 양측 요청으로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전원, 사용자위원 2명 퇴장) -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가결

● '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19.5.30. ~ 7.12.)

(단위 : 원, %)

구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 의 종 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전원회의	5차 (6.26)	-	-	-	-	-	-	-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하고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 하는 것에 대해 27명 중 16명 찬성으로 가결 -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 결과 27명 중 17명 반대로 부결 (표결 후 사용자위원 전원 퇴장)
	7차 (7.2)	10,000	19.8	-	-	-	-	- 근로자측 최초안 제시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8~9차 (7.3 ~ 7.4)	-	-	8,000	-4.2	-	-	- 사용자측 최초안 제시 ※ 차수 변경(8차→9차)
	10차 (7.9)							(근로자위원 전원 불참)
	11차 (7.10)	9,570	14.6	8,185	-2.0	-	-	- 노·사 1차 수정안 제시
	13차 (7.12 00:00 ~ 05:30)	8,880	6.3	8,590	2.87	-	-	- 노·사 최종안 제출 - 노·사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27명 중 사용자위원안 15명 근로자위원안 11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 의결 ※ 차수 변경(12차→13차)

○ '19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18.5.17. ~ 7.14.)

(단위 : 원, %)

구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일급)	인상률	시급(일급)	인상률	시급(일급)	인상률	
전원회의	9차 (7.3)	-	-	-	-	-	-	-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하고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 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 의결
	11차 (7.5)	10,790	43.3	7,530	동결	-	-	- 노·사 최초안 제시
	12차 (7.10)	-	-	-	-	-	-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대해 표결 결과, 출석위원 23명 중 14명 반대로 부결(표결 후 사용자위원 전원 퇴장)
	13차 (7.11)	-	-	-	-	-	-	-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14차 (7.13 10:00 ~ 23:55)	8,630	15.3	-	-	-	-	- 근로자측 1차 수정안이자 최종안 제시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15차 (7.14 00:00 ~ 04:35)	8,630	15.3	-	-	8,350	10.9	- 사용자위원 2회(7.11, 7.13) 불참으로 공익안 제시 - 출석위원 14명 중 8:6으로 표결에 따라 공익(안) 의결(근로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 차수 변경(14차→15차)

● '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17.4.6. ~ 7.15.)

(단위 : 원, %)

구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 의 종 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전원회의	6차 (6.29)	10,000	54.6	6,625	2.4	-	-	- 노·사 최초안 제시
	10차 (7.12)	9,570	47.9	6,670	3.1	-	-	- 1차 수정안 제시
		미제출	-	제출 (비공개)	-	-	-	- 2차 수정안 제시 (근로자측은 원안고수, 사용자측은 제출하였으나 비공개)
	11차 (7.15)	8,330	28.7	6,740	4.2	-	-	- 3차 수정안 제시
		7,530	16.4	7,300	12.8	-	-	- 노·사 최종안 제시 - 노·사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27명 중 근로자위원안 15명 사용자위원안 12명으로 근로자위원안 의결

○ '1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16.4.7. ~ 7.16.)

(단위 : 원, %)

구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 의 종 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전원회의	6차 (6.27)	10,000	65.8	6,030	동결	-	-	- 노·사 최초안 제시
	12차 (7.12 15:00~ 7.13 01:30)	-	-	-	-	6,253 ~ 6,838	3.7 ~ 13.4	- 공익위원 호소문 채택 - 공익위원 심의구간안 제시 (7.13)
	13차 (7.15 17:00 ~ 23:50)	-	-	6,470	7.3	-	-	- “Final Offer Arbitration (최종안 결정방식) 선언” - 근로자위원 전원퇴장(최종안 미제시)
	14차 (7.16 03:00 ~ 04:10)	-	-	6,470	7.3	-	-	- 공익위원 입장 발표(근로자 위원의 복귀를 간절히 기대한 다는 내용) - 사용자측 안 제시 - 근로자위원 2회(7.15, 7.16) 불참으로 사용자측 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16명 찬성 15, 반대 1로 의결(근로자위원 전원 불참, 사용자위원 2명 표결 선포 전 퇴장)

● '1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15.4.9. ~ 7.9.)

(단위 : 원, %)

구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 의 종 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전원회의	5차 (6.18)	10,000	79.2	5,580	동결	-	-	- 노·사 최초안 제시
	9차 (7.3)	8,400	50.5	5,610	0.5	-	-	- 1차 수정안 제시
		8,200	47.0	5,645	1.2	-	-	- 2차 수정안 제시(7.7)
	11차 (7.7 15:30 ~ 7.8 05:40)	8,100	45.2	5,715	2.4	-	-	- 3차 수정안 제시(7.8)
		-	-	-	-	5,940 ~ 6,120	6.5 ~ 9.7	- 공익위원 심의촉진안 제시 후 근로자위원 전원 퇴장(7.8)
	12차 (7.8 19:30 ~ 7.9 01:17)	-	-	-	-	6,030	8.1	- 사용자위원 요청으로 제시된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16명(使 7, 公 9) 중 찬성 15, 반대 1로 의결(7.9) (근로자위원 전원 불참, 표결 선포 전 사용자위원 2명 퇴장)

○ '15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14.4.11. ~ 6.27.)

(단위 : 원, %)

구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일급)	인상률	시급(일급)	인상률	시급(일급)	인상률	
전원회의	3차 (6.12)	6,700	28.6	5,210	동결	-	-	- 노·사 최초안 제시
	6차 (6.26 15:00 ~ 6.26 23:28)	6,700	28.6	5,245	0.7	-	-	- 1차 수정안 제시
		6,630	27.3	5,245	0.7	-	-	- 2차 수정안 제시
		6,390	22.6	5,265	1.1	-	-	- 3차 수정안 제시
		5,990	15.0	5,320	2.1	-	-	- 4차 수정안 제시 ※ 차수 변경(6차→7차)
	7차 (6.27 00:30 ~ 6.27 05:20)	-	-	-	-	-	5.4 ~ 7.4	- 공익위원 구간안 제시 (인상률 구간만 제시)
		-	-	-	-	5,580	7.1	- 노·사 양측 요청으로 공익 단일안 제시 -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27명 중 찬성 18, 기권 9로 의결 (표결 선포 후 사용자측 전원 퇴장으로 기권 처리)

● '14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13.4.11. ~ 7.5.)

(단위 : 원, %)

구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 의 종 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전원회의	2차 (6.7)	5,910 (47,280)	21.6	4,860 (38,880)	동결	-	-	- 노·사 최초(안) 제시
	5차 (6.26 ~ 6.27)	5,790	19.1	4,910	1.0	-	-	- 1차 수정(안) 제시 (6.26~6.27)
		-	-	-	-	-	2.8 ~ 12.0	- 공익위원 심의촉진 구간안 제시(7.4~7.5) (인상률 구간만 제시)
	7차 (7.4 19:05 ~ 7.5 04:09)	-	-	-	-	5,210	7.2	- 노·사 양측 요청에 따라 제시된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24명 중 찬성 15, 기권 9로 의결(7.5) (표결 선포 전 근로자위원 3명 퇴장, 표결 선포 후 사용자위원 전원 퇴장)

○ '13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12.4.4. ~ 6.30.)

(단위 : 원, %)

회의종류	구분 차수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전원회의	7차 (6.21)	5,780 (46,240)	26.2	4,580 (36,640)	동결	-	-	- 노·사 최초(안) 제시	
	8차 (6.25)	5,600	22.3	4,600	0.4	-	-	- 1차 수정(안)제시	
	9차 (6.26)	-	-	-	-	4,700 ~ 5,060	2.6 ~ 10.5	- 공익위원, 협상 및 심의촉진 구간 제시	
	10차 (6.27 19:03 ~ 6.28 01:15)		5,050	10.3	4,705	2.7	-	-	- 2차 수정(안)제시(6.27)
			5,000	9.2	4,725	3.2	-	-	- 3차 수정(안)제시(6.27)
			4,995	9.1	4,735	3.4	-	-	- 4차 수정(안)제시(6.27)
		-	-	-	-	하한액:4,830(5.5) 상한액:4,885(6.7)		- 위원장 표결 상정 선포 - 노·사 요청으로 공익(안) 1차 제시(6.28) (공익안에 항의하며 사용자측 전원 퇴장, 근로자측 퇴장으로 의결정족수 미충족)	
	11차 (6.28)	-	-	-	-	-	-	-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충족 (勞 9, 使 9 불참으로 재적인원 과반수 불출석) - '다음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안 의결을 위해 노·사 위원 모두 회의에 참석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익 위원 논의결과 발표	
	12차 (6.29 19:10 ~ 6.30 01:48)	-	-	-	-	4,860	6.1	- 노·사 요청으로 2차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18명, 찬성 10, 기권 8로 의결(6.30) (근로자측 8명, 사용자측 1명 불참, 사용자측 표결 선포 후 8명 전원 퇴장)	

● '1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11.4.8. ~ 7.13.)

(단위 : 원, %)

회의종류	구분 차수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전원회의	4차 (6.3)	5,410 (43,280)	25.2	4,320 (34,560)	동결	-	-	- 노·사 최초(안) 제시	
	7차 (6.24)	5,320	23.1	4,350	0.7	-	-	- 1차 수정(안)제시	
	9차 (6.29 16:00 ~ 7.1 05:03)						4,445 ~ 4,790	2.9 ~ 10.9	- 공익위원, 협상 및 심의촉진 구간 제시(6.29)
			4,785	10.8	4,450	3.0	-	-	- 2차 수정(안)제시(6.29)
			4,780	10.6	4,455	3.1	-	-	- 3차 수정(안)제시(6.30)
							4,580 ~ 4,620	6.0 ~ 6.9	- 1차 공익(안) 제시(7.1)
	10차 (7.4)	-	-	-	-	-	-	-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충족(재적인원 과반수 불출석)	
	11차 (7.5)	-	-	-	-	-	-	-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충족(재적인원 과반수 불출석)	
	12차 (7.6)	-	-	-	-	-	-	-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충족(재적인원 과반수 불출석) - '1주일 이내에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계획과 노사합의가 어려울 시에는 공익 위원이 이미 제시한 구간 내에서 노사 최종안을 받아 표결처리 하겠다'는 내용의 공익위원 결의를 발표	
13차 (7.12 20:00 ~ 7.13 01:58)	-	-	4,580	6.0	-	-	- 공익(안) 범위 내에서 사용자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19명, 찬성 12, 반대 4, 기권 3으로 의결(근로자위원 6명 불출석, 3명은 출석하였으나 표결에 미참여)		

○ '11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10.4.2. ~ 7.3.)

(단위 : 원, %)

구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 의 종 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2차 (5.28)	5,180 (41,440)	26.0	4,110 (32,880)	동결	-	-	- 노·사 최초(안) 제시	
전원회의	5차 (6.18)	5,110	-	-	0.2	-	-	- 1차 수정(안)제시	
	6차 (6.25)	5,080	23.6	4,125	0.4	-	-	- 2차 수정(안)제시	
		5,040	22.6	4,130	0.5	-	-	- 3차 수정(안)제시	
		5,000	21.7	4,140	0.7	-	-	- 4차 수정(안)제시	
		7차 (6.28 14:00 ~ 6.30 03:33)	4,920	19.7	4,145	0.9	-	-	- 5차 수정(안)제시(6.28)
	8차 (7.2 20:00 ~ 7.3 06:20)	4,900	19.2	-	-	-	-	-	- 6차 수정(안) 제시(6.28)
		4,850	18.0	4,150	1.0	-	-	-	- 7차 수정(안) 제시(6.29)
		4,800	16.8	-	-	-	-	-	- 8차 수정(안) 제시(7.2)
		4,470	8.8	4,223	2.75	-	-	-	- 9차 수정(안) 제시(7.3)
							4	4	- 공익안 1차 제시(7.3) (인상률 구간만 제시)
						4.1	5.1	- 공익안 2차 제시 - 공익안에 표결로 찬성 의결(7.3) (사용자위원 전원 퇴장으로 기권)	

● '10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09.4.3. ~ 6.30.)

(단위 : 원, %)

구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 의 종 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2차 (5.29)	5,150 (41,200)	28.7	3,770 (30,160)	-5.8	-	-	- 노·사 최초(안) 제시
전원회의	5차 (6.12)	4,916	22.9	-	-	-	-	- 1차 수정(안) 제시
	6차 (6.19)	4,916	22.9	3,800	-5.0	-	-	- 2차 수정(안) 제시
		4,800	20.0	3,840	-4.0	-	-	- 3차 수정(안) 제시
	7차 (6.25)	4,600	15.0	3,920	-2.0	-	-	- 4차 수정(안) 제시
	8차 (6.28 17:00 ~ 6.30 05:20)	4,520	13.0	3,940	-1.5	-	-	- 5차 수정(안) 제시(6.28)
		4,480	12.0	3,980	-0.5	-	-	- 6차 수정(안) 제시(6.29)
		4,390	9.75	3,990	-0.25	-	-	- 7차 수정(안) 제시(6.29)
		4,360	9.0	-	-	-	-	- 8차 수정(안) 제시(6.29)
		4,280	7.0	4,000	동결	-	-	- 9차 수정(안) 제시(6.29)
	-	-	-	-	-	4,016 ~ 4,184	0.4 ~ 4.6	- 공익(안) 1차 제시(6.30)
	4,185	4.6	4,015	0.4	-	-	-	- 10차 수정(안) 제시(6.30)
	4,170	4.3	4,020	0.5	-	-	-	- 11차 수정(안) 제시(6.30)
	4,160	4.0	4,035	0.9	-	-	-	- 12차 수정(안) 제시(6.30)
	4,155	3.9	4,045	1.125	-	-	-	- 13차 수정(안) 제시(6.30)
-	-	-	-	-	4,110	2.75	- 공익(안) 2차 제시 - 공익안에 대하여 27명 전원 표결 참여하여 찬성 의결 (6.30)	

\* 리먼브라더스 사태(2008. 9.)

● '09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08.4.4. ~ 6.27.)

(단위 : 원, %)

구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 의 종 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2차 (5.30)	4,760 (38,080)	26.3	3,770 (30,160)	동결	-	-	- 노·사 최초(안) 제시		
전원회의	5차 (6.20)	4,690	24.5	3,820	1.3	-	-	- 노·사측 1차 수정(안) 제시		
		4,620	22.5	3,830	1.6	-	-	- 노·사측 2차 수정(안) 제시		
		4,530	20.2	3,845	2.0	-	-	- 노·사측 3차 수정(안) 제시		
	6차 (6.25)	4,460	18.3	3,860	2.4	-	-	- 노·사측 4차 수정(안) 제시		
		4,450	18.0	3,880	2.9	-	-	- 노·사측 5차 수정(안) 제시		
		-	-	-	-	3,925 ~ 4,105	4.1 ~ 8.9	-	- 공익안 1차 제시	
		-	-	3,925	4.1	-	-	-	- 사측 6차 수정(안) 제시	
	7차 (6.26 21:50 ~ 6.27 06:15)	4,105	8.9	-	-	-	-	-	- 근로자측 6차 수정안 제시 (6.26)	
		-	-	-	-	4,000	6.1	-	-	- 공익안 2차 제시(6.26)
		4,000	6.1	4,000	6.1	4,000	6.1	-	- 공익안에 노·사측 합의 (6.27)	

● '08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07.4.3. ~ 6.27.)

(단위 : 원, %)

구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 의 종 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3차 (5.30)	4,480 (35,840)	28.7	3,480 (27,840)	동결	-	-	- 노·사 최초(안) 제시	
전원회의	4차 (6.15)	4,300	23.6	3,480	동결	-	-	- 노·사측 1차 수정(안) 제시 (근로자위원 전원 퇴장)	
	5차 (6.22)	4,210	21.0	3,565	2.4	-	-	- 노·사측 2차 수정(안) 제시	
	6차 (6.26 ~ 6.27)		4,160	19.5	3,620	4.0	-	-	- 노·사측 3차 수정(안) 제시 (6.26)
			-	-	-	-	3,665 ~ 3,870	5.3 ~ 11.2	- 공익안 1차 제시(6.26)
			3,870	11.0	3,670	5.5	-	-	- 1차 공익안 범위 감안하여 노·사측 4차 수정(안) 제시 (6.26)
			-	-	-	-	3,725~ 3,810	7.1~ 9.4	- 공익안 2차 제시(6.26)
			3,790	9.0	3,740	7.5	-	-	- 노·사측 5차 수정(안) 제시(6.27)
			3,770	8.3	3,770	8.3	3,770	8.3	- 표결 전 운영위원회를 소집 하여 노·사측 설득 - 노·사·공익 합의 의결(6.27)

○ '0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06.4.28. ~ 6.29.)

(단위 : 원, %)

구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 의 종 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3차 (6.9)	4,200 (33,600)	35.5	3,175 (25,400)	2.4	-	-	- 노·사 최초(안) 제시
전원회의	3차 (6.23)	3,885	25.3	3,215	3.7	-	-	- 노·사측 1차 수정(안) 제시
	4차 (6.26)	3,850	24.2	3,250	4.8	-	-	- 노·사측 2차 수정(안) 제시 - 공익위원이 각 노·사 위원회의 참석하여 조정
		3,700	19.4	3,285	6.0	-	-	- 노·사측 3차 수정(안) 제시 - 공익위원이 각 노·사 위원회의 참석하여 조정·설득
	5차 (6.28 14:00 ~ 6.29 03:10)	3,670	18.4	3,305	6.6	-	-	- 노·사측 4차 수정(안) 제시(6.28)
		3,590	15.8	3,385	9.2	-	-	- 노·사측 5차 수정(안) 제시(6.28) - 노·사 미양보로 공익 위원회 소집
		-	-	-	-	3,430 ~ 3,505	10.6 ~ 13.1	- 공익위원회 4차 회의 시 (6.28) - 공익안 1차 제시
	3,505	13.1	3,440	11.0	-	-	- 노·사측 6차 수정(안) 제시(6.28)	
	3,490	12.6	3,470	11.9	-	-	- 노·사측 7차 수정(최종) 제시(6.28)	
-	-	-	-	3,480	12.3	- 노측 10원 양보하여 공익안 수용 - 사측 공익안 수용 반대 - 표결에 따라 (출석 25명, 찬성 16) 공익안 의결(6.29)		

● '05.9월 ~ '06.12월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05.4.15. ~ 6.29.)

(단위 : 원, %)

구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 의 종 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2차 (5.27)	3,900 (31,200)	37.0	2,925 (23,400)	3.0	-	-	- 노·사 최초안 제시
전원회의	4차 (6.24)	-	-	3,000	5.6	-	-	- 사측 1차 수정안 제시 - 근로자측 미제시
	5차 (6.28)	3,615	27.3	3,055	7.6	-	-	- 노측 1차, 사측 2차 수정안 제시
	6차 (6.29)	-	-	3,100	9.2	-	-	- 사측 최종 수정(안) 제시 - 노측 최종안 미제출 - 노측 1차 수정안과 사측 최종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출석 16명, 찬성 15, 기권 1로 사용자안으로 의결 (근로자위원 9명 퇴장 및 사퇴서 제출)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 '04.9월 ~ '05.8월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04.4.29. ~ 6.25.)

(단위 : 원, %)

구 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2차 (5.30)	3,390 (27,120)	35.0	2,575 (20,600)	2.6	-	-	- 노·사 최초(안) 제시	
전원회의	4차 (6.18)	-	-	2,585 (20,680)	3.0	-	-	- 사측 1차 수정(안) 제시	
	5차 (6.22)	-	-	2,605 (20,840)	3.8	-	-	- 사측 2차 수정(안) 제시	
	6차 (6.25 07:40 ~ 13:10)	2,950 (23,600)	17.5	-	-	-	-	-	- 노측 1차 수정(안) 제시
		2,840 (22,720)	13.1	-	-	-	-	-	- 노측 최종 수정(안) 제시
		-	-	2,685 (21,480)	7.0	-	-	-	- 사측 3차 수정(안) 제시
		-	-	2,710 (21,680)	8.0	-	-	-	- 사측 4차 수정(안) 제시
		-	-	2,765 (22,120)	10.2	-	-	-	- 사측 최종 수정(안) 제시 - 노·사 최종(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출석 25명 중 15:10으로 근로자(안) 의결

● '03.9월 ~ '04.8월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03.4.25. ~ 6.27.)

(단위 : 원, %)

구 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1차 (5.16)	3,100 (24,800)	36.3	2,355 (18,840)	3.5	-	-	- 노·사 최초(안) 제시
	2차 (5.30)	-	-	2,275 (18,200)	동결	-	-	- 사측의 한상원위원(안) 제시
전원회의	3차 (6.13)	-	-	2,365 (18,920)	4.0	-	-	- 사측 1차 수정(안) 제시
	4차 (6.20)	2,930 (23,440)	28.8	2,375 (19,000)	4.4	-	-	- 노측 1차, 사측 2차 수정 (안) 제시
	5차 (6.24)	2,800 (22,400)	23.1	2,430 (19,440)	6.8	-	-	- 노측 2차, 사측 3차 수정 (안) 제시
		2,750 (22,000)	20.9	2,450 (19,600)	7.7	-	-	- 노측 최종, 사측 4차 수정 (안) 제시
	6차 (6.26)	-	-	2,465 (19,720)	8.4	-	-	- 사측 5차 수정(안) 제시 (노측 전원 불참·사퇴서 제출 공익 2명 사퇴서 제출, 퇴장)
	7차 (6.27)	-	-	2,505 (20,040)	10.1	-	-	- 사측 6차 수정(안) 제시
-		-	2,510 (20,080)	10.3	-	-	- 노·사 최종(안) 표결 결과 출석 15명 중 15:0으로 사용자측(안) 의결 (勞 전원, 公 2 불참)	

● '02.9월 ~ '03.8월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02.4.11. ~ 6.28.)

(단위 : 원, %)

구 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2차 (5.29)	2,700 (21,600)	28.6	2,188 (경총안) 2,150 (중기협안)	4.2  2.4	-	-	- 노·사 최초(안) 제시 (사측은 2가지 안 제시)
	3차 (6.5)	-	-	2,100 (16,800)	동결	-	-	- 사측의 한상원 위원(안) 제시
전원회의	2차 (6.12)	-	-	2,170 (17,360)	3.3	-	-	- 사측 최초 단일(안) 제시
	5차 (6.25)	2,480 (19,840)	18.1	2,190 (17,520)	4.3	-	-	- 노측·사측 1차 수정(안) 제시
	6차 (6.27)	-	-	2,245 (17,960)	6.9	-	-	- 사측 2차 수정(안) 제시
		2,420 (19,360)	15.2	2,275 (18,200)	8.3	-	-	- 노측 2차, 사측 3차 수정 (안) 제시
	7차 (6.28)	2,340 (18,720)	11.4	-	-	-	-	- 노측 최종 수정(안) 제시 - 노·사 최종(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출석 26명 중 14:12로 사용자측(안) 의결

● '01.9월 ~ '02.8월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01.4.12. ~ 7.20.)

(단위 : 원, %)

구 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2차 (5.24)	2,837 (22,696)	52.1	-	-	-	-	- 노측 최초(안) 제시	
	5차 (6.21)	-		1,930 (15,440)	3.5	-	-	- 사측 최초 단일(안) 제시	
전원회의	3차 (7.5)	-		1,941 (15,528)	4.1	-	-	- 사측 1차 수정(안) 제시 - 노측 미제시	
	4차 (7.11)	2,270 (18,160)	21.7	-	-	-	-	- 노측 1차 수정(안) 제시 - 사측 미제시	
	5차 (7.18)	-	-	1,971 (15,768)	5.7	-	-	- 사측 2차 수정(안) 제시 - 노측 미제시	
	6차 (7.19)	2,213 (17,704)	18.7	2,000 (16,000)	7.2	-	-	- 노측 2차, 사측 3차 수정 (안) 제시	
	7차 (7.20)	-	-	-	2,025 (16,200)	8.6	-	-	- 사측 4차 수정(안) 제시 - 노측 미제시
			2,100 (16,800)	12.6	2,060 (16,480)	10.5	-	-	- 노·사측 최종 수정(안) 제시 - 노·사 최종(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출석 23명 중 12:11로 근로자(안) 의결

● '00.9월 ~ '01.8월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00.4.14. ~ 7.21.)

(단위 : 원, %)

회의종류	구 분 차수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2차 (5.25)	2,706 (21,648)	69.1	-	-	-	-	- 노측 최초(안) 제시
	3차 (6.1)	-	-	1,686 (13,488)	5.4	-	-	- 사측 최초(안) 제시
전원회의	3차 (6.22)	2,598 (20,784)	62.4	1,700 (13,600)	6.3	-	-	- 노·사 1차 수정(안) 제시
	4차 (6.26)	-	-	1,720 (13,760)	7.5	-	-	- 사측 2차 수정(안) 제시
	6차 (7.6)	-	-	1,740 (13,920)	8.8	-	-	- 사측 3차 수정(안) 제시
	7차 (7.19)	2,375 (19,000)	48.4	-	-	-	-	- 노측 4차 수정(안) 제시 - 의결정족수 미충족 (勞 2명만 참석)
	8차 (7.20)	-	-	-	-	-	-	- 의결정족수 미충족 (勞 3명, 使 2명만 참석) - 법 제17조에 의거 2회 유회 (7.19, 7.20)되어 차기 회의 시 의결 가능
	9차 (7.21)	1,865 (14,920)	16.6	-	-	-	-	- 노측 최종 수정(안) 제시 - 노·사 최종(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출석 20명 중 찬성 11, 기권 9로 근로자 측(안) 의결

● '99.9월 ~ '00.8월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99.4.7. ~ 7.20.)

(단위 : 원, %)

구 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2차 (6.8)	1,720 (13,760)	12.8	1,525 (12,200)	동결	-	-	- 노·사 최초(안) 제시
	4차 (6.21)	1,665 (13,320)	9.2	1,550 (12,400)	1.6	-	-	- 노·사 1차 수정(안) 제시
전원회의	2차 (6.29)	1,650 (13,200)	8.2	1,560 (12,480)	2.3	-	-	- 노·사 2차 수정(안) 제시
	3차 (7.6)	1,635 (13,080)	7.2	1,570 (12,560)	3.0	-	-	- 노·사 3차 수정(안) 제시
	4차 (7.13)	1,625 (13,000)	6.6	1,580 (12,640)	3.6	-	-	- 노·사 3차 수정(안) 제시
	5차 (7.20)	1,600 (12,800)	4.9	1,600 (12,800)	4.9	-	-	- 노·사 공익 합의 (만장일치)

○ '98.9월 ~ '99.8월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98.4.3. ~ 7.23.)

(단위 : 원, %)

구 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2차 (6.12)	1,615 (12,920)	8.8	1,485 (11,880)	동결	-	-	- 노·사 최초(안) 제시
전원회의	4차 (7.8)	1,555 (12,440)	4.7	1,485 (11,880)	동결	-	-	- 노측 1차 수정(안) 제시
	5차 (7.13)	1,530 (12,240)	3.0	1,485 (11,880)	동결	-	-	- 노측 2차 수정(안) 제시
	6차 (7.20)	1,530 (12,240)	3.0	1,485 (11,880)	동결	-	-	- 노·사측 공익위원(안) 제시 요구
	7차 (7.23)	1,525 (12,200)	2.7	1,485 (11,880)	동결	-	-	- 노측 최종 수정(안) 제시 - 표결한 결과, 재적 26명 전원 출석하여, 14:12로 근로자측(안) 의결

\* IMF사태(1997.11)

● '97.9월 ~ '98.8월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97.4.18. ~ 7.24.)

(단위 : 원, %)

구 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3차 (6.5)	1,616 (12,928)	15.4	1,400 (11,200)	동결	-	-	- 노·사 최초(안) 제시
전원회의	3차 (6.25)	1,580 (12,640)	12.9	1,435 (11,480)	2.5	-	-	- 노·사 각 1차 수정(안) 제시
	4차 (6.28)	1,565 (12,520)	11.8	1,440 (11,520)	2.9	-	-	- 노·사 각 2차 수정(안) 제시
	5차 (6.30)	-	-	1,450 (11,600)	3.6	-	-	- 사측 3차 수정(안)제시
	9차 (7.24)	<'97.9~12> 1,480 (11,840)  <'98.1~8> 1,500 (12,000)	5.7  7.1	1,485 (11,880)	6.1	-	-	- 노·사측 최종 수정(안) 제시 - 표결에 따라, 출석 25명 중 14:11로 사용자측(안) 의결

○ '96.9월 ~ '97.8월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96.4.16. ~ 7.5.)

(단위 : 원, %)

구 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3차 (6.5)	1,506 (12,048)	18.1	1,330 (10,640)	4.3	-	-	- 노·사 최초(안) 제시
	4차 (6.12)	1,483 (11,864)	16.3	1,340 (10,720)	5.1	-	-	- 노·사 각 수정(안) 제시
	5차 (6.17)	1,465 (11,720)	14.9	1,355 (10,840)	6.3	-	-	- 노·사 각 2차 수정(안) 제시
전원회의	3차 (6.24)	1,455 (11,640)	14.1	-	-	-	-	- 노측 3차 수정(안) 제시
	4차 (6.28)	1,445 (11,560)	13.3	1,370 (10,960)	7.5	-	-	- 노측 4차 수정(안) 제시 - 사측 3차 수정(안) 제시
	5차 (7.3)	1,435 (11,480)	12.5	1,380 (11,040)	8.2	-	-	- 노측 5차 수정(안) 제시 - 사측 4차 수정(안) 제시
	6차 (7.5)	1,430 (11,440)	12.2	1,385 (11,080)	8.6	1,400 (11,200)	9.8	- 노·사측 최종 수정(안) 제시 -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20명(勞 7, 使 6, 公 7) 중, 찬성 13, 기권 7로 가결 (使 6명은 표결 선포 후 퇴장하여 기권 처리)

○ '95.9월 ~ '96.8월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95.4.7. ~ 7.3.)

(단위 : 원, %)

구 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3차 (5.31)	1,340 (10,720)	14.5	1,220 (9,760)	4.3	-	-	- 노·사 최초(안) 제시
	5차 (6.19)	1,315 (10,520)	12.4	1,245 (9,960)	6.4	-	-	- 노·사 각 1차 수정(안) 제시
전원회의	3차 (6.22)	-	-	1,250 (10,000)	6.8	-	-	- 사측 2차 수정(안) 제시
	4차 (6.29)	1,300 (10,400)	11.1	1,255 (10,040)	7.3	-	-	- 노·사 3차 수정(안) 제시
	5차 (7.3)	1,275 (10,200)	8.97	1,275 (10,200)	8.97	-	-	- 노·사 합의(안)에 공익 위원 찬성(만장일치)

○ '94.9월 ~ '95.8월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94.4.8. ~ 7.5.)

(단위 : 원, %)

구 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4차 (6.2)	1,240 (9,920)	14.3	1,120 (8,960)	3.2	-	-	- 노·사 최초(안) 제시
전원회의	5차 (6.28)	1,210 (9,680)	11.5	1,130 (9,040)	4.2	-	-	- 노·사 각 1차 수정(안) 제시
	6차 (7.1)	-	-	-	-	-	-	- 근로자측 불참
	7차 (7.4)	-	-	1,150 (9,200)	6.0	-	-	- 사측 2차 수정(안) 제시 (근로자측 불참)
	8차 (7.5)	1,190 (9,520)	9.7	-	-	-	-	- 노측 2차 수정안 제시
			1,185 (9,480)	9.2	1,165 (9,320)	7.4	1,180 (9,420)	8.8
		-	-	1,170 (9,360)	7.8	-	-	- 사측 4차 수정(안) 제시 - 2차 표결 결과 출석 16명 중 찬성 12, 반대 3, 기권 1로 가결 (근로자측 불참)

● '94.1월 ~ '94.8월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93.7.9. ~ 10.11.)

(단위 : 원, %)

구 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3차 (8.26)	1,160 (9,280)	15.4	1,035 (8,280)	3.0	-	-	- 노·사 최초(안) 제시
	5차 (9.9)	1,135 (9,080)	12.9	1,055 (8,440)	5.0	-	-	- 노·사 각 1차 수정(안) 제시
전원회의	2차 (9.17)	1,115 (8,920)	10.9	1,060 (8,480)	5.5	-	-	- 노·사 각 2차 수정(안) 제시
	4차 (10.8)	1,094 (8,752)	8.9	1,070 (8,560)	6.5	-	-	- 노·사 각 3차 수정(안) 제시
	5차 (10.11)	1,085 (8,680)	7.96	1,085 (8,860)	7.96	-	-	- 노·사 합의(안) 제시 - 노·사 합의(안)에 공익 위원 찬성(만장일치)

○ '93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92.7.10. ~ 10.10.)

(단위 : 원, %)

구 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3차 (9.4)	1,080 (8,640)	16.8	925 (7,400)	동결	-	-	- 노·사 최초(안) 제시
	4차 (9.17)	-	-	955 (7,640)	3.2	-	-	- 사측 수정(안) 제시
	5차 (9.24)	1,065 (8,520)	15.1	985 (7,880)	6.5	-	-	- 노·사 각 수정(안) 제시
전원회의	4차 (10.7)	1,025 (8,200)	10.8	995 (7,960)	7.6	1,005 (8,040)	8.6	- 노·사 각 1차 수정(안) 제시 - 공익위원(안) 제시
	5차 (10.8)	-	-	-	-	-	-	- 근로자측 불참
	6차 (10.9)	-	-	-	-	-	-	- 근로자측 불참
	7차 (10.10)	1,025 (8,200)	10.8	995 (7,960)	7.6	1,005 (8,040)	8.6	- 공익위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 15명 중, 찬성 12, 반대 3으로 찬성 의결 (근로자측 불참)

● '9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91.7.4. ~ 10.11.)

(단위 : 원, %)

구 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4차 (9.19)	223,818	20.7 (시급 대비)	1업종: 875 (7,000)  2업종: 850 (6,800)	6.7  3.7	-	-	- 노·사 최초(안) 제시 · 근로자측 : 월급제 표기 제시 · 사용자측 : 시간급·일급 표기 제시
전원회의	2차 (9.27)	216,960	17.0 (시급 대비)	1업종: 880 (7,040)  2업종: 860 (6,880)	7.3  4.9	-	-	- 노·사 각 1차 수정(안) 제시 · 근로자측 : 월급제 표기 제시
	3차 (10.10)	960 (7,680)	17.0	905 (7,240)	10.3	915 (7,320)	11.6	- 노·사 각 2차 수정(안) 제시 - 공익위원(안) 제시
	4차 (10.11)	930 (7,440)	13.4	920 (7,360)	12.1	925 (7,400)	12.8	- 공익위원 수정(안) 제시 - 공익위원(안)에 노·사 찬성(만장일치)

주) 1업종(일반 업종)

2업종 : 섬유, 의복, 가죽, 모피, 도기·자기, 토기제조, 기타 제조업

○ '91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90.7.12. ~ 10.12.)

(단위 : 원, %)

구 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4차 (9.28)	900 (7,200)	30.4	750 (6,000)	8.7	-	-	- 노·사 최초(안) 제시
	5차 (10.8)	①875 (7,000)	26.8	-	-	-	-	- 근로자측 수정(안) 제시
		②915 (7,000)	32.6					
6차 (10.10)	875 (7,000)	26.8	-	-	-	-	- 근로자측 수정(안) 제시	
전원회의	3차 (10.11)	875 (7,000)	26.8	750 (6,000)	8.7	-	-	
	4차 (10.12)	875 (7,000)	26.8	750 (6,000)	8.7	820 (6,560)	18.8	- 공익위원(안) 제시 - 공익(안)으로 표결한 결과, 출석 16명 중 15명 전원 찬성(위원장 제외) 의결 * 사용자위원 2회 참석 통보에도 불참

주) ① 300인 미만 사업장 → 일급 1일 7시간 40분 기준  
 ② 300인 이상 사업장 → 일급 1일 7시간 20분 기준

● '90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89.8.8. ~ 10.12.)

(단위 : 원, %)

구 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4차 (10.7)	712 (5,696)	18.6	681 (5,448)	13.3	-	-	- 노·사 최초(안) 제시
		705 (5,640)	17.5	685 (5,480)	14.1	-	-	- 노·사 각 수정(안) 제시
전원회의	1차 (8.8)	705 (5,640)	17.5	685 (5,480)	14.1	-	-	- 제조업·광업·건설업전문 위원회를 '임금수준전문 위원회'로, 실무회의를 '연구위원회'로 개칭 의결
	3차 (10.12)	705 (5,640)	17.5	685 (5,480)	14.1	690 (5,520)	15.0	- 공익위원(안) 제시 - 공익위원(안)에 노·사 찬성 의결(만장일치)

● '89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88.7.1. ~ 10.12.)

(단위 : 원, %)

구 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1그룹/ 2그룹)	시급 (일급)	인상률 (1그룹/ 2그룹)	시급 (일급)	인상률 (1그룹/ 2그룹)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제조업· 광업·건설업 전문위원회)	5차 (9.22)							- 업종별 구분없이 단일 최저임금안 적용 의결
	6차 (9.28)	752(6,017)	62.5/54.2	500(4,000)	8.1/2.5	-	-	- 노·사 최초(안) 제시
	9차 (10.10)	625(5,000)	35.1/28.2	525(4,200)	29.9/23.1	-	-	- 노·사 각 수정(안) 제시
전원회의	1차 (4.1)	625(5,000)	35.1/28.2	525(4,200)	29.9/23.1	-	-	- '실무회의' 신설 의결  * 실무회의 구성 (4.14)
	3차 (9.28)	-	-	-	-	-	-	- 제조업, 광업, 건설업에 대한 단일 최저임금 적용 의결
	4차 (10.12)	625(5,000)	35.1/28.2	525(4,200)	29.9/23.1	600(4,800)	29.7~23.1	- 공익위원(안) 제시  - 공익위원(안)에 근로자측 찬성 의결 (사용자측 퇴장)

○ '88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87.7.31. ~ 12.24.)

(단위 : 원, %)

구 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 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제조업전문 위원회)	4차 (10.19)	①620.80 (4,966)	-	①416.70 (3,333)	-	-	-	-노·사 최초(안) 제시 - 최저임금 단위는 시급 으로 하기로 결정
		②662.50 (5,300)		②437.50 (3,500)				
전원회의	5차 (12.21)	-	-	①450.00 (3,600)	-	①462.50 (3,700)	-	-사측 1차 수정(안) 제시 - 공익위원 1차(안)제시 (근로자측 퇴장)
				②487.50 (3,900)		②487.50 (3,900)		
	6차 (12.22)	-	-	-	-	-	-	- 근로자측 불참
	7차 (12.23)	-	-	-	-	-	-	- 근로자측 불참
8차 (12.24)	①620.80 (4,966)	-	①450.00 (3,600)	-	①462.50 (3,700)	-	- 공익위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13, 반대 2, 기권 9로 가결(표결 선포 후 근로자측 전원 퇴장 으로 기권 처리)	
	②662.50 (5,300)		②487.50 (3,900)		②487.50 (3,900)			

주) 1) 일급은 1일 8시간 기준 임금임

2) ①1그룹 : 식료품, 섬유, 의복, 가죽, 신발, 나무, 종이, 고무, 플라스틱, 도기·자기, 전기기기, 기타제조업

②2그룹 : 음료품, 담배, 가구, 인쇄출판, 산업화학, 기타화학, 석유정제, 석유석탄, 유리, 비금속, 철강, 비철  
금속, 조립금속, 기계, 운수장비, 정밀기계

## 5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을

### 〈최저임금 미만을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	
	미만근로자수	미만을	미만근로자수	미만을
2023	「2024 임금실태 등 분석」 참고			
2022	560	3.4	2,756	12.7
2021	743	4.4	3,215	15.3
2020	720	4.4	3,190	15.6
2019	788	4.8	3,386	16.5
2018	817	5.1	3,111	15.5
2017	974	6.1	2,661	13.3
2016	1,126	7.3	2,670	13.5
2015	915	6.2	2,224	11.4
2014	687	4.9	2,271	12
2013	558	4.1	2,084	11.3
2012	506	3.9	1,698	9.5
2011	767	6.1	1,916	10.8
2010	941	7.9	1,969	11.5
2009	947	8.4	2,105	12.7
2008	744	6.8	1,752	10.8
2007	750	6.9	1,891	11.9
2006	-	-	1,442	9.4
2005	-	-	1,212	8.1
2004	-	-	849	5.8
2003	-	-	689	4.9
2002	-	-	682	4.9
2001	-	-	577	4.3

- 주) 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 6월 원자료(고용노동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각년 8월 원자료(통계청)
- 2) 최저임금 미만을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함  
 (최저임금 미만을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전체 근로자수 × 100)
- 3) 2018년에 2004~2016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에 대한 가중치 소급보정이 이루어짐

## 6

##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영향률

## 〈최저임금 영향률 추이〉

(단위 : 개소, 천명, %)

적용 연도	적용 업종	최저임금 인상률	영향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기준
'24	1명 이상 전산업	2.5	3.9	15.4	
'23	1명 이상 전산업	5.0	6.5	16.4	-
'22	1명 이상 전산업	5.05	4.7	17.4	-
'21	1명 이상 전산업	1.5	5.7	19.8	-
'20	1명 이상 전산업	2.87	8.6	20.7	-
'19	1명 이상 전산업	10.9	18.3	25.0	-
'18	1명 이상 전산업	16.4	18.0	23.6	-
'17	1명 이상 전산업	7.3	14.4	17.4	-
'16	1명 이상 전산업	8.1	8.7	18.2	-
'15	1명 이상 전산업	7.1	6.0	14.6	-
'14	1명 이상 전산업	7.2	6.5	14.5	-
'13	1명 이상 전산업	6.1	8.5	14.7	-
'12	1명 이상 전산업	6.0	10.2	13.7	-
'11	1명 이상 전산업	5.1	9.7	14.2	-
'10	1명 이상 전산업	2.75	8.3	15.9	-
'09	1명 이상 전산업	6.1	5.1	13.1	-
'08	1명 이상 전산업	8.3	-	13.8	-
'07	1명 이상 전산업	12.3	-	11.9	-
'05. 9.~'06. 12.	1명 이상 전산업	9.2	-	10.3	-
'04. 9.~'05. 8.	1명 이상 전산업	13.1	-	8.8	-
'03. 9.~'04. 8.	1명 이상 전산업	10.3	-	7.6	-
'02. 9.~'03. 8.	1명 이상 전산업	8.3	-	6.4	2.9
'01. 9.~'02. 8.	1명 이상 전산업	12.6	-	2.8	2.8
'00. 9.~'01. 8.	5명 이상 전산업(~'00.11.23.)	16.6	-	-	1.8
	1명 이상 전산업('00.11.24.~)		-	-	2.1
'99. 9.~'00. 8.	5명 이상 전산업	4.9	-	-	1.1
'98. 9.~'99. 8.	10명 이상 전산업	2.7	-	-	0.4
'97. 9.~'98. 8.	10명 이상 전산업	6.1	-	-	2.3
'96. 9.~'97. 8.	10명 이상 전산업	9.8	-	-	2.4
'95. 9.~'96. 8.	10명 이상 전산업	8.97	-	-	1.9
'94. 9.~'95. 8.	10명 이상 전산업	7.8	-	-	2.1

적용 연도	적용 업종	최저임금 인상률	영향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기준
'94. 1.~'94. 8.	10명 이상 전산업	7.96	-	-	2.1
'93	10명 이상 전산업	8.6	-	-	4.5
'92	10명 이상 전산업	12.8	-	-	8.5
'91	10명 이상 전산업	18.8	-	-	8.6
'90	10명 이상 전산업	15.0	-	-	4.3
'89	10명 이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26.3	-	-	10.7
'88	10명 이상 제조업	-	-	-	4.2

- 주) 1) 2018년에 2004~2016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에 대한 가중치 소급보정이 이루어짐  
(2019년 이전은 보정 이전에 분석된 결과이고, 2019년 이후는 보정된 자료로 분석된 결과임)
- 2)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당년도 심의한 최저임금을 차년도에 적용할 경우 차년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기 위해 임금인상이 되어야 할 근로자수 비율의 추정치
- 3) 산출방법은 전년도에 조사된 임금분포에 금년 임금 인상을 전망치를 결합하여 금년 시간당 임금액과 근로자 수의 분포를 추정 후 내년에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액에 따라 임금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수의 비율을 추정한 것임
- 4)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미만율과는 다른 개념임. 영향률은 최저임금 변경(인상)으로 인해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규모의 추정치이며, 미만율은 실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규모의 결과치임.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특정연도의 최저임금 영향률이 최저임금 미만율보다 높게 나타나게 되며, 그간 통계도 대체로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5) 다만, 최저임금 영향률은 실적치가 아닌 예측치이기 때문에 통계적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다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① 임금상승률 예측치가 낮을수록 임금분포의 우측 이동 정도가 작기 때문에 최저임금 영향률은 높게 도출됨.
  - ② 전체 평균 임금상승률 예측치를 결합하므로 업종·규모별 임금상승률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편차 발생 가능
    - ※ 다만, 업종·규모별 임금상승률 예측치 추정이 어려워 분석의 편의상 전체 평균 예측치를 활용
  - ③ 영향률을 산정함에 있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신체 장애자)와 최저임금 감액 적용자(3개월 수습근로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료의 제약상 이들을 별도로 제외하여 추정할 수가 없음
    - ※ 다른 국가에서도 이들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 영향률을 추정함.
- 6) 영향률 = 최저임금 대상근로자수 ÷ 적용대상근로자수 × 100
- 적용대상근로자수 및 최저임금 대상근로자수는
    - '00.8월 이전: 고용노동부에서 작성된 상용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활용
    - '00.9~'01.8월: 적용업종이 5명 이상 전산업인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적용업종이 1명 이상 전산업인 경우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와 고용노동부에서 작성된 상용근로자수가 4명이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합산하여 활용
    - '01.9~'02.8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와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합산하여 활용

## 7 적용 연도별·조사기관별 생계비 변동 추이

### 1. 2019~2023년도 변동 추이

(단위 : 원, 전년 동기 대비 %)

기관별 적용 연도	최저임금 인상률	통계청 실태생계비 <sup>1)</sup>	노동계 최초안 기준 생계비 <sup>2)</sup>	경영계 최초안 기준 생계비 <sup>3)</sup>
'24	2.5	2,411,320 (9.3%)	2,552,000(가구 규모를 고려한 생계비) ※근로자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과 가구 규모별 가중치 적용	1,749,260 근로소득 10분위 중 3분위의 실태생계비 평균 (≒ 중위 임금의 2/3, 저임금 근로자)
'23	5.0	2,205,432 (5.8%)	2,844,070(가구 규모를 고려한 생계비) 3,156,110(가구 유형을 고려한 생계비) ※각각 가구 유형 및 가구 규모별 가중치 적용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 ※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22	5.05	2,084,332 (-4.6)	2,084,332(비혼단신근로자), 2,112,978(1인가구), 3,104,536(2인가구) 4,410,844(3인가구), 5,749,279(4인가구)	1,386,992(하위 25%)
'21	1.5	2,184,538 (-)	2,195,408(비혼단신근로자), 2,257,702(1인가구), 3,252,846(2인가구), 4,141,086(3인가구), 5,884,815(4인가구)	※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20	2.87	2,014,955 (-3.8)	2,059,528(비혼단신근로자), 2,126,713(1인가구), 3,404,970(2인가구), 4,534,645(3인가구), 5,460,253(4인가구)	※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19	10.9	2,095,058 (-)	2,963,077(2인가구), 3,438,495(3인가구)	1,215,827(하위 25%)

※ 1) 통계청 자료는 '07년 이후부터 전 연령(15세~)의 실태생계비이고, 산출시점은 적용 연도 기준시 2년 전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17년, '19년 표본설계, 조사방법 등이 변경되어 시계열이 단절됨

2)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5년 심의부터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서 산출한 실태생계비 중 가구원수별 생계비를 활용했으며, '19년부터 근로자위원 최저임금 최초안을 기준으로 작성함

3) 한국경총은 '07년 심의 시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서 산출한 실태생계비(소득하위25%)를 활용, 이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더하여 최저임금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안)를 산출, '19년부터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최초안을 기준으로 작성함

## 2. 2009~2018년도 변동 추이

(단위 : 원, 전년 동기 대비 %)

기관별 적용 연도	최저임금 인상률	통계청 실태생계비 <sup>1)</sup>	한국노총 제출 또는 발표 생계비 <sup>2)</sup>	민주노총 제출 또는 발표 생계비 <sup>2)</sup>	경영계 제출 또는 발표 생계비 <sup>3)</sup>
'18	16.4	1,752,898 (4.7)	1,786,203(비혼단신근로자), 2,562,787(2인가구), 3,707,538(3인가구), 4,319,619(4인가구)		1,113,288
'17	7.3	1,673,803 (7.8)	1,693,889(비혼단신근로자) 2,740,064(2인가구), 3,478,738(3인가구)		1,034,964
'16	8.1	1,553,390 (3.1)	1,939,580(미혼단신근로자) 3,066,476(2.5인 가구)		900,049
'15	7.1	1,506,179 (-0.4)	2,058,464	-	960,354
'14	7.2	1,512,717 (7.2)	1,939,878		932,716
'13	6.1	1,410,748 (7.8)	미제출		미제출
'12	6.0	1,312,755 (6.4)	1,776,820		801,942
'11	5.1	1,233,419 (3.3)	1,574,000		785,991
'10	2.75	1,193,597 (3.1)	1,474,170		-
'09	6.1	1,158,254 (9.4)	1,485,320		-

※ 1) 통계청 자료는 '07년 이후부터 전 연령(15세~)의 실태생계비이고, 산출시점은 적용 연도 기준시 2년 전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17년, '19년 표본설계, 조사방법 등이 변경되어 시계열이 단절됨

2)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04년 심의부터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서 산출한 실태생계비를 활용, 이에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더하여 최저임금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안)를 산출. 양노총 자체에서 조사하여 이론생계비 산출

3) 한국경영총은 '07년 심의 시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서 산출한 실태생계비(소득하위25%)를 활용, 이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더하여 최저임금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안)를 산출

## 3. 1988~2008년도 변동 추이

(단위 : 원, 전년 동기 대비 %)

기관별 적용 연도	최저임금 인상률	최임위사무국 실태생계비 <sup>1)</sup>		한국노동연구원 <sup>2)</sup>		한국노총 제출 또는 발표 생계비 <sup>3)</sup>	민주노총 제출 또는 발표 생계비 <sup>3)</sup>	경영계 제출 또는 발표 생계비 <sup>4)</sup>
		매년3월 평균값	매년10월 평균값	최빈값	중위값			
'08	8.3	-	1,224,310 (4.0)	-	-	1,310,010		826,296
'07	12.3	-	1,176,695 (3.7)	-	-	1,270,830		-
'05. 9.~ '06. 12.	9.2	-	1,135,234 (4.3)	-	-	1,214,700		-
'04. 9.~ '05. 8.	13.1	-	1,088,496 (7.5)	-	-	1,179,491		-
'03. 9.~ '04. 8.	10.3	-	624,819 (11.2)	579,793 (8.3)	-	1,321,863 (3.9)	1,264,731 (6.7)	-
'02. 9.~ '03. 8.	8.3	-	561,661 (8.2)	535,385 (6.6)	-	1,271,703 (26.6)	1,185,362 (3.3)	-
'01. 9.~ '02. 8.	12.6	-	519,306 (15.5)	502,127 (12.0)	-	1,004,543 (5.5)	1,147,596 (6.9)	-
'00. 9.~ '01. 8.	16.6	-	449,699 (14.7)	448,299 (6.7)	-	951,931 (3.9)	1,073,436 (7.7)	-
'99. 9.~ '00. 8.	4.9	-	391,925 (9.2)	419,977 (6.6) (98.10)	-	915,794 (6.9)	996,359 (-1.1)	-
'98. 9.~ '99. 8.	2.7	-	358,907 (8.8)	393,983 (8.0)	-	856,998 (35.9)	1,007,918 (5.6)	-
'97. 9.~ '98. 8.	6.1	-	329,919 (7.9)	-	-	630,286 (9.2)	954,244 (7.7)	-
'96. 9.~ '97. 8.	9.8	-	305,764 (8.7)	338,217 (19.9)	-	577,335 (10.4) (95.10월)	886,211 (-)	-

기관별 적용 연도	최저임금 인 상 륜	최임위사무국 실태생계비 <sup>1)</sup>		한국노동연구원 <sup>2)</sup>		한국노총 제출 또는 발표 생 계 비 <sup>3)</sup>	민주노총 제출 또는 발표 생 계 비 <sup>3)</sup>	경영계 제출 또는 발표 생 계 비 <sup>4)</sup>
		매년3월 평균값	매년10월 평균값	최 빈 값	중 위 값			
'95. 9. ~ '96. 8.	8.97	-	281,228 (9.1)	282,135 ( - ) (*94.2/4)	-	523,048 (17.0)	-	-
'94. 9. ~ '95. 8.	7.8	-	257,804 ( - )	-	-	447,082 (13.2)	-	-
'94. 1. ~ '94. 8.	7.96	240,644 (10.5)	-	-	-	394,970 (17.1)	-	-
'93	8.6	217,867 (10.2)	230,385 (11.2)	-	-	337,385 (10.7) (*92.12)	-	-
'92	12.8	197,692 (18.2)	207,095 (8.9)	179,554 (3.6%)	202,727 (0.8%)	304,893 (*91.3)	-	-
'91	18.8	167,296 (17.1)	190,239 (23.7)	173,360 (14.4%)	201,032 (13.0%)	-	-	
'90	15.0	142,887 (11.5)	153,741 (15.4)	151,520 (17.5%)	177,983 (17.3%)	185,383 (23.5)	-	
'89	1그룹(29.7) 2그룹(23.1)	128,093 (8.4)	133,240 (*88.10)	128,990 (14.1%)	151,673 ( - )	150,094 (△5.8)	-	
'88	-	115,426 (*87.3)	-	113,079 (*87.3)	-	159,332 (*87.5)	-	

- ※ 1)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자료는 산출시점 기준 '88~'02년까지는 18세 연령, '03~'06년까지는 15~29세 연령의 실태생계비이며, 산출시점은 적용 연도 기준시 2년 전('94년까지는 1년전)의 10월 한달의 기간임
- 2)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산출한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또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구, 도시가계조사) 결과를 활용한 18세 단신근로자의 이론(최빈수 또는 중위수)생계비임.(적용 연도('04.9월~'05.8월) 이후 산출 중단)
- 3)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04년 심의부터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서 산출한 실태생계비를 활용, 이에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더하여 최저임금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안)를 산출. 양노총 자체에서 조사하여 이론생계비 산출
- 4) 한국경영총은 '07년 심의 시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서 산출한 실태생계비(소득하위 25%)를 활용, 이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더하여 최저임금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안)를 산출



## 제4부

### 위원회 활동사항

---

1. 연도별 현장 방문 활동
2. 연도별 토론회 등 개최 현황
3. 연도별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현장조사





## 1 연도별 현장 방문 활동

연도	일 자	방 문 지 역	방문업체	방 문 인 원
'23	4.27.	시흥	2개 업체	총 35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4.28.	부천	1개 업체	16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5.11.	김제	1개 업체	13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22	4.28.	대전	2개 노사단체	총 25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4.28.	대전	1개업체	12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5.3.	대구	1개업체	14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5.3.	대구	2개 노사단체	총 31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5.26.	전주	1개 업체	16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21	4.27.~5.4.	이해관계자 간담회(비대면 온라인)	6개노사단체	32명(공익위원)
	6.1.	인천	1개업체	9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6.4.	서울	1개업체	10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6.4.	인천	1개업체	7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6.9.	서울	1개업체	10명(노·사·공익위원)
'20	1.17.~5.28.	이해관계자 간담회(서울)	14개 노사단체	50명(공익위원)
	5.21.	이해관계자 간담회(경주)	1개노사단체	2명(공익위원)
	6.18.~6.23.	권역별 토론회(대전 등 6개 권역)	6개 권역	13명(노·사·공익위원)
	6.23.	부산	1개업체	6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6.24.	서울	1개업체	7명(노·사·공익위원)
'19	6.5.	서울	2개업체	21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6.10.	광주	2개업체	14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6.14.	대구	2개업체	14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6.5.	공청회(서울)	1회	21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6.10.	공청회(광주)	1회	14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6.14.	공청회(대구)	1회	14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연도	일 자	방 문 지 역	방문업체	방 문 인 원
'18	6.1.	부산	1개업체	11명(공익위원, 연구위원)
	6.5.	인천	2개업체	8명(공익위원, 연구위원)
	6.15.	익산	2개업체	6명(공익위원, 연구위원)
	5.31.	근로자 집담회, 사용자집담회(부산)	각1회	10명(공익위원, 연구위원)
	6.1.	근로감독관 집담회(부산청)	1회	11명(공익위원, 연구위원)
'17	6.20.	포천	1개 업체	14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6.21.	양주	1개 업체	13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6.19.	근로자 집담회(수원)	1회	18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6.19.	사용자 집담회(수원)	1회	18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6.19.	근로감독관 집담회(경기청)	1회	18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16	4.15.	안양	2개 업체	17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4.19.	천안	1개 업체	16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5.4.	전주	2개 업체	16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5.10.	서울	1개 업체	13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4.19., 5.10.	근로감독관 집담회(천안·서울)	2회	31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5.3.	근로자단체 집담회(전주)	1회	22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5.3.	사용자단체 집담회(전주)	1회	22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15	5.6.	광주	2개 업체	13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5.11.~5.12.(2일)	부산·대구	3개 업체	17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5.13.	서울	2개 업체	14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5.6., 5.12.	근로감독관	2회	30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5.18.	집담회(광주청·부산·대구청)	1회	22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5.18.	근로자단체 집담회(서울)	1회	22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5.18.	사용자단체 집담회(서울)	1회	22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14	5.9., 5.12., 5.13.	옥천·대전, 전주, 강릉(2개지역)	5개 업체	9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5.14., 5.19., 5.20.	서울(금천·동작·송파·성동), 인천 지방관서 최저임금 담당자 간담회	5개 업체 1회	12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4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13	5.6., 5.7., 5.8., 5.9., 5.13., 5.14., 5.15.~16.	서울, 인천, 남양주·의정부, 안산(4개지역) 청주·보은, 구미·대구, 창원·진주(3개지역)	8개 업체 7개 업체	17명(노·사·공익위원, 연구위원) 12명 (〃)

연도	일 자	방 문 지 역	방문업체	방 문 인 원
'12	5.7., 5.14., 5.15., 5.17.~18. 5.8.~5.10., 5.16.	대구, 원주, 당진·예산, 영암 (4개 지역) 안산·인천, 화성·평택, 서울 (3개 지역)	9개 업체 8개 업체	9명(노·사·공익위원, 실무자) 9명 (＼)
'11	4.20., 4.21., 4.22. 5.2., 5.4., 5.9., 5.11.	춘천, 천안, 익산, 군산(4개 지역) 서울, 인천, 수원, 고양, 안산 (5개 지역)	6개 업체 7개 업체	12명(노·사·공익위원, 실무자) 20명 (＼)
'10	4.20., 4.21., 4.29. 5.13.~5.14.(2일) 11.25.~11.26.(2일)	서울, 의정부(2개 지역) 부산, 창원(2개 지역) 익산, 김제, 논산, 공주, 청주 (5개 지역)	10개 업체 6개 업체 6개 업체	17명(노·사·공익위원, 실무자) 16명 (＼) 6명(상임위원, 연구위원)
'09	5.7. 5.13.~5.14.(2일)	김포, 파주(2개 지역) 천안, 충주, 청주(3개 지역)	3개 업체 4개 업체	14명(노·사·공익위원, 실무자) 16명 (＼)
'08	5.7. 5.13.~5.14.(2일)	서울(1개 지역) 대구, 경북(2개 지역)	3개 업체 3개 업체	24명 (＼) 21명 (＼)
'07	5.10.~5.11.(2일) 5.16.	나주, 목포, 영암(3개 지역) 안양, 수원(2개 지역)	3개 업체 3개 업체	21명 (＼) 22명 (＼)
'06	5.24. 6.7.	서울, 의정부(2개 지역) 안산	3개 업체 3개 업체	20명 (＼) 17명 (＼)
'05	5.17. 5.19.~5.20.(2일)	인천, 부천(2개 지역) 대구, 안동(2개 지역)	3개 업체 3개 업체	21명 (＼) 21명 (＼)
'04	5.24.(1일) 5.27.~5.28.(2일)	서울(구로, 금천, 강북) 진주, 창원(2개 지역)	4개 업체 3개 업체	21명 (＼) 19명 (＼)
'03	5.19.(1일) 5.22.~5.23.(2일)	성남, 안양(2개 지역) 원주, 강릉(2개 지역)	4개 업체 4개 업체	23명 (＼) 16명 (＼)
'02	5.16.~5.17.(2일) 5.24.(1일)	목포, 군산(2개 지역) 의정부, 안산(2개 지역)	4개 업체 4개 업체	21명 (＼) 20명 (＼)
'01	5.30.~6.1.(3일)	구미, 대구, 경산, 포항, 문경, 익산, 김제, 전주, 광주, 광양(10개 지역)	15개 업체	27명 (＼)

연도	일 자	방 문 지 역	방문업체	방 문 인 원
'00	6.12.~6.14.(3일)	부산, 인천, 대전, 수원, 청주, 충주, 천안(7개 지역)	11개 업체	23명 (＃)
'99	5.27.~5.29.(3일)	구미, 대구, 거제, 전주, 광주, 여수(6개 지역)	10개 업체	22명 (＃)
'98	5.21.~5.23.(3일)	경기, 강원, 부산, 경남, 김해, 양산(6개 지역)	10개 업체	25명 (＃)
'97	5.19.~5.21.(3일)	전북, 충남, 부산, 경남, 경북(5개 지역)	10개 업체	14명 (＃)
'96	5.8.~5.10.(3일)	서울, 제주, 영월, 강릉, 전주, 여수(6개 지역)	12개 업체	21명 (＃)
'95	5.16.~5.19.(4일)	청주, 충주, 마산, 진주(4개 지역)	9개 업체	25명 (＃)
'94	5.10.~5.13.(4일)	광주, 대전, 부산, 대구(4개 지역)	8개 업체	17명 (＃)
'93	8.24.~8.25.(2일)	인천, 안산, 수원, 성남, 서울(5개 지역)	5개 업체	10명 (＃)
'92	6.3.~6.17.(15일)	부산, 안양, 대구, 의정부, 대전, 청주, 천안, 수원, 목포, 이리, 전주(11개 지역)	30개 업체	34명 (＃)
'91	7.23.~7.26.(4일)	대구, 구미, 수원, 안양, 안산, 부산, 마산, 부천, 성남, 전주, 이리, 청주, 천안(13개 지역),	31개 업체	30명 (＃)
	8.14.(1일)	의정부(1개 지역)	1개 업체	9명 (＃)
'90	7.25.~7.28.(4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대전, 광주, 전남(8개 지역)	30개 업체	20명 (＃)
'89	8.16.~8.19.(4일)	부산, 대구, 구미, 울산, 대전, 전주, 광주, 익산(8개 지역),	26개 업체	15명 (＃)
	9.18.(1일)	서울(1개 지역)	7개 업체	10명 (＃)
'88	9.13.~9.16.(4일)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목포, 태백, 영월, 성남(8개 지역)	22개 업체	22명 (＃)

## 2 연도별 토론회 등 개최 현황

연도	일시	장소	주제명	발표자	비고
'20	6.1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	○ 최저임금 인상이 광주·전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윤 상 용	토론자 8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회의실	○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	이 준 우	토론자 6명
	6.19.	충북지방고용노동청 중회의실	○ 최저임금과 지역경제	김 진 방	토론자 5명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중회의실	○ 발제 없이 패널 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	토론자 4명
	6.23.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 최저임금 설정방향과 시사점	서 옥 순	토론자 6명
'17	12.6.	프레스센터	○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 토론회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 -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 방안 - 업종·지역별 등 구분 적용 방안 -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방안	도 재 형 이 정 아 노 민 선 노 호 창	토론자 8명
'15	12.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 토론회 -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제고방안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필요성 - 최저임금 미만을 개선과 소득분배	이 창 근 김 동 욱 정 진 호	
'11	12.1.	최저임금위원회	○ 생계비 관련 토론회 -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생계비 개선방향 -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생계비 산출방안 -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활용방안과 그 한계	이 정 식 황 인 철 이 기 재	
	10.5.	서울가든호텔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관련 위원 간담회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관련 최근 연구용역 자료 발표	정 진 호	

연도	일 시	장 소	주 제 명	발 표 자	비고
'09	11.12.	한국폴리텍1대학 성남캠퍼스	○ 최저임금 안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발전방안 ○ 최저임금의 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기능 강화방안	황 인 철 김 태 현 정 태 면	위원 워크숍
'08	10.3.	서울지방노동청 컨벤션룸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송 위 섭	토론자 5명
'07	11.2.	한화리조트(산정호수)	○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 ○ 일자리와 중소기업 혁신과제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 ○ 8년 만에 합의 결정으로 본 최저임금 결정 매뉴얼	이 용 식 홍 순 직 이 완 영	위원 워크숍
'06	10.26.	대한상공회의소	○ 최저임금 이행 효율화 방안	김 강 식	
'03	9.25.	한국노동연구원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	정진호, 안주엽 박 찬 임	
'02	9.27.	중기협중앙회	○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최저임금제도 합리화 방안	정 진 호	
'01	10.12.	수안보상록호텔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김 장 호	
'00	11.23.	대한상공회의소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재음미	박 래 영	
'99	'00.1.13.	최저임금위원회	○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	어 수 봉	
'98	11.27.~ 28.	금호인력개발원	○ 임금제도개선 ○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개선 방안	김 수 곤 조 우 현	
'97	11.14.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운영개선과제 ○ 최저임금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저임금제의 영향과 운영방식 개선방안	이 남 순 김 영 철 조 우 현	
'96	10.23.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심의방법의 개선과제 ○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서의 표준생계비 산정 방안	이 주 완 조 남 흥 조 원 황	



연도	일 시	장 소	주 제 명	발 표 자	비고
'95	11.3.	월송리조트 (원주)	○ 최저임금제도의 전향적 발전을 위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의 역할제고 방안	김 재 원	
'94	11.11.	낙산비치호텔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경험과 개선과제	임 종 료	
'93	5.7.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향 ○ 최저임금법 이렇게 고치자	이 주 환 김 영 철 김 수 곤	
'92	7.10.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안 ○ 최저임금제의 효과분석 및 평가방법	김 황 조 김 재 원	
'91	5.22.	부산상공회의소	○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법 ○ 최저임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및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이 남 순 조 우 현	
'90	6.1.	광주상공회의소	○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제의 문제와 대책 ○ 최저임금이 기업경영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 정 구 김 재 원	
'89	6.23.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최저임금수준 결정에 관한 객관적 기준 ○ 최저임금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최저임금제 운영상의 문제점	조용언, 한재열 김승구, 최세형 김만호, 윤능선	주제별 2명 발표
'88	7.1. 7.11. 7.13.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부산일보사 광주은행	○ 최저임금제와 노동생산성 및 고용구조 ○ 최저임금제와 임금구조 및 임금체계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박 세 일 이 규 창 장 현 준	

※ '04~'05년은 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로 같음.

## 3 연도별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현장조사

연도	일 시	대상국가	조 사 내 용	방 문 기 관	출 장 자
'23	11.26. ~ 12.2.(7일)	프랑스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EU 전문가와 최저임금 관련 의견 교류 및 국제현황 통계자료 수집 등</li> <li>○ 프랑스·벨기에의 최저 임금제도 운영현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고용노동 및 사회국</li> <li>• EU 고용총국</li> <li>• 프랑스 전문가그룹</li> <li>• EU 집행위원회</li> <li>• 벨기에 연방노동부</li> <li>• 벨기에 국가노동위원회</li> </ul>	박준식(위원장) 이인희, 남호현(사무국)
'22	10.22. ~ 10.30.(9일)	독일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2015년 최저임금 도입 후의 정책효과와 제도 운영현황 등</li> <li>○ (스위스) 제네바주 최저임금 제도 운영현황 등, 국제 기구 전문가와 최저임금 제도에 관한 의견 공유 및 직접 교류 위한 채널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노동조합총연맹 (DGB)</li> <li>• 연방노동사회부(BMAS)</li> <li>• 최저임금위원회</li> <li>• 독일경영자총연합회(BDA)</li> <li>• 제네바 주정부</li> <li>• 국제노동기구(ILO)</li> <li>• 국제사용자기구(IOE)</li> </ul>	권순원, 이동호, 류기정 (위원) 이인희(사무국)
'19	12.1. ~ 12.7.(7일)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제도 및 국가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li> <li>○ 최저임금 결정기준, 사무국 운영 관련 자료 수집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및고용연합(REC)</li> <li>• 영국산업연맹(CBI)</li> <li>• 저임금위원회(LPC)</li> <li>• 노동조합회의(TUC)</li> </ul>	박준식(위원장), 권순원, 이성경, 이경숙(위원) 문철현(사무국), 이재인(고용부)
'18	11.27. ~ 11.30.(4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최저임금제도 비교」 관련 발표 및 논의</li> <li>○ 일본의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제도 운용 사례조사 등 관련 업무 의견 교환</li> </ul>	도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생노동성</li> <li>• 중앙최저임금심의회</li> <li>• 노·사단체 방문</li> <li>• 사이타마대학 도쿄캠퍼스 야마나시현</li> <li>• 야마나시노동국(지방 최저임금심의회)</li> </ul>	류장수, 김성호, 백학영, 전수찬, 권순중(위원) 등 11명

연도	일 시	대상국가	조 사 내 용	방 문 기 관	출 장 자
'17	11.5.~ 11.11.(7일)	호주	○ 최저임금 제도·운영 실태 ○ 최저임금 결정과정 및 주요 고려사항 ○ 최저임금 실효성 확보 정책	브리즈번 • 공정근로옴부즈맨 시드니 • 공정근로위원회 • 호주산업그룹(사용자단체)	김성호, 강성태, 문현군, 최금주(위원) 등 7명
'16	11.22.~ 11.25.(4일)	일본	○ 한-일 최저임금 공익 위원 공동 세미나 ○ 지역별(업종별) 최저 임금제도 등 운영실태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오사카 노동국	류경희, 이지만, 김동배, 나영선, 김대준(위원) 등 9명
'15	11.4.~ 11.11.(8일)	캐나다 미국	○ 최저임금제도 운영실태	캐나다 온타리오 노동부 미국 노동부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조 합회의	류경희, 백영길, 최금주, (심의위원) 김상범(사무국)
'14	11.2.~ 11.8.(7일)	영국 룩셈부르크	○ 최저임금제도 관련 통계 및 운영실태	영국 통계청 영국 저임금위원회 룩셈부르크 소득연구기관	이지만, 이병균(심의위원) 하상우(연구위원) 박기원(사무국)
'13	8.25.~ 8.29.(5일)	일본	○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일본노동연수기구 도요타(나고야현 소재) 지역최저임금심의회 (나고야현 소재)	박준성(위원장) 한광호, 주봉희, 이동응, 김제락, 이장원(심의위원) 김원영, 하서립(사무국)
	10.27.~ 11.2.(7일)	프랑스 체코	○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프랑스 - 노동부(국가협상위원회) - OECD 사무국 체코 - 노동사회부	이정식, 이은희(심의위원) 신동호(사무국)

연도	일 시	대상국가	조 사 내 용	방 문 기 관	출 장 자
'12	11.25.~ 11.30.(6일)	중국 베트남	○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전해선, 소병학(사무국) 허윤정, 김은기(연구위원) 임영주(단체관계자) (5명)
'11	11.26.~ 12.3.(8일)	뉴질랜드 호주	○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뉴질랜드 노동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공정근로위원회	이기숙, 권경숙(사무국) (2명)
'10	11.14.~ 11.19.(6일)	일본 대만	○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일본 - 중앙최저임금심의회 (후생노동성 노동 기준국) - 홋카이도지역최저임금 심의회(홋카이도 노동 기준부) 대만 - 행정원 노공위원회	이재준, 김인순(사무국) 금정수(고용노동부) (3명)
'08	9.28.~ 10.4.(7일)	영국 네덜란드	○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영국 - 기업규제개혁부 - 최저임금위원회 네덜란드 사회경제협의회	정태면(상임위원) 양수승, 유은정(사무국) (3명)
'07	4.5.~ 4.12.(7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프랑스 고용노동통합연대부 스페인 노동사회부 포르투갈 - 노동부 - 경제사회이사회	이완영(상임위원) 이선, 백현기(심의위원) 김동욱(연구위원) 조동훈(단체관계자) (5명)
	11.5.~ 11.10.(6일)	일본 중국	○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일본 - 경제단체연합회 -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중국 중화전국총공회	양수승, 정명숙(사무국) (2명)
'06	9.11.~ 9.21.(11일)	캐나다 페루, 멕시코	○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캐나다 몬트리오 노동부 페루 노동부 멕시코 최저임금위원회	이완영(상임위원) 천경기, 이소선(사무국) (3명)

연도	일 시	대상국가	조 사 내 용	방 문 기 관	출 장 자
'05	12.12.~ 12.17.(6일)	인도네시아 베트남	○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이병균, 홍순직(심의위원) 이완영(상임위원) 신동욱(사무국)(4명)
'04	10.25.~ 11.1.(8일)	터키 그리스	○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터키 노동사회보장부 그리스 노동복지부	송위섭(위원) 김동희(상임위원), 신성식(사무국)(3명)
'03	12.10.~ 12.21.(12일)	뉴질랜드 호주	○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뉴질랜드 노동부 호주 - 노동부 - 노사관계위원회	이민우, 이상호, 이상철(노사단체실무자) 강명자, 신동희(사무국) (5명)
'02	3.21.~ 3.28.(8일)	영국 포르투갈	○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영국 - 저임금위원회 - ACAS 포르투갈 노동사회부	정진호(연구위원) 장의성(상임위원)(2명)
	12.2.~ 12.7.(6일)	일본	○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일본 - 후생노동성 - 가나가와현 노동국	신동희, 윤영숙, 배지연, 박승모(사무국)(4명)
'01	10.15.~ 10.21.(7일)	독일 스위스	○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스위스 ILO 대표부	박주정, 안옥자, 김효선 (사무국)(3명)
'00	11.27.~ 12.3.(7일)	프랑스	○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프랑스 고용연대부 OECD 사무국	박영조(심의위원) 안동현(사무국)(2명)
'94	12.14.~ 12.19.(6일)	싱가폴 인도네시아	○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싱가폴 노동성 임금위원회 인도네시아 노동성	박상길, 서규석 (사무국)(2명)
'93	6.20.~ 6.24.(5일)	일본	○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노동성 노동기준국 동경 노동기준국	김종오, 목진춘 (사무국)(2명)
'92	5.10.~ 5.17.(8일)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폴	○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인도네시아 인력부 싱가폴 노동부 태국 - 내무부 - 노동국	김중화, 김황조 (심의위원) 성진기(사무국장) (3명)

연도	일 시	대상국가	조 사 내 용	방 문 기 관	출 장 자
'91	5.26.~ 6.1.(7일)	일본 필리핀	○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필리핀 - 노동부 - 4개 지역 임금생산성위원회 - 전국 임금생산성 위원회 일본 - 경제단체연맹 - 경영자협회, 노총 - 가나가와현 노동기준국 - 시즈오카현 통조림조합	김중화, 최종태, 이종완, 조운형(심의위원) 이정님, 조정호, 원정현, 김정태, 강영철(노동부, 사무국 및 노·사 단체 실무자) (10명)
'88	1.13.~ 1.26.(14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 각국의 최저임금제 실시 개요	프랑스 노동성 이태리 노동성 일본 노동성	배인준, 김창욱, 강철원, 정종호, 안병선, 강갑출 (이상노동부출입기자) 정순민(사무국)(7명)
	12.5.~ 12.10.(6일)	일본	○ 최저임금제의 발전 과정 ○ 일본의 최저임금심의 회의 운용 현황 ○ 최저임금심의 결정 실태와 이행 실태 ○ 최저임금심의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	일본 - 노동성 노동기준국 -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조기준(위원장) 조경원(사무국)(2명)

※ '20~'21년도는 코로나19, '09년도는 신종플루, 국무총리 지시 등으로 외국의 최저임금 조사 생략

## 제5부

### 심의 기초자료 개요

---

1.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2. 임금실태 등 분석
3.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4.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 1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 가. 분석목적

비혼 단신근로자의 실제 소비실태와 수준 등을 파악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

### 나. 분석내용 및 활용자료

#### 1) 분석내용

- 전년도 연간 실태생계비 수준 및 상승률
  - 전 연령, 29세 이하, 34세 이하 연령계층별 비혼 단신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내역과 소비지출(12개 항목) 내역별 월평균 생계비 수준 및 전년 대비 증감률 지표 산출
- 분위수별 생계비 수준 및 증감률
- 성·학력 및 세부 연령대별 생계비 수준 및 증감률

#### 2) 활용자료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 1명 이상 전체 가구 중 비혼 단신근로자 부문의 원자료를 입수한 후 생계비를 가공·집계 및 분석

### 다. 분석보고서 발간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 조사 결과를 분석(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

## 2 임금실태 등 분석

### (2-1) 유사근로자의 임금

#### 가. 분석목적

유사근로자의 임금실태 및 최저임금 미만율, 영향률 등을 파악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

#### 나. 분석내용 및 활용자료

##### 1) 분석내용

- 전년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학력별 등 임금, 근로시간, 고용 실태 및 최저임금 미만율
-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분포를 추정하여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수준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및 영향률 추정
  -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학력별 등 산출

##### 2) 활용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임금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매년 6월 임금실태(공공부문 제외)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임금근로자의 매년 6~8월 중 임금실태(공공부문 포함)
- 「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결정현황조사」, 「가계동향조사」

#### 다. 분석보고서 발간

근로자의 임금실태 등을 분석(「임금실태 등 분석」 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

## (2-2) 노동생산성

### 가. 분석목적

노동생산성 관련 국내외 통계지표를 분석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

### 나. 분석내용 및 활용자료

#### 1) 분석내용

##### ○ 노동생산성

-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업별 1인당 및 시간당 물적 노동생산성과 불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지수의 연간 자료 분석
- OECD 주요 국가들의 전산업 GDP(불변가격)를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노동생산성 비교

#### 2) 활용자료

##### ○ 「노동생산성지수」

- 한국생산성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통계청,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등의 통계를 가공하여 작성

##### ○ 「GDP per hour worked(시간당 노동생산성)」

- OECD에서 매년 생산하는 OECD 주요 국가 시간당 노동생산성 비교 자료

### 다. 분석보고서 발간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 분기별 작성한 노동생산성 자료와 OECD에서 연간 작성한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 자료를 근거로 분석(「임금실태 등 분석」 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

## (2-3) 소득분배율

### 가. 분석목적

저임금근로자 계층의 상대적인 임금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기초자료로 제공

### 나. 분석내용 및 활용자료

#### 1) 분석내용

- 하위 10%번째 근로자의 임금률(P10) ÷ 하위 50%번째 근로자의 임금률(P50)
  - 전체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한 시간당 임금총액(통상임금)을 환산하여 저임금근로자 계층 간 상대적 임금불평등 정도를 산출
- 최저임금액 시급 ÷ 하위 50%번째
  - 전체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시간당 중위 임금총액(통상임금) 대비 최저임금 시급의 상대적 불평등 정도를 산출
- 최저임금액 시급 ÷ 근로자 임금률의 평균값

#### 2) 활용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임금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의 매년 6. 1.~6. 30.(1개월간) 기간 중 임금 실태
    - ※ 기준임금으로 시간당 통상임금 지표 사용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비정규직을 포함한 임금근로자의 매년 6월~8월 기간 중 임금 실태
    - ※ 기준임금으로 시간당 임금총액 지표 사용

### 다. 분석보고서 발간

저임금근로자의 소득분배 지표 상황을 분석(「임금실태 등 분석」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

## 3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가. 분석목적

저임금 사업체 및 근로자의 특성,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하여 다음 연도 최저임금 결정 및 정책방향에 참고

### 나. 분석내용 및 활용자료

#### 1) 분석내용

- 저임금근로자와 소속 사업체의 특성
-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 노동생산성 변화
- 최저임금 수준의 만족도 및 최저임금 인상 기대수준 등

#### 2) 활용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임금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매년 6월 임금실태 (공공부문 제외)
- 「사업체노동실태현황」 : 지역별, 업종별, 사업체규모별, 사업장수, 근로자수 (상용·임시·일용) 등

### 다. 분석보고서 발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의 적용실태를 분석(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

## 4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 가. 분석목적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주요 내용을 조사하여 다음 연도 최저임금액 결정 및 제도개선 등의 주요 정책자료로 활용

### 나. 분석내용 및 활용자료

#### 1) 분석내용

- 최저임금제도의 개요(연혁, 관련법령, 적용범위)
-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구분, 결정단위, 산업범위)
- 최저임금의 결정(결정기관, 결정절차, 결정기준 등)
- 최저임금의 이행 및 권리구제(교육·홍보, 근로감독, 사법적 권리구제)
-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최저임금 현황 등)

#### 2) 활용자료

- 해당국 대사관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

### 다. 분석보고서 발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최근 동향 등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제6부

### 기타 참고사항

---

1. 회의 진행요령
2. 투표용지(예시)
3. 노·사 최저임금 수준 제시안(예시)
4. 역대 위원 명단





# 1 회의 진행요령

제 목	내 용	공 개 여 부	진 행
○ 회의 시작	- 진행순서 사전 안내 - 국민의례	공개	사무국장
○ 인사말씀	- 위원장 인사 말씀	공개	위원장
○ 모두발언	- 노·사·공 대표위원 모두발언	공개	노·사·공 대표위원
○ 참석 현황 확인	- 성원 보고(의결정족수 확인)	공개	사무국장
○ 개의 선언	- 개의 선언(의사봉 3타)	공개	위원장
○ 보고사항	- 최저임금 심의요청서 접수 - 직전 전원회의 결과 -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결과 등	-	위원장
○ 의결사항	-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	상임위원
	-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	위원장
○ 협의사항	- 향후 위원회 일정 등	-	위원장
○ 폐회 선언	- 마무리 말씀 (의사봉 3타)	-	위원장

## 2 투표용지(예시)

-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 투표용지(단일 후보)

<h1>투 표 용 지</h1>	
제 △ 대 위원장 선거	
찬 성	반 대
20 . . . .	
최 저 임 금 위 원 회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span>	

<h1>투 표 용 지</h1>	
제 △ 대 부위원장 선거	
찬 성	반 대
20 . . . .	
최 저 임 금 위 원 회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span>	



○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 투표용지(복수 후보)

투 표 용 지	
제 △ 대 위원장 선거	
구 분	성 명
위 원 장	
20 . . . .	
최 저 임 금 위 원 회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 10px; display: inline-block;">직인</div>	

투 표 용 지	
제 △ 대 부위원장 선거	
구 분	성 명
부 위 원 장	
20 . . . .	
최 저 임 금 위 원 회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 10px; display: inline-block;">직인</div>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표결 투표용지

**투 표 용 지**

안건 : 20 . . . ~ 20 . . .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 안	(      ) 안

20 . . .

최 저 임 금 위 원 회 직인

●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투표용지

**투 표 용 지**

안건 : 20 . . . ~ 20 . . .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찬      성	반      대

20 . . .

최 저 임 금 위 원 회 직인



○ 최저임금 수준 표결 투표용지(가형)

**투 표 용 지**

안건 : 20 . . . ~ 20 . . . 적용  
최저임금액

찬 성	반 대

20 . . .

최 저 임 금 위 원 회 직인

○ 최저임금 수준 표결 투표용지(나형)

**투 표 용 지**

안건 : 20 . . . ~ 20 . . . 적용  
최저임금액

(     ) 안	(     ) 안

20 . . .

최 저 임 금 위 원 회 직인

**3 노·사 최저임금 수준 제시안(예시)**

**근로자위원**

최저임금 수준 ( )차 제시안(0차 수정안)

구 분	제시안
시간급	원
전년대비 인상률	%

※ 전 차수 제시안(      원) 대비, (      )원 (인하 / 인상)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수준 ( )차 제시안(0차 수정안)

구 분	제시안
시간급	원
전년대비 인상률	%

※ 전 차수 제시안(      원) 대비, (      )원 (인하 / 인상)



## 4 역대 위원 명단

### [제1대('87. 7. 30. ~ '90. 8. 28.)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위촉 기간	비 고
공익위원	조기준 (위원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교 수 (경제학)	'87.7.30.~ '90.8.28.	김중화 상임위원과 교체
	정택주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88.1.8.~ '89.5.30.	
	김중화 (부위원장)	"	"	'89.5.31.~ '91.1.7.	
	김수곤	경희대학교	교 수 (노동경제)	'87.7.30.~ '90.8.28.	
	김형배	고려대학교 법정대학	교 수 (노동법)	"	
	이규창	단국대학교 경상대	학 장 (노동경제)	"	
	조창화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원 장	"	
	박필수	한국생산성본부	회 장 (경제개발)	"	
	배무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원 장 (노동경제)	'87.7.30.~ '88.6.23.	
	박세일	서울대학교 법정대학	교 수 (노동법)	'88.6.24.~ '90.8.28.	
근로자위원	김락기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87.7.30.~ '90.8.28.	김만호 위원과 교체
	민정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	
	정춘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	"	
	이시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	'87.7.30.~ '88.6.23.	
	김만호	전국고무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88.6.24.~ '90.8.28.	
	이용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87.7.30.~ '88.6.23.	
	홍금용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88.6.24.~ '90.8.28.	
	이종완	전국전력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87.7.30.~ '88.9.27.	
	이성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88.9.28.~ '89.3.22.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위촉 기간	비 고
근로자위원	나운석	전국관광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89.3.23.~ '90.8.28.	김승구 위원과 교체
	박종근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87.7.30.~ '89.1.30.	
	김승구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89.1.31.~ '90.8.28.	
	민요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87.7.30.~ '89.3.22.	홍삼희 위원과 교체
	홍삼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89.3.23.~ '90.8.28.	
	박준홍	전국철도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87.7.30.~ '89.3.22.	박인상 위원과 교체
	박인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89.3.23.~ '90.8.28.	
사용자위원	김영철	오시오전자(주)	대표이사	'87.7.30.~ '90.8.28	
	신태식	전국경제인연합회	부 회 장	"	
	윤능선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	
	이은택	한일방직(주)	대표이사	"	
	차상필	대한상공회의소	부 회 장	"	
	최규순	한국문구조합협동조합	이 사 장	"	
	최세형	한국무역협회	이 사	"	
	한재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 회 장	"	
	황정현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이사	"	

**【제2대('90. 8. 29. ~ '93. 11. 25.)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위촉 기간	비 고	
공익위원	조기준 (위원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교 수 (경제학)	'90.8.29.~ '93.11.25.		
	김중화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91.1.8.~ '94.1.7.		
	김수곤	경희대학교	교 수 (노동경제)	'90.8.29.~ '93.11.25.		
	이규창	단국대학교	"	"		
	최종태	서울대학교	교 수 (경영학)	"		
	김형배	고려대학교 법정대학	교 수 (노동법)	'90.8.29.~ '92.9.13.		김대모 위원과 교체
	김대모	중앙대학교	교 수 (노동경제)	'92.9.14.~ '93.11.25.		김재원 위원과 교체
	김황조	연세대학교	교 수 (노동법)	'90.8.29.~ '92.8.20.		
	김재원	한양대학교	교 수 (노동경제)	'92.8.21.~ '93.11.25.		임종률 위원과 교체
	박세일	서울대학교 법정대학	교 수 (노동법)	'90.8.29.~ '92.9.13.		
	임종률	성균관대학교	교 수 (법 학)	'92.9.14.~ '93.11.25.		
	근로자위원	김락기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90.8.29.~ '93.11.25.
김만호		전국고무노동조합연맹	"	"		
김유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	"		
나운석		전국관광노동조합연맹	"	"		
민정식		한국노총 장학회	이 사	'90.8.29.~ '93.7.7.		
이주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93.7.8.~ '93.11.25.		
박인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90.8.29.~ '93.11.25.		
송수일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	"		
이광남		전국택시노동조합총연맹	"	"		
이종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위촉 기간	비 고
사용자위원	김수광	-	-	'90.8.29.~ '91.6.2.	김정재 위원과 교체
	김정재	한일합섬(주)	전무이사	'91.6.3.~ '92.6.16.	권오현 위원과 교체
	권오현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 사 장	'92.6.17.~ '93.11.25.	
	박용상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90.8.29.~ '92.6.16.	최경선 위원과 교체
	최경선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이사	'92.6.17.~ '93.11.25.	
	백영기	동국무역(주)	대표이사	'90.8.29.~ '92.6.16.	김영철 위원과 교체
	김영철	(주)GISS	고 문	'92.6.17.~ '93.11.25.	
	조규하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90.8.29.~ '91.6.2.	송충섭 위원과 교체
	송충섭	전국경제인연합회	이 사	'91.6.3.~ '93.11.25.	
	조운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90.8.29.~ '92.6.16.	우종관 위원과 교체
	우종관	한국경영자총협회	이 사	'92.6.17.~ '93.11.25.	
	정한승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이 사 장	'90.8.29.~ '92.6.16.	황철갑 위원과 교체
	황철갑	전방(주)	전무이사	'92.6.17.~ '93.11.25.	
	최세형	한국무역협회	상무이사	'90.8.29.~ '93.11.25.	
	허상녕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 회 장	'90.8.29.~ '92.8.20.	이병균 위원과 교체
	이병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 회 장	'92.8.21.~ '93.11.25.	
	황정현	한국경영자총협회	"	'90.8.29.~ '93.11.25.	

주) 제2대 위원 위촉임기는 '93.8.28일이나 '94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관계로 후임위원 위촉시까지 임기연장 ('93.11.25.)



### 【제3대('93. 11. 26. ~ '96. 11. 25.)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위촉 기간	비 고
공익위원	조기준 (위원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교 수 (경제학)	'93.11.26.~ '96.11.25.	
	김중화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91.1.8.~ '94.1.7.	조원항 상임위원과 교체
	조원항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	'94.1.15.~ '96.8.15.	홍은선 상임위원과 교체
	홍은선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	'96.8.16.~ '97.1.14.	
	김수곤	경희대학교	교 수 (노동경제)	'93.11.26.~ '96.11.25.	
	김정자	한국여성개발원	원 장	'93.11.26.~ '95.5.10.	정세화 위원과 교체
	정세화	한국여성개발원	원 장	'95. 5.11.~ '96.11.25.	
	최종태	서울대학교	교 수 (경영학)	'93.11.26.~ '96.11.25.	
	박내희	서강대학교	"	"	
	임종률	성균관대학교	교 수 (법 학)	"	
김재원	한양대학교	교 수 (노동경제)	"		
근로자위원	이종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93.11.26.~ '96.11.25.	
	김만호	전국고무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93.11.26.~ '95.12.20.	공홍태 위원과 교체
	공홍태	전국고무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95.12.21.~ '96.11.25.	
	이주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93.11.26.~ '96.11.25.	
	박인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	
	김유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	"	
	이광남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	
	김락기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	"	
	송수일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	"	
	정영기	전국관광노동조합연맹	"	"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위촉 기간	비 고
사용자위원	김영철	(주)태화기연 회장	고 문	'93.11.26.~ '96.11.25.	
	황철갑	금 방(주)	전무이사	"	
	권오현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 사 장	"	
	우종관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	
	최경선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이사	'93.11.26.~ '96.4.3.	이영록 위원과 교체
	이영록	대한상공회의소	이 사	'96.4.4.~ '96.11.25.	
	황정현	한국경영자총협회	부 회 장	'93.11.26.~ '95.1.25.	조남홍 위원과 교체
	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부 회 장	'95.1.26.~ '96.11.25.	
	송충섭	전국경제인연합회	이 사	'93.11.26.~ '95.4.11.	전대주 위원과 교체
	전대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95.4.12.~ '96.11.25.	
	최세형	한국무역협회	상무이사	'93.11.26.~ '94.4.27.	김창진 위원과 교체
	김창진	한국무역협회	상무이사	'94.4.28.~ '95.4.11.	신원식 위원과 교체
	신원식	한국무역협회	조사이사	'95.4.12.~ '96.11.25.	
	이병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 회 장	'93.11.26.~ '95.10.6.	김경만위원과 교체
	김경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무이사	'95.10.7.~ '96.11.25.	



### 【제4대(1996. 11. 26. ~ 2000. 4. 3.)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위촉 기간	비 고
공익위원	김수곤 (위원장)	경희대학교	교 수 (노동경제)	'96.11.26.~ '99.11.25.	장락현 상임위원과 교체
	홍은선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97.1.15.~ '98.8.30.	
	장락현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98.8.31.~ 2000.1.19.	
	김애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 수	'96.11.26.~ '99.11.25.	김종익 위원과 교체
	노미혜	한국여성개발원	부 원 장	'96.11.26.~ '98.10.23.	
	김종익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장	'98.10.24.~ '99.11.25.	
	박래영	홍익대학교	교 수	'96.11.26.~ '99.11.25.	
	송위섭	아주대학교	"	"	
	조우현	숭실대학교	"	"	
	최종태	서울대학교	"	"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99.4.17.~ 2002.4.15.		
근로자위원	공홍태	전국고무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96.11.26.~ '97.4.23.	류동호 위원과 교체
	류동호	전국고무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97.4.24.~ '99.11.25.	
	김락기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	'96.11.26.~ '99.11.25.	강찬수 위원과 교체
	김승구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96.11.26.~ '99.4.16.	
	강찬수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	'99.4.17.~ '99.11.25.	
	박헌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	'96.11.26.~ '99.11.25.	
	유재섭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	
	이광남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위촉 기간	비 고
근로자위원	이주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96.11.26.~ '97.5.16.	원정연 위원과 교체
	원정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97.5.17.~ '98.3.10.	노진귀 위원과 교체
	노진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98.3.11.~ '99.11.25.	
	정영기	전국관광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96.11.26.~ '99.11.25.	
	조한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96.11.26.~ '97.3.26.	이남순 위원과 교체
	이남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97.3.27.~ '99.11.25.	
사용자위원	권오현	(주)상진전공	대 표	'96.11.26.~ '99.11.25.	
	김경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무이사	'96.11.26.~ '98.10.23.	이효차 위원과 교체
	이효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무이사	'98.10.24.~ '99.11.25.	
	김영철	한국오리온전자	회 장	'96.11.26.~ '99.11.25.	
	신원식	한국무역협회	이 사	"	
	우종관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	
	이영록	대한상공회의소	이 사	'96.11.26.~ '98.12.11.	엄기웅 위원과 교체
	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	이 사	'98.12.12.~ '99.11.25.	
	전대주	전국경제인연합회	이 사	'96.11.26.~ '97.4.23.	이용환 위원과 교체
	이용환	전국경제인연합회	이 사	'97.4.24.~ '99.11.25.	
	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96.11.26.~ '99.11.25.	
	한용교	(주)원지산업	대 표	'96.11.26.~ '99.11.25.	



### 【제5대(2000. 4. 4. ~ 2003. 4. 15.)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위촉 기간	비 고	
공익위원	김수곤 (위원장)	전 경희대학교 부총장	교 수 (노동경제)	2000.4.4.~ 2003.4.15.	장의성 상임위원과 교체	
	박영조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2000.1.28.~ 2001.12.31.		
	장의성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2002.1.1.~ 2003.1.27.		
	김종의	숙명여자대학교	교 수	2000.4.4.~ 2003.4.15.		
	박래영	홍익대학교	"	"		
	송위섭	아주대학교	"	"		
	조우현	승실대학교	"	"		
	최종태	서울대학교	"	"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99. 4.17.~ 2001.4.15.		김장호 위원과 교체
	김장호	숙명여자대학교	"	2001.4.16.~ 2002.4.16. 2002.4.29.~ 2005.4.28.		김장호 위원 2002.4.29. 재위촉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00.4.4.~ 2003.4.15.		
	근로자위원	이남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2000.4.4.~ 2000.6.15.
조천복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2000.6.16.~ 2002.8.6.	이병균 위원과 교체	
이병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2002.8.7.~ 2003.4.15.		
유재섭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2000.4.4.~ 2003.4.15.		
박헌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	"		
백헌기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	2000.9.28.~ 2003.9.27.		
오영봉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	2000.4.4.~ 2003.4.15.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위촉 기간	비 고
근로자위원	김락기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2000.4.4.~ 2000.5.31.	노진귀 위원과 교체
	노진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2000.6.1.~ 2003.4.15.	
	이수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2000.4.4.~ 2001.4.15.	이홍우 위원과 교체
	이홍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2001.4.16.~ 2003.4.15.	
	문성현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2000.4.4.~ 2002.4.15.	김형근 위원과 교체
	김형근	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	위 원 장	2002.4.16.~ 2003.4.15.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실장	2000.4.4.~ 2001.4.15.	유병홍 위원과 교체
	유병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실장	2001.4.16.~ 2003.4.15.	
사용자위원	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2000.4.4.~ 2003.4.15.	
	우종관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	
	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	
	이용환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2000.4.4.~ 2001.6.30.	국성호 위원과 교체
	국성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2001.7.1.~ 2003.4.15.	
	심갑보	삼익공업(주)	대표이사	2000.4.4.~ 2003.4.15.	
	홍순영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김지수	(합) 기호운수	대표이사	2000.4.4.~ 2002.4.28.	최금주 위원과 교체
	최금주	(주)화이버텍	대표이사	2002.4.29.~ 2003.4.15.	
	유인열	한국무역협회	이사	2000.4.4.~ 2001.5.28.	최정근 위원과 교체
사용자위원	최정근	한국무역협회	이사	2001.5.29.~ 2002.4.28.	김정태 위원과 교체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 본 부 장	2002.4.29.~ 2003.4.15.	
	이영남	(주)이지디지털	대표이사	2000.4.4.~ 2002.4.28.	한상원 위원과 교체
	한상원	하이텍인터내셔널	대표	2002.4.29.~ 2003.4.15.	



### 【제6대(2003. 4. 16. ~ 2006. 4. 20.)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위촉 기간	비 고
공익위원	최종태 (위원장)	서울대 경영학과	교 수	2003.4.16.~ 2006.4.20.	
	장의성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 임 위 원	2003.1.28.~ 2003.5.31.	김동희 상임위원과 교체
	김동희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 임 위 원	2003.6.1.~ 2005.7.26.	이완영 상임위원과 교체
	이완영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 임 위 원	2005.8.17.~ 2006.1.27.	
	송위섭	아주대 경제학과	교 수	2003.4.16.~ 2006.4.20.	
	박래영	홍익대 법경대학	교 수	2003.4.16.~ 2004.4.21.	최영기 위원과 교체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원 장	2004.4.22.~ 2006.4.20.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 동 대 표	2003.4.16.~ 2004.4.21.	김현희 위원과 교체
	김현희	한신대 사회학과	교 수	2004.4.22.~ 2006.4.20.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 수	2003.4.16.~ 2004.4.21.	어수봉 위원과 교체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 수	2004.4.22.~ 2006.4.20.	
	박덕제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 수	2003.4.16.~ 2006.4.20.	
	안영자	강원대 경제학과	교 수	"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2002.4.29.~ 2005.4.28.		
근로자위원	이병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2003.4.16.~ 2006.4.20.	
	백현기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2004.4.22.~ 2007.4.21.	
	박현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2003.4.16.~ 2006.4.20.	
	오영봉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2003.4.16.~ 2004.4.21.	유재섭 위원과 교체
	유재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2004.4.22.~ 2006.4.20.	
	노진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2003.4.16.~ 2005.4.11.	김종각 위원과 교체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위촉 기간	비 고	
근로자위원	김종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2005.4.12.~ 2006.4.20.	이석행 위원과 교체	
	이재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직무대행	2003.4.16.~ 2004.4.21.		
	이석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2004.4.22.~ 2006.4.15.		
	고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장	2003.4.16.~ 2006.4.20.		
	김태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실장	2003.4.16.~ 2004.4.21.		이상학 위원과 교체
	이상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구원장	2004.4.22.~ 2005.4.11.		김태현 위원과 교체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실장	2005.4.12.~ 2006.4.20.		
	이찬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연맹	위원장	2003.4.16.~ 2006.4.20.		
사용자위원	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2003.4.16.~ 2004.4.21.	김영배 위원과 교체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2004.4.22.~ 2006.4.15.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 본부장	2003.4.16.~ 2006.4.20.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		
	박용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사무이사	2003.4.16.~ 2004.4.21.	한기윤 위원과 교체	
	한기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사무이사	2004.4.22.~ 2005.4.11.		임종수 위원과 교체
	임종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책조사 본부장	2005.4.12.~ 2006.4.20.		
	심갑보	삼익LMS(주)	부회장	2003.4.16.~ 2005.4.11.	홍순직 위원과 교체	
	홍순직	서울니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2005.4.12.~ 2006.4.20.		
	한상원	하이텍인터내셔널	대표	2003.4.16.~ 2006.4.20.	권영욱 위원과 교체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본부장	"		
	고광석	한국무역협회	회원사업 본부장	2003.4.16.~ 2005.4.11.		
	권영욱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 본부장	2005.4.12.~ 2006.4.20.		
	최금주	(주)화이버텍	대표이사	2003.4.16.~ 2006.4.20.		

**【제7대(2006. 4. 21. ~ 2009. 4. 20.)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위촉 기간	비 고
공익위원	최종태 (위원장)	서울대	명 예 교 수	2006.4.21.~ 2009.4.20.	정태면 상임위원과 교체
	이완영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 임 위 원	2006.1.28.~ 2007.9.17.	
	정태면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 임 위 원	2007.11.13.~ 2009.1.27.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	원 장	2006.4.21.~ 2009.4.20.	
	최경구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 수	"	
	이 선	한국기술대학교 인력개발전문대학원	"	"	
	이혜경	배재대 미디어정보·사회학과	"	"	
	강정애	숙명여대 경영학부	"	"	
	이효수	영남대 총장	"	"	
	윤정열	이화여대 사회과학부	"	2006.4.21.~ 2008.5.26.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부	"	2008.5.27.~ 2009.4.20.	
근로자위원	백헌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 무 총 장	2007.5.18.~ 2010.5.17.	장석춘 위원과 교체
	이병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2006.4.21.~ 2007.5.17.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 원 장	2007.5.18.~ 2009.4.20.	
	박헌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	2006.4.21.~ 2009.4.20.	
	김종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 위 원 장	2006.4.21.~ 2008.5.26.	
	설인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 위 원 장	2008.5.27.~ 2009.4.20.	
	김태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 무 총 장	2006.4.21.~ 2007.5.17.	
	이용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 무 총 장	2007.5.18.~ 2009.4.20.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위촉 기간	비 고
근로자위원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실장	2006.4.21.~ 2009.4.20.	신동진 위원과 교체  배성태 위원과 교체
	이찬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연맹	위 원 장	2006.4.21.~ 2009.4.20.	
	고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장	2006.4.21.~ 2007.5.17.	
	신동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장	2007.5.18.~ 2008.5.26.	
	배성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장	2008.5.27.~ 2009.4.20.	
사용자위원	심갑보	한국경영자총협회	부 회 장	2006.4.21.~ 2009.4.20.	박종남 위원과 교체  이병욱 위원과 교체  김재숙 위원과 교체  강남훈 위원과 교체  박효욱 위원과 교체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 무 이 사	"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2006.4.21.~ 2007.5.17.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조 사 2 본 부 장	2007.5.18.~ 2009.4.20.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 무	2006.4.21.~ 2008.5.26.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2008.5.27.~ 2009.4.20.	
	권영욱	한국무역협회	무 역 진 흥 본 부 장	2006.4.21.~ 2008.5.26.	
	김재숙	한국무역협회	무 역 진 흥 본 부 장	2008.5.27.~ 2009.4.20.	
	임종수	중소기업중앙회	정 책 조 사 본 부 장	2006.4.21.~ 2007.7.22.	
	강남훈	중소기업중앙회	정 책 개 발 본 부 장	2007.7.23.~ 2008.5.26.	
	박효욱	중소기업중앙회	인 력 지 원 본 부 장	2008.5.27.~ 2009.4.20.	
	홍순직	대한니트공업협동조합 연합회	이 사	2006.4.21.~ 2009.4.20.	
	최금주	(주)화이버텍	대 표 이 사	2006.4.21.~ 2009.4.20.	
	한상원	하이텍인터내셔널	대 표	2006.4.21.~ 2009.4.20.	

**【제8대(2009. 4. 21. ~ 2012. 4. 20.)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위촉 기간	비 고
공익위원	문형남 (위원장)	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 장	2009.4.21.~ 2011.5.8.	'11.6.3위원장 선출 (문형남위원장 후임)  김영국 상임위원과 교체  '12.1.28자로 재임명
	박준성 (위원장)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 수	2009.4.21.~ 2012.4.20.	
	정태면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 임 위 원	2009.1.28.~ 2010.4.18.	
	김영국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 임 위 원	2010.4.19.~ 2012.1.27. 2012.1.28.~ 2015.1.27.	
	홍성우	전남대 경제학부	교 수	2009.4.21.~ 2012.4.20.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	"	
	이은희	인하대 생활과학대학 학장	"	"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부	"	2009.4.21.~ 2012.3.16.	
	정진화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	2009.4.21.~ 2012.4.20.	
	김경자	가톨릭대 소비자주거학과	"	"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	2011.5.9.~ 2012.4.20.	
	근로자위원	한광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 무 총 장	
설인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 위 원 장	"	
김종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2009.4.21.~ 2011.4.6.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 무 처 장	2011.4.7.~ 2012.4.20.	
변재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2009.4.21.~ 2012.4.20.	
백헌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 무 총 장	2010.5.26.~ 2011.4.6.	
백영길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2011.4.7.~ 2013.5.25.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위촉 기간	비 고
근로자위원	정의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2009.4.21.~ 2012.4.20.	임동수 위원과 교체  이재용 위원과 교체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실장	2009.4.21.~ 2011.4.6.	
	임동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연맹	정 책 실 장	2011.4.7.~ 2012.4.20.	
	이찬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 성 연 맹 위 원 장	2009.4.21.~ 2012.4.20.	
	배성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 기 본 부 장	2009.4.21.~ 2010.4.18.	
	이재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 울 본 부 장	2010.4.19.~ 2012.4.20.	
사용자위원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 무	2009.4.21.~ 2012.4.20.	강남훈 위원과 교체 백양현 위원과 교체  박영배 위원과 교체 김치중 위원과 교체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 획 홍 보 본 부 장	"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조 사 2 본 부 장	"	
	박효욱	중소기업중앙회	인 력 지 원 본 부 장	2009.4.21.~ 2009.6.1.	
	강남훈	중소기업중앙회	대 외 협 력 본 부 장	2009.6.2.~ 2010.3.29.	
	백양현	중소기업중앙회	인 력 지 원 본 부 장	2010.3.30.~ 2012.4.20.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 제 본 부 장	2009.4.21.~ 2012.4.20.	
	윤재만	한국무역협회	무 역 진 흥 본 부 장	2009.4.21.~ 2010.3.29.	
	박영배	한국무역협회	무 역 진 흥 본 부 장	2010.3.30.~ 2011.4.6.	
	김치중	한국무역협회	무 역 진 흥 본 부 장	2011.4.7.~ 2012.4.20.	
	김해용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	이 사 장	2009.4.21.~ 2012.4.20.	
	김명수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 사 장	2009.4.21.~ 2012.4.20.	
	윤장혁	화일전자(주)	대 표 이 사	2009.4.21.~ 2012.4.20.	

**【제9대(2012. 4. 24. ~ 2015. 4. 23.)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위촉 기간	비 고
공익위원 (9명)	박준성 (위원장)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12.4.24. ~ '15.4.23.	'12.5.11. 위원장으로 선출됨
	김영국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12.1.28. ~ '15.1.27.	류경희 상임위원과 교체
	류경희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15.1.30. ~ '18.1.29.	'15.1.30. 임명
	이은희	인하대 생활과학대학 학장	'12.4.24. ~ '15.4.23.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12.4.24. ~ '15.4.23.	
	양세정	상명대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12.4.24. ~ '15.4.23.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12.4.24. ~ '15.4.23.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12.4.24. ~ '13.4.23.	안주엽 위원과 교체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3.4.24. ~ '15.4.23.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4.24. ~ '15.4.23.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12.4.24. ~ '15.4.23.		
근로자위원 (9명)	한광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12.4.24. ~ '14.5.8.	이병균 위원과 교체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14.5.9. ~ '15.4.23.	
	설인숙	한국노총 부위원장	'12.4.24. ~ '14.5.8.	김현중 위원과 교체
	김현중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14.5.9. ~ '15.4.23.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12.4.24. ~ '15.4.23.	
	백영길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11.4.7. ~ '13.5.25. '13.6.10. ~ '16.6.9.	재위촉

구 분	성 명	소 속	위촉 기간	비 고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	'12.4.24.~ '13.6.9.	주봉희 위원과 교체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13.6.10.~ '15.4.23.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	'12.4.24.~ '15.4.23.	이창근 위원과 교체
	이재용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12.4.24.~ '14.6.25.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14.6.26.~ '15.4.23.	
	최만정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장	'12.4.24.~ '15.4.23.	
	조동희	국민노총 사무처장	'12.4.24.~ '15.4.23.	
사용자위원 (9명)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12.4.24.~ '15.4.23.	김제락 위원과 교체
	백양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 본부장	'12.4.24.~ '13.8.19.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 본부장	'13.8.19.~ '15.4.23.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 본부장	'12.4.24.~ '14.6.9.	송원근 위원과 교체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 본부장	'14.6.10.~ '15.4.23.	
	김치중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 본부장	'12.4.24.~ '14.5.8.	김춘식 위원과 교체
	김춘식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 본부장	'14.5.9.~ '15.4.23.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	'12.4.24.~ '15.4.23.	
	한상만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상근부회장	'12.4.24.~ '15.4.23.	
	한상헌	(주)나라산업 대표이사	'12.4.24.~ '15.4.23.	
	최금주	(주)화이버텍 대표이사	'12.4.24.~ '15.4.23.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 홍보본부장	'12.4.24.~ '15.4.23.	

**【제10대(2015. 4. 24. ~ 2018. 5. 13.)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위촉 기간	비 고
공익위원 (9명)	박준성 (위원장)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15.4.24.~ '16.10.20.	'17.6.15.위원장으로 선출  김성호 상임위원과 교체  '17.2.20. 임명  강성태 위원과 교체          김동배 위원과 교체       윤희숙 위원과 교체  김소영 위원과 교체
	어수봉 (위원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17.4.18.~ '18.5.13.	
	류경희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15.1.30.~ '17.2.12.	
	김성호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17.2.20.~ '18.1.29.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 센터소장	'15.4.24.~ '17.6.14.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6.15.~ '18.5.13.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5.4.24.~ '18.5.13.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4.24.~ '18.5.13.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15.4.24.~ '15.6.25.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5.6.26.~ '18.5.13.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15.4.24.~ '18.4.23.	
	전명숙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5.4.24.~ '18.5.13.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센터 소장	'15.4.24.~ '16.5.9.	
	윤희숙	KDI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16.5.10.~ '17.4.17.	
	김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4.18.~ '18.5.13.	
근로자위원 (9명)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15.4.24.~ '16.4.6.	박대수 위원과 교체  문현균 위원과 교체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16.4.7.~ '17.5.30.	

구 분	성 명	소 속	위촉 기간	비 고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17.5.31.~ '18.5.13.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15.4.24.~ '17.5.30.	정문주 위원과 교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17.5.31.~ '18.5.13.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15.4.24.~ '18.5.13.	
	백영길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13.6.10.~ '16.4.6.	권영덕 위원과 교체
	권영덕	전국섬유, 유통노련 위원장	'16.4.7.~ '18.5.13.	'16.6.10. 재위촉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15.4.24.~ '18.5.13.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15.4.24.~ '18.5.13.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15.4.24.~ '18.5.13.	
	김진숙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15.4.24.~ '16.4.6.	안현정 위원과 교체
	안현정	홈플러스노조 부산본부장	'16.4.7.~ '17.6.26..	김진숙 위원과 교체
	김진숙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17.6.27.~ '18.5.13.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15.4.24.~ '18.5.13.	
사용자위원 (9명)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15.4.24.~ '18.5.13.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15.4.24.~ '18.5.13.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15.4.24.~ '18.5.13.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15.4.24.~ '18.5.13.	
	조봉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15.4.24.~ '16.4.6.	박열규 위원과 교체



구 분	성 명	소 속	위촉 기간	비 고
	박열규	삼강산업개발(주) 대표이사	'16.4.7.~ '17.6.14.	김영수 위원과 교체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17.6.15.~ '18.5.13.	
	최금주	(주)화이버텍 대표이사	'15.4.24.~ '18.5.13.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15.4.24.~ '16.4.6.	김문식 위원과 교체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16.4.7.~ '18.5.13.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협동 조합 이사장	'15.4.24.~ '18.5.13.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 본부장	'15.4.24.~ '18.5.13.	

## 【제11대(2018. 5. 14. ~ 2021. 5. 13.)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위촉 기간	비 고
공익위원 (9명)	류장수 (위원장)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8.5.14.~ '19.5.23.	'18.5.17. 위원장 선출
	박준식 (위원장)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19.5.24.~ '21.5.13.	'19.5.30. 위원장 선출
	김성호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18.1.30.~ '19.1.31.	임승순 상임위원과 교체
	임승순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19.3.18.~ '20.7.27.	최현석 상임위원과 교체
	최현석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20.8.17.~ '21.3.7.	양정열 상임위원과 교체
	양정열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21.3.8.~ '24.1.29.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18.5.14.~ '19.5.23.	'19.5.24. 해촉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18.5.14.~ '19.5.23.	"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5.14.~ '19.5.23.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18.5.14.~ '19.5.23.	"
	백학영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18.5.14.~ '19.5.23.	"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8.5.14.~ '19.5.23.	"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18.5.14.~ '19.5.23.	"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5.24.~ '21.5.13.	보궐위원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 본부장	'19.5.24.~ '21.5.13.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19.5.24.~ '21.5.13.	"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19.5.24.~ '21.5.13.	"
	전 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19.5.24.~ '21.5.13.	"

구 분	성 명	소 속	위촉 기간	비 고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19.5.24.~ '21.5.13.	"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19.5.24.~ '21.5.13.	"
근로자위원 (9명)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18.5.14.~ '20.6.4.	이동호 위원과 교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20.6.5.~ '21.5.13.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18.5.14.~ '20.6.4.	윤택근 위원과 교체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20.6.5.~ '21.5.13.	박희은 위원과 교체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21.3.26.~ '21.5.13.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18.5.14.~ '21.5.13.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18.5.14.~ '20.6.4.	김연홍 위원과 교체
	김연홍	민주노총 기획실장	'20.6.5.~ '21.5.13.	이정희 위원과 교체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21.3.26.~ '21.5.13.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18.5.14.~ '21.5.13.	
	전수찬	마트산업노동조합 수석부 위원장	'18.5.14.~ '20.6.4.	정민정 위원과 교체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20.6.5.~ '21.5.13.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18.5.14.~ '20.6.4.	김영훈 위원과 교체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20.6.5.~ '21.5.13.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18.5.14.~ '20.6.4.	함미영 위원과 교체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20.6.5.~ '21.5.13.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18.5.14.~ '22.6.9.	'19.6.10. 재위촉	

구 분	성 명	소 속	위촉 기간	비 고
사용자위원 (9명)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18.5.14.~ '19.5.23.	류기정 위원과 교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19.5.24.~ '21.5.13.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 본부장	'18.5.14.~ '19.5.23.	이태희 위원과 교체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19.5.24.~ '21.5.13.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18.5.14.~ '21.5.13.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18.5.14.~ '21.5.13.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18.5.14.~ '21.5.13.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18.5.14.~ '21.5.13.	
	이경숙	충북화장품산업협회 부회장	'18.5.14.~ '21.5.13.	
	권순중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18.5.14.~ '21.5.13.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 본부장	'18.5.14.~ '21.5.13.	

**【제12대(2021. 5. 14. ~ 2024. 5. 13.)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위촉 기간	비 고
공익위원 (9명)	박준식 (위원장)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21.5.14.~ '24.5.13.	'21.5.18. 위원장 선출
	양정열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21.3.8.~ '22.8.25.	하현재 상임 위원과 교체
	하현재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22.12.1.~ '27.1.29.	'23.5.2. 부위원장 선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21.5.14.~ '24.5.13.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1.5.14.~ '24.5.13.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1.5.14.~ '24.5.13.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21.5.14.~ '24.5.13.	
	전 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21.5.14.~ '24.5.13.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21.5.14.~ '24.5.13.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1.5.14.~ '24.5.13.		
근로자위원 (8명)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21.5.14.~ '23.4.5.	류기섭 위원과 교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23.4.6.~ '24.5.13.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21.5.14.~ '22.4.28.	윤택근 위원과 교체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22.4.29.~ '22.6.13.	박희은 위원과 교체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22.6.14.~ '24.5.13.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21.5.14.~ '24.5.13.	

구 분	성 명	소 속	위촉 기간	비 고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21.5.14.~ '24.5.13.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21.5.14.~ '24.5.13.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장	'21.5.14.~ '21.6.10.	이영주 위원과 교체
	이영주	공공연대 고용노동부분부 문화국장	'21.6.11.~ '23.4.5.	정용재 위원과 교체
	정용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23.4.6.~ '24.5.13.	
	김영훈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울타리 공공노동조합 위원장	'21.5.14.~ '23.4.5.	곽현희 위원과 교체
	곽현희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콜센터본부장	'23.4.6.~ '24.5.13.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21.5.14.~ '22.4.28.	김수정 위원과 교체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장	'22.4.29.~ '24.5.13.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19.6.10.~ '22.6.13.	김준영 위원과 교체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22.6.14.~ '25.6.13.	2023.6.23. 해촉
사용자위원 (9명)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21.5.14.~ '24.5.13.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21.5.14.~ '23.4.5.	이명로 위원과 교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23.4.6.~ '24.5.13.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21.5.14.~ '24.5.13.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협동조합 이사장	'21.5.14.~ '24.5.13.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21.5.14.~ '22.4.28.	금지선 위원과 교체



구 분	성 명	소 속	위촉 기간	비 고
	금지선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22.4.29.~ '24.5.13.	송유경 위원과 교체
	권순중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21.5.14.~ '24.5.13.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21.5.14.~ '24.5.13.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21.5.14.~ '24.5.13.	
	박길수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고문	'21.5.14.~ '23.4.5.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23.4.6.~ '24.5.13.	

## 【제13대(2024. 5. 14. ~ 2027. 5. 13.)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위촉 기간	비 고
공익위원 (9명)	이인재 (위원장)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24.5.14.~ '27.5.13.	'24.5.21. 위원장 선출
	하현재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24.1.30.~ '27.1.29.	'24.5.21. 부위원장 선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24.5.14.~ '27.5.13.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4.5.14.~ '27.5.13.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4.5.14.~ '27.5.13.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24.5.14.~ '27.5.13.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24.5.14.~ '27.5.13.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24.5.14.~ '27.5.13.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4.5.14.~ '27.5.13.	
근로자위원 (9명)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24.5.14.~ '27.5.13.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24.5.14.~ '27.5.13.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24.5.14.~ '27.5.13.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24.5.14.~ '27.5.13.	
	박용락	전국금속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24.5.14.~ '27.5.13.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24.5.14.~ '27.5.13.	
	장도준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기획교섭실장	'24.5.14.~ '27.5.13.	



구 분	성 명	소 속	위촉 기간	비 고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24.5.14.~ '27.5.13.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지부장	'24.5.14.~ '25.6.13.	
사용자위원 (9명)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24.5.14.~ '27.5.13.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24.5.14.~ '27.5.13.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24.5.14.~ '27.5.13.	
	이경숙	(주)뷰티콜라겐 대표이사	'24.5.14.~ '27.5.13.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24.5.14.~ '27.5.13.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24.5.14.~ '27.5.13.	
	금지선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24.5.14.~ '27.5.13.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24.5.14.~ '27.5.13.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24.5.14.~ '27.5.13.	



# 부록

1. 최저임금법·시행령·시행규칙
2.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정원배정표 포함)
4.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주요 법령과  
그 적용기준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정 1986.12.31 법률 제 3927호 일부개정 1993. 8. 5 법률 제 4575호 타법개정 1997.12.24 법률 제 5474호 일부개정 1999. 2. 8 법률 제 5888호 일부개정 2000.10.23 법률 제 6278호 일부개정 2005. 5.31 법률 제 7563호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 7827호 타법개정 2007. 4.11 법률 제 8372호 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 8818호 일부개정 2008. 3.21 법률 제 8964호 타법개정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일부개정 2012. 2. 1 법률 제11278호 일부개정 2017. 9.19 법률 제14900호 일부개정 2018. 6.12 법률 제15666호 타법개정 2020. 5.26 법률 제17326호	제정 1987. 7. 1 대통령령 제12207호 일부개정 1988. 7. 7 대통령령 제12488호 일부개정 1989. 7. 4 대통령령 제12746호 일부개정 1993.12.29 대통령령 제14035호 일부개정 1999. 3.17 대통령령 제16190호 타법개정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2005. 6.30 대통령령 제18911호 일부개정 2005. 8.31 대통령령 제19029호 타법개정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일부개정 2006.12.21 대통령령 제19771호 일부개정 2009. 6.26 대통령령 제21572호 타법개정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일부개정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5호 일부개정 2011.12.21 대통령령 제23388호 타법개정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일부개정 2018. 3.20 대통령령 제28711호 일부개정 2018.12.31 대통령령 제29469호	제정 1987.11.12 노동부령 제 42호 일부개정 1989. 6.16 노동부령 제 53호 일부개정 1994.11.14 노동부령 제 95호 일부개정 1999. 3.20 노동부령 제147호 일부개정 2005. 8.31 노동부령 제233호 일부개정 2006.12.27 노동부령 제263호 타법개정 2008. 3. 3 노동부령 제298호 타법개정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일부개정 2011.12.19 고용노동부령 제 41호 타법개정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8호 타법개정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타법개정 2016. 6.16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타법개정 2017. 2. 3 고용노동부령 제179호 일부개정 2018.12.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
<p><b>제1장 총칙</b> &lt;개정 2008. 3. 21.&gt;</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p>	<p><b>제1조(목적)</b>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9.]</p>



최 저 임 금 법	최 저 임 금 법 시 행 령	최 저 임 금 법 시 행 규 칙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p> <p><b>제3조(적용 범위)</b>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p> <p><b>제2장 최저임금</b> &lt;개정 2008. 3. 21.&gt;</p> <p><b>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b>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p>	<p><b>제2조</b> 삭제 &lt;2005. 8. 31.&gt;</p>	

최 저 임 금 법	최 저 임 금 법 시 행 령	최 저 임 금 법 시 행 규 칙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 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lt;개정 2010. 6. 4.&gt; [전문개정 2008. 3. 21.]</p> <p><b>제5조(최저임금액)</b>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lt;개정 2017. 9. 19., 2020. 5. 26.&gt;</p> <p>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p>	<p><b>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b>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8. 3. 20.]</p> <p><b>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b>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p>	

최 저 임 금 법	최 저 임 금 법 시 행 령	최 저 임 금 법 시 행 규 칙
<p>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p> <p><b>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b>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p>	<p>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26.]</p> <p><b>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b>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lt;개정 2018. 12. 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li> <li>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li> <li>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li> </ol>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p>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p> <p>4. 시간·일·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p> <p>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지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p> <p>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p> <p>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p> <p>[전문개정 2009. 6. 26.]</p>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p><b>제6조(최저임금의 효력)</b>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p> <p>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p> <p>&lt;개정 2018. 6. 1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li> <li>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金的 월 지급액</li> </ol>	<p><b>제5조의2(월 환산액의 산정)</b>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31.]</p> <p>[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lt;2018. 12. 31.&gt;]</p> <p><b>제5조의3(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b>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li> <li>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li> </ol> <p>[본조신설 2009. 6. 26.]</p> <p>[제5조의2에서 이동 &lt;2018. 12. 31.&gt;]</p>	<p><b>제2조(최저임금의 범위)</b>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li> <li>「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의 미사용수당</li> <li>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li> <li>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li> </ol> <p>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li> <li>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li> </ol> <p>[전문개정 2018. 12. 31.]</p>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p>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p> <p>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p>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p> <p>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p> <p>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p>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p>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p> <p>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p> <p>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p> <p>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p> <p>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p>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p>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p> <p><b>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b>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12.]</p> <p><b>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p>	<p><b>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b>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p>	<p><b>제3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b> ① 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최 저 임 금 법	최 저 임 금 법 시 행 령	최 저 임 금 법 시 행 규 칙
<p>적용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10. 6. 4., 2020. 5. 26.&gt;</p> <p>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p> <p>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p> <p>[전문개정 2008. 3. 21.]</p>	<p>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lt;개정 2010. 7. 12.&gt;</p> <p>[전문개정 2009. 6. 26.]</p>	<p>② 영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12. 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li> <li>2. 정신장애인이거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li> <li>3. 친권자 의견서 사본 1부(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li> </ol> <p>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12. 19.]</p>

최 저 임 금 법	최 저 임 금 법 시 행 령	최 저 임 금 법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b> 〈개정 2008. 3. 21.〉</p> <p><b>제8조(최저임금의 결정)</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p> <p>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p>	<p><b>제7조(최저임금위원회에의 심의 요청)</b>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p> <p>[전문개정 2009. 6. 26.]</p> <p><b>제8조(최저임금안의 고시)</b>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p> <p>[전문개정 2009. 6. 26.]</p>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p>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p> <p>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p> <p>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p> <p><b>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p> <p>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p>	<p><b>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b> 법 제9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p> <p>1.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2.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p>	<p><b>제4조(사용자단체의 지정)</b>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8. 12. 31.〉</p> <p>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p>

최 저 임 금 법	최 저 임 금 법 시 행 령	최 저 임 금 법 시 행 규 칙
<p>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p> <p><b>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p>	<p>3.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전문개정 2009. 6. 26.]</p> <p><b>제10조(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대표자의 범위)</b>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6. 26.]</p>	<p>중앙회</p> <p>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p> <p>4.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전문개정 2011. 12. 1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1. 12. 19〉]</p>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0. 6. 4.&gt; [전문개정 2008. 3. 21.]</p> <p><b>제11조(주지 의무)</b>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p>	<p><b>제11조(주지 의무)</b>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li> <li>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li> <li>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li> <li>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li> </ol> <p>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p>	

최 저 임 금 법	최 저 임 금 법 시 행 령	최 저 임 금 법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최저임금위원회</b> 〈개정 2008. 3. 21.〉</p> <p><b>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b>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p> <p><b>제13조(위원회의 기능)</b>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 6.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li> <li>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li> <li>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li> <li>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li> </ol> <p>[전문개정 2008. 3. 21.]</p> <p><b>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b>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b>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위원·사용자</p>	<p><b>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b>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p>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p>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p> <p>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p> <p>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p> <p>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p> <p>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p> <p>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 3. 21.]</p>	<p>위원 및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lt;개정 2010. 7. 12.&gt;</p> <p>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lt;개정 2010. 7. 12.&gt;</p> <p>③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 &lt;개정 2010. 7. 12.&gt;</p> <p>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 6. 26.]</p> <p><b>제12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b> 대통령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p>	<p>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lt;개정 2018. 12. 31.&gt;</p> <p>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p> <p>2.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p> <p>[전문개정 2011. 12. 19.]</p>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p>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li>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li> </ol> <p>[본조신설 2015. 12. 31.]</p> <p><b>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b>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lt;개정 2010. 7. 1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었던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2.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li> </ol>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p><b>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b>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p>	<p>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p> <p>3. 10년(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전문개정 2009. 6. 26.]</p> <p><b>제14조(상임위원의 임용 자격 등)</b>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p> <p>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p> <p>2.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p> <p>[전문개정 2009. 6. 26.]</p>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 3. 21.]</p> <p><b>제16조(특별위원)</b> ①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p> <p>②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③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p> <p><b>제17조(회의)</b>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lt;개정 2010. 6. 4.&gt;</p> <p>1.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p>	<p><b>제15조(특별위원의 위촉 등)</b>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lt;개정 2010. 7. 12.&gt;</p> <p>[전문개정 2009. 6. 26.]</p>	<p><b>제6조(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b>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한다. &lt;개정 2013. 3. 23., 2018. 12. 31.&gt;</p> <p>[전문개정 2011. 12. 19.]</p> <p>[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lt;2011. 12. 19.&gt;]</p> <p><b>제7조(규제의 재검토)</b>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사용자단체의 지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p>

최 저 임 금 법	최 저 임 금 법 시 행 령	최 저 임 금 법 시 행 규 칙
<p>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p> <p>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08. 3. 21.]</p> <p><b>제18조(의견 청취)</b>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8. 3. 21.]</p>	<p><b>제16조(실비변상)</b>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p> <p>[전문개정 2009. 6. 26.]</p>	<p>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lt;개정 2017. 2. 3.&gt;</p> <p>[본조신설 2014. 12. 31.]</p> <p><b>제8조 삭제</b> &lt;2011. 12. 19.&gt;</p>

최 저 임 금 법	최 저 임 금 법 시 행 령	최 저 임 금 법 시 행 규 칙
<p><b>제19조(전문위원회)</b>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 받아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p> <p>③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p> <p>④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본다.</p> <p>[전문개정 2008. 3. 21.]</p>	<p><b>제17조(전문위원회의 구성)</b>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만으로 제1항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거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따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위촉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공익위원의 위촉기준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09. 6. 26.]</p> <p><b>제18조(위원의 수당 등)</b>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 및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여비는 상임위원의 직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p> <p>[전문개정 2009. 6. 26.]</p>	

최 저 임 금 법	최 저 임 금 법 시 행 령	최 저 임 금 법 시 행 규 칙
<p><b>제20조(사무국)</b>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p> <p>②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p> <p>③ 연구위원의 자격·위촉 및 수당과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 3. 21.]</p> <p><b>제21조(위원의 수당 등)</b>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8. 3. 21.]</p> <p><b>제22조(운영규칙)</b> 위원회는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8. 3. 21.]</p>		

최 저 임 금 법	최 저 임 금 법 시 행 령	최 저 임 금 법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보칙</b> 〈개정 2008. 3. 21.〉</p> <p><b>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b>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p> <p><b>제24조(정부의 지원)</b>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p> <p><b>제25조(보고)</b>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p>	<p><b>제19조(실태조사)</b>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 하여금 법 제23조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6. 26.]</p>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p><b>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lt;개정 2010. 6. 4.&gt;</p> <p>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2008. 3. 21.]</p> <p><b>제26조의2(권한의 위임)</b>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lt;개정 2010. 6. 4.&gt; [전문개정 2008. 3. 21.]</p>	<p><b>제20조(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b>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할 때에는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0. 7. 12.&gt; [전문개정 2009. 6. 26.]</p> <p><b>제21조(증표)</b> 법 제26조제3항의 증표는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에 따른 증표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p> <p><b>제21조의2(권한의 위임)</b> 법 제26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lt;개정 2010. 7. 12.&gt;</p> <p>1. 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p>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p>제27조 삭제 &lt;2008. 3. 21.&gt;</p>	<p>2. 법 제25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2009. 6. 26.]</p> <p><b>제2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b> 고용노동부장관(제21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6.]</p>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벌칙</b> 〈개정 2008. 3. 21.〉</p> <p><b>제28조(벌칙)</b>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p> <p>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p> <p>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6. 12.〉</p> <p>[전문개정 2008. 3. 21.]</p> <p><b>제29조</b> 삭제 〈1999. 2. 8.〉</p>		

최 저 임 금 법	최 저 임 금 법 시 행 령	최 저 임 금 법 시 행 규 칙
<p><b>제30조(양벌규정)</b>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p> <p>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전문개정 2008. 3. 21.]</p> <p><b>제31조(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li> <li>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li> <li>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li> </ol>	<p><b>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b>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전문개정 2011. 3. 30.]</p>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lt;개정 2010. 6. 4.&gt;</p> <p>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lt;개정 2010. 6. 4.&gt;</p> <p>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lt;개정 2010. 6. 4.&gt;</p> <p>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 3. 21.]</p>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p>부칙 &lt;제3927호, 1986. 12. 31.&gt;  <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b>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b>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삭제한다.  제110조제1호중 “제28조, 제35조”를 “제28조”로 한다.  <b>제3조(최초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b>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할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하여 1987년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987년 7월 1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2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 12월 1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p>	<p>부칙 &lt;제12207호, 1987. 7. 1.&gt;  ①<b>(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b>(다른법령의 개정)</b> 행정관한의위임 및 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를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에게”로 하고, 동항제4호중 “라”목을 삭제하며,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최저임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  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부칙 &lt;제12488호, 1988. 7. 7.&gt;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lt;제12746호, 1989. 7. 4.&gt;  ①<b>(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b>(적용례)</b> 이 영에 의하여 추가로 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은 이 영 시행후 법</p>	<p>부칙 &lt;제42호, 1987. 11. 12.&gt;  ①<b>(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b>(경과조치)</b> 이 규칙시행전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의 추천을 한 사용자단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사용자단체로 본다.  ※ 제서식 생략    부칙 &lt;제53호, 1989. 6. 16.&gt;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lt;제95호, 1994. 11. 14.&gt;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lt;제147호, 1999. 3. 20.&gt;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lt;제233호, 2005. 8. 31.&gt;  ①<b>(시행일)</b>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b>(서식에 관한 경과조치)</b>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p>



최 저 임 금 법	최 저 임 금 법 시 행 령	최 저 임 금 법 시 행 규 칙
<p>부칙 &lt;제4575호, 1993. 8. 5.&gt;  <b>①(시행일)</b>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②(최저임금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은 1994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부칙 &lt;제5474호, 1997. 12. 24.&gt;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b> 내지 <b>제7조</b> 생략</p> <p><b>제8조</b> ① 내지 ④ 생략</p> <p>⑤ 최저임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p> <p>⑥ 내지 ⑫ 생략</p> <p><b>제9조</b> 생략</p>	<p>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결정·고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부칙 &lt;제14035호, 1993. 12. 29.&gt;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16190호, 1999. 3. 17.&gt;  <b>①(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②(다른 법령의 개정)</b>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호를 삭제한다.</p> <p>부칙 &lt;제18312호, 2004. 3. 17.&gt;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기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18911호, 2005. 6. 30.&gt;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부칙 &lt;제263호, 2006. 12. 27.&gt;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298호, 2008. 3. 3.&gt;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b>제2조 및 제3조</b> 생략</p> <p><b>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로 한다.</p> <p>부칙 &lt;제1호, 2010. 7. 12.&gt;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b>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p>

최 저 임 금 법	최 저 임 금 법 시 행 령	최 저 임 금 법 시 행 규 칙
<p><b>부칙</b> &lt;제5888호, 1999. 2. 8.&gt;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별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별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b>부칙</b> &lt;제6278호, 2000. 10. 23.&gt;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새로 적용되는 사업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으로 새로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행한 근로에 대한 임금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한다.</p> <p><b>부칙</b> &lt;제7563호, 2005. 5. 31.&gt;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저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2005년 9</p>	<p><b>제2조</b> 내지 <b>제4조</b> 생략  <b>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 내지 ⑮ 생략            ⑯ 최저임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⑰ 생략  <b>제6조</b> 생략</p> <p><b>부칙</b> &lt;제19029호, 2005. 8. 31.&gt;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제19513호, 2006. 6. 12.&gt;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b>제2조</b> 및 <b>제3조</b> 생략  <b>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 내지 &lt;209&gt; 생략 &lt;210&gt;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⑳ 생략</p> <p><b>부칙</b> &lt;제41호, 2011. 12. 19.&gt;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제78호, 2013. 3. 23.&gt;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제2조</b> 생략  <b>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p>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p>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③(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하게 할 수 없다. 다만,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부칙 &lt;제7827호, 2005. 12. 30.&gt;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8372호, 2007. 4. 11.&gt; (근로기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p> <p>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㉒ 생략</p>	<p>제13조제1호·제14조제1호 및 제15조 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로 한다.</p> <p>제18조중 “직급”을 “직위”로 한다.</p> <p>&lt;211&gt; 내지 &lt;241&gt; 생략</p> <p>부칙 &lt;제19771호, 2006. 12. 21.&gt;</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유효기간)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③(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적용에 관한 특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3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p>	<p>개정한다.</p> <p>제6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p> <p>부칙 &lt;제117호, 2014. 12. 31.&gt;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158호, 2016. 6. 16.&gt;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179호, 2017. 2. 3.&gt;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240호, 2018. 12. 31.&gt;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p>②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를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로 한다.</p> <p>② 및 ④ 생략</p> <p><b>제17조 생략</b></p> <p><b>부칙</b> &lt;제8818호, 2007. 12. 27.&gt;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 : 2009년 7월 1일</li> <li>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시지역 : 2010년 7월 1일</li> <li>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 : 2012년 7월 1일</li> </ol> <p><b>부칙</b> &lt;제8964호, 2008. 3. 21.&gt;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b>부칙</b> &lt;제21572호, 2009. 6. 26.&gt;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및 광역시 : 2009년 7월 1일</li> <li>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지역 : 2010년 7월 1일</li> <li>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 : 2012년 7월 1일</li> </ol> <p><b>부칙</b> &lt;제22269호, 2010. 7. 12.&gt;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b>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부터 &lt;121&gt;까지 생략 &lt;122&gt;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4호, 제15조, 제19조,</p>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p>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 : 2009년 7월 1일</p> <p>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지역 : 2010년 7월 1일</p> <p>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 : 2012년 7월 1일</p> <p>②(다른 법률의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최저임금법 제6조”를 “「최저임금법」 제6조”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lt;제10339호, 2010. 6. 4.&gt; (정부조직법)</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b>제2조 및 제3조</b> 생략</p> <p><b>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부터 &lt;74&gt;까지 생략 &lt;75&gt;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2호,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조 각 호 외의 부</p>	<p>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p> <p>제20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p> <p>&lt;123&gt;부터 &lt;136&gt;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lt;제22805호, 2011. 3. 30.&gt;</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b>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lt;제23388호, 2011. 12. 21.&gt;</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유효기간)</b>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최 저 임 금 법	최 저 임 금 법 시 행 령	최 저 임 금 법 시 행 규 칙
<p>분,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 단서, 제13조제4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6조의2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p> <p>제12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p> <p>제26조의2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p> <p>&lt;76&gt;부터 &lt;82&gt;까지 생략</p> <p><b>제5조 생략</b></p> <p><b>부칙</b> &lt;제11278호, 2012. 2. 1.&gt;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제14900호, 2017. 9. 19.&gt; <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최저임금액에 관한 적용례)</b>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한다.</p>	<p><b>부칙</b> &lt;제23488호, 2012. 1. 6.&gt;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b>제2조 생략</b></p> <p><b>부칙</b> &lt;제26844호, 2015. 12. 31.&gt;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제28711호, 2018. 3. 20.&gt; 이 영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제29469호, 2018. 12. 31.&gt;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p>부칙 &lt;제15666호, 2018. 6. 12.&gt;  <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b>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20년은 100분의 20</li> <li>2. 2021년은 100분의 15</li> <li>3. 2022년은 100분의 10</li> <li>4. 2023년은 100분의 5</li> <li>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li> </ol> <p>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20년은 100분의 5</li> <li>2. 2021년은 100분의 3</li> <li>3. 2022년은 100분의 2</li> <li>4. 2023년은 100분의 1</li> <li>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li> </ol> <p>부칙 &lt;제17326호, 2020. 5. 26.&gt;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 최저임금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1.3.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 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100만원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100만원
다.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100만원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2018. 12. 31.>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18. 12. 31.>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1.12.19>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인 가 기 준
<p>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그 근로자를 종사시키려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작업능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한다)을 말한다.</li> <li>2.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li> </ol>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12.31.>

**[ ] 정신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  
**[ ]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장애인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신청 내용	장애의 상태		
	장애인근로자의 취업업무		
	장애인근로자의 작업능력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평균작업능력		
	지급하려는 시간 당 임금액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시간 당 임금액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필요한 사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 2. 정신장애인이거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친권자 의견서 사본 1부(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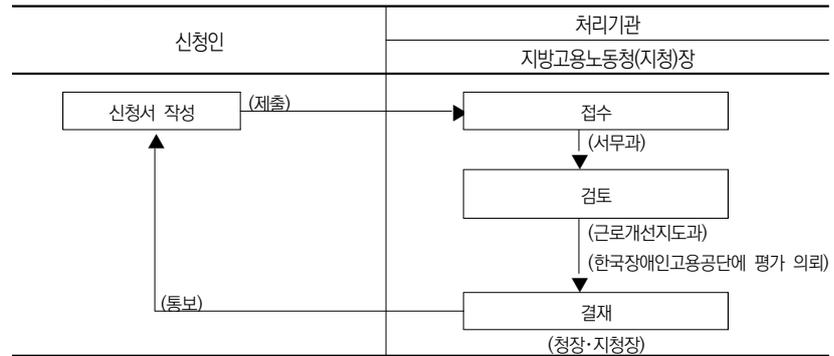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상자별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거나 취업업무가 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실제 수행하지 않는 작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는 반려됩니다.
- 신청 대상 장애인근로자의 취업업무는 구체적으로 전부 적습니다.  
 예) 소프백제작 : ①소프백 상단부분을 안쪽으로 접어 넣음 ②소프백 안쪽으로 간지를 넣음 ③소프백 하단을 팔각형 모양이 되게 접음  
 부품 조립 : ①탁자위에 부품1과 부품2 놓기 ②부품1을 부품2에 정해진 위치에 고정하고 돌리기 ③부품1과 부품2를 박스에 넣기
- 신청 대상 장애인근로자의 작업능력은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평균작업능력과 비교하여 취업업무 전부에 대하여 적습니다.  
 예) 장애인근로자 작업능력 소프백 제작 100개, 부품조립 70개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평균작업능력 소프백 제작 150개, 부품조립 100개
-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평균작업능력은 신청 대상 장애인 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임금이 가장 낮은 근로자의 평균작업능력을 의미하며, 해당되는 근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최근 입사한 근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다 적합한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작업능력은 신청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일정 시간 동안 수행한 작업량으로 측정하고, 신청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능력은 백분율 값으로 표시합니다.(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작업능력이 같을 때의 백분율 값은 100입니다) 다만, 백분율 값으로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신청 대상 장애인 근로자를 비교하여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 6.16.>

**[ ]정신  
[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장애인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인가 내용	장애의 상태	
	장애인근로자의 취업업무	
	장애인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액	
	인가기간	. . . ~ . . . (1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삭제 <1994. 11. 14.>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동 <2011. 12. 19.>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5. 8. 31.>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94. 11. 14.>

## 2 ▶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 제정 1987. 7. 31 최저임금위원회 규칙 제 1호
- 전부개정 1988. 4. 1 최저임금위원회 규칙 제 2호
- 개정 1988. 7. 1 최저임금위원회 규칙 제 3호
- 1989. 8. 8 최저임금위원회 규칙 제 4호
- 1999. 4. 7 최저임금위원회 규칙 제 5호
- 1999. 6. 29 최저임금위원회 규칙 제 6호
- 2001. 4. 12 최저임금위원회 규칙 제 7호
- 2006. 6. 16 최저임금위원회 규칙 제 8호
- 전부개정 2008. 4. 4 최저임금위원회 규칙 제 9호
- 개정 2009. 6. 5 최저임금위원회 규칙 제10호
- 2011. 3. 18 최저임금위원회 규칙 제11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제22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최저임금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장”이란 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말한다.
3. “위원”이란 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4. “사무국”, “사무국장” 및 “직원”이란 위원회 사무국, 사무국장 및 그 직원을 말한다.

**제3조(회의의 종류)**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

2.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임금수준전문위원회 및 생계비전문위원회의 회의
3.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의 회의
4.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연구위원회의 회의

## 제2장 위원회

### 제1절 기관

**제4조(위원장·부위원장의 선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순으로 2명을 지정하여 결선투표를 한 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5조(상임위원의 직무대행)**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2명의 상임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회의 최초 구성 후 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만료 후 최초의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거할 때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2명의 상임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부위원장이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2. 부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③ 상임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대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회의 회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의안건을 정리한다.

## 제2절 회의

**제7조(회의)** 위원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이를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의장의 직무 및 권한)** 의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무를 감독한다.

**제9조(개회)** ① 회의는 의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② 의장은 간사 또는 의안제출 위원으로 하여금 해당 안건을 보고하거나 설명하게 한다.

**제10조(의안의 작성)** ①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의결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 요구한 사항 및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1.3.18.〉

③ 보고사항은 위원이 의안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통지의무)** ① 위원이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의기간 중에 여행 그 밖의 사유로 7일 이상 부재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 회부)** 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전원회의에 보고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한다.〈개정 2011.3.18.〉

② 위원장은 안건이 어느 전문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안건의 심사를 담당할 전문위원회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심사기간)** ① 위원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전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전문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심의)**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 또는 재심의를 함에 있어서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안전을 심사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15조(재회부)**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다시 그 안전을 같은 전문위원회 또는 다른 전문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제16조(발언의 허가)** ① 위원이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정회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③ 위원의 발언내용이 전문성을 요하거나 복잡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발언의 요지 또는 자료를 사전에 사무국에 제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의장은 발언자가 의제 외의 발언을 하거나 불필요한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때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발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의장의 표결선포 후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 일방이 퇴장한 경우에 법 제17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9조(표결의 선포)** ① 의장이 표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표결할 안전의 요지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표결방법)** ① 위원회의 표결에 있어서는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안전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표결 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공익위원을 제외한 노사위원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표결 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원을 대리하여 표결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의장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2.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시

**제21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제22조(폐회)** 의장은 회의가 폐회될 때에는 주요 의결사항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3조(최저임금안 등의 제출)** ①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3.18.>

② 법 제13조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3.18.>

**제24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회의록에 서명하고,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경위와 주요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결과의 발표)**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 경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의결사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의장 이외의 위원은 회의의 결과를 위원회의 동의 없이 발표할 수 없다.

### 제3절 위원회의 조사 등

**제26조(실태조사)** 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생계비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때에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하게 하여 이를 실시한다.<개정 2011.3.18.>

②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결과와 유사근로자 임금실태를 분석하여 전원회의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위원, 연구위원 그 밖에 사무국 소속 직원을 사업장등에 직접 출장하게 하여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견청취를 할 때에는 사업장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의견청취를 담당하는 자는 의견청취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8조(의견청취 결과의 보고)** 제27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의견 청취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원회의 또는 관련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전문위원회

**제29조(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와 생계비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다만, 공익위원 중에는 상임위원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따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둘 이상의 전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운영위원 및 특별위원은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전문위원회의 기능)** ① 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근로자의 임금실태와 노동 생산성 등을 조사 분석하고 최저임금안 등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사한다.

② 생계비전문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가 되는 생계비의 수준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심사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는 법 제13조 각 호에 규정한 범위에서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사한다.

**제31조(위원의 위촉)**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이 아닌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공익위원은 영 제13조에 규정한 자격요건 해당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32조(위원의 임기)** ① 전문위원회 위원은 그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3조(위원의 직무대행)**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의 장기질병, 해외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문위원회의 정족수를 이룰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 임시로 그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전문위원회의 위원장)** ① 전문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익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전문위원회는 안전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위와 그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장 운영위원회

**제36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을 대표하는 각 2명으로 한다. 다만, 공익위원 중에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3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1. 전원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협의
2. 회의개최 시기, 안건, 그 밖에 의사 진행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3. 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의 사전협의
4. 그 밖의 위원회의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임기)**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9조(연구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원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학계, 노사단체, 관계기관 및 사무국 등의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연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장이 된다.

## 제5장 보칙

**제40조(실비변상)** 전원회의 및 전문위원회 등에 출석한 근로자, 사용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9. 6. 5.>

**제41조(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및 연구위원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회의 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9. 6. 5.>

② 제1항의 수당은 해당 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에 출석한 일수에 따라 위원회 위원에 준하여 지급하고, 여비는 국내여비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연구위원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직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2조(준용규정)**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각 해당장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제2절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운영세칙)** 위원회 위원장은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종 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1987. 7. 31.)**

이 규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4. 1.)**

이 규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7. 1.)**

이 규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8.)**

이 규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7.)**

이 규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 29.)**

이 규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12.)**

이 규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16.)

이 규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4.)

이 규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5.)

이 규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8.)

이 규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정원배정표 포함)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239호, 2024.2.27. 시행)

**제2조(소속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청을 둔다.

②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③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제30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1조(직무)**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6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노동경제·노사관계,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고용노동문제연구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4조(수당)**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1호, 2024.2.27. 시행)

**제21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①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1조의2(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④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으며, 별표 15의 정원 중 4명(6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13.12.11.>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4항 관련)

총계	8
일반직 계	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
행정주사보	2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4. 4. 27.>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4항 단서 관련)

총계	12
일반직 계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5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
행정서기	1
운전서기보	1

**4** ▶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주요 법령과 그 적용기준** ▶

관련법령	내 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li> <li>-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li> </ul>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대한 피해의 보상기준)</li> <li>-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li> </ul>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li> <li>-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 적용(「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li> </ul>
「고용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li> <li>-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미달시 최저기초일액(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산정</li> <li>○ 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li> <li>-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 100분의 80)</li> <li>○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제한)</li> <li>-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li> <li>○ 시행령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li> <li>- 상한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li> <li>- 하한액은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li> <li>○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li> <li>-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수 기준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li> </ul>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5조(공정선거지원단)</li> <li>-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li> </ul>

관련법령	내 용
「공직선거관리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li> </ul> </li> <li>○ 법 제2조의4(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li> </ul> </li> </u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64조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li> </ul> </li> <li>○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규칙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에 따른 용역계약('06.5.25 이전에 입찰 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에 한함)의 노무비의 등락률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li> </ul> </li> </ul>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14조(역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시간단위 최저임금 × 200시간 × 8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li> </ul> </li> </ul>
「국민건강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산정</li> </ul> </li> </ul>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가구의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음</li> </ul> </li> </ul>

관련법령	내 용
<p>「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8조(정착금의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의 범위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을 지급</li> </ul> </li> <li>○ 시행령 제10조(피해위로금의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 지급</li> </ul> </li> <li>○ 시행령 제13조(보상금의 조정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 지급할 보상금은 조정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호프만 계수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을 모두 곱하여 산출된 금액</li> </ul> </li> </ul>
<p>「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14조의5(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노무비가 위탁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li> </ul> </li> </ul>
<p>「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11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에서 조정지급 결정 당시의 기준임금(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호프만계수와 노동력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li> </ul> </li> </ul>
<p>「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18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에서 보상금에 대해 조정·지급을 결정할 당시의 기준임금(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나이별 호프만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li> </ul> </li> </ul>
<p>「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39조(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기본금·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li> </ul> </li> </ul>
<p>「사회보장기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0조(사회보장급여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li> </ul> </li> </ul>
<p>「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13조의2(현장실습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지원비를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li> </ul> </li> </ul>

관련법령	내 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최저 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액×8)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함</li> </ul> </li> <li>○ 법 제53조(부분휴업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li> </ul> </li> <li>○ 법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산정</li> </ul> </li> <li>○ 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산정</li> </ul> </li> <li>○ 법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li> </ul> </li> <li>○ 법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li> </ul> </li> <li>○ 법 제74조(직업훈련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li> </ul> </li> <li>○ 법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폐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li> </ul> </li> </ul>

관련법령	내 용
<p>「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단가는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에서 제33조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음</li> </ul> </li> <li>○ 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담기초액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li> </ul> </li> <li>○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li> </ul> </li> </ul>
<p>「조세특례제한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등에 대한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계산 시 관련 지원요건 중 하나로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일 것”을 규정</li> </ul> </li> <li>○ 시행령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계산 시 관련 지원 요건 중 하나로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일 것”을 규정</li> </ul> </li> </ul>
<p>「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2조(지원금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li> <li>* 해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무급 휴직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 임금액을 곱한 금액</li> </ul> </li> </ul>
<p>「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73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li> </ul> </li> </ul>

관련법령	내 용
「직업안정법」	○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게재하지 말 것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3조(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 기본공로금은 월 최저임금(시행일 현재 시간단위 최저임금×226시간)의 72배에 채용·입대시기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채용·입대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시행령 제9조(구조금의 산정) - 구조금 중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구조금지급 대상자의 근무 직종에 따라 구조결정 시 일급최저임금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산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2조(보상의 한도) -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 26개 법령에서 최저임금 활용(법제처 국가정보법령센터에서 검색하여 정리한 자료, 2024.4.4. 기준 시행 중인 법령)

## 2024년 최저임금 심의편람

이 책을 만드는데 수고하여 주신 분들

최저임금위원회 위 원 장 이 인 재  
상 임 위 원 하 헌 제  
사 무 국 장 천 춘 희  
책 임 편 집 인 허 윤 행  
편 집 인 김 보 라

발 행 일 2024년 5월

인쇄 · 디자인 (주)동명기획